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2집
2009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발 간 사 》

지난 2007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부로부터 성희롱 시정 업무를 이관 받은 지 2주년을 맞아 시정을 권고한 성희롱 사례를 묶어 <성희롱 시정 권고 결정례집>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비록 많은 사례가 축적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성희롱의 양상을 확인하고 그 판단기준과 구제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소중한 자료가 되었으리라고 자부합니다.

그로부터 2년 동안 다시금 수많은 성희롱 사건들이 우리 위원회에 제기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와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고민을 거듭한 결과, 위원회는 2007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33건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였으며, 조정과 합의 및 조사 중 해결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게 한 사례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에 그 새로운 성과들을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2집>으로써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그간의 노력에 힘입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정립되고 성희롱 없는 직장과 사회문화가 깊이 뿌리내리려면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는 점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례집의 발간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져야 할 우리 위원회의 역할과 노력에 대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본 사례집에서는 성희롱 시정 권고의 사례와 함께 지금까지 위원회에 접수, 처리된 성희롱 사건의 현황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통계자료들을 수록하고, 조정과 합의를 통해 해결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소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도 사례집을 접하시는 분들께서 성희롱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시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쪼록 이 사례집이 성희롱의 예방과 시정을 위하여 힘쓰시는 관계자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움직여 나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 11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 일러두기 》

❍ 이 사례집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5호가 정한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44조 또는 제45조에 의거 시정을 권고한 사례로서, 진정으로 접수된 사건 31건 및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사건 1건 등 총 32건을 실었습니다.

※ 2007년 5월 31일 이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 결정한 사건은 2007년 6월 발간된 <성희롱 시정 권고 결정례집 제1집>에 수록되어 있으며, 본 사례집에서는 그 목록과 간략한 개요를 책자 뒷부분에 붙여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사례의 본문은 해당 사건의 원 결정문으로부터 되도록 그대로 인용하되, 당사자와 관련인의 이름, 해당 기관 및 구체적 지역의 명칭 등은 원칙적으로 익명 처리하였고, 법령의 명칭, 일자, 띄어쓰기 등의 표기방식 상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원문의 표현 중 일부분을 편집하였습니다.

❍ <붙임>에서 소개한 "진정 접수 및 처리 현황"과 "조정 및 합의 종결 현황" 등은 위원회 설립 이후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접수, 처리된 성희롱 진정 사건의 누계 자료(접수: 562건, 처리: 522건)를 대상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제2집】

<2007. 6. ~ 2009. 6.>

【차 례】

1 자동차매매상사 사장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 1
(07진차47, 2007. 6. 22. 결정)

2 ○○협회 지부장의 미화원에 대한 성희롱 ····· 6
(06진차787, 2007. 7. 13. 결정)

3 해외 복지센터 소장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 13
(07진차146, 2007. 8. 30. 결정)

4 ○○공제조합 지부장 등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 22
(06진차838, 2007. 8. 30. 결정)

5 컨설팅 회사 상사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 28
(06진차838, 2007. 8. 30. 결정)

6 사회복지법인 상사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 33
(07진차610, 2007. 9. 11. 결정)

7 논술학원장의 강사에 대한 성희롱 ····· 41
(07진차330, 2007. 9. 20. 결정)

8 동장의 통장에 대한 성희롱 ····· 47
(07진차585, 2008. 1. 28. 결정)

9 논술학원장 등의 강사에 대한 성희롱 ····· 52
(07진차600, 2008. 1. 28. 결정)

10 자동차공업사 대표자 등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 61
(07진차615, 2008. 1. 28. 결정)

11 보험설계사의 개인비서에 대한 성희롱 ····· 68
(07진차853, 2008. 3. 10. 결정)

12 초등학교 교사의 컴퓨터 강사 성희롱 ····· 74
(07진차1081, 2008. 3. 10. 결정)

13 교육청 과장의 교사에 대한 성희롱 ····· 82
(07진차1182, 2008. 3. 10. 결정)

14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의 간호사 성희롱 ····· 87
(07진차778, 2008. 4. 14. 결정)

15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하급 공무원 성희롱 ····· 93
(07진차1017, 2008. 4. 14. 결정)

16 엔터테인먼트 회사 상사의 직원 성희롱 ····· 101
(07진차854, 2009. 4. 28. 결정)

17 국회의원 보좌관의 의원실 직원 성희롱 ····· 105
(08진차6, 2009. 5. 19. 결정)

18 ○○주식회사 상사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 114
(07진차463, 2008. 8. 25. 결정)

19 회사 파업 중 경비용역업체 직원의 성희롱 ····· 122
(07진차1100, 2008. 8. 25. 결정)

20 건축회사 상사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 129
(08진차526, 2008. 8. 25. 결정)

21 학원 강사의 동료 강사에 대한 성희롱 ····· 135
(08진차696, 2008. 9. 22. 결정)

22 광고인쇄업체 사장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 140
(08진차208, 2008. 9. 22. 결정)

23 의료컨설팅 회사 사장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 146
(08진차480, 2008. 9. 22. 결정)

24 구청 공무원의 하급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 ····· 153
(08진차958, 2008. 10. 6. 결정)

25 은행 상사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 159
(08진차974, 2008. 12. 8. 결정)

㉖ 장례식장 직원의 도우미에 대한 성희롱 ····· 171
(07진차1118, 2008. 12. 29. 결정)

㉗ 도 체육회 상사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 184
(08진차1020, 2008. 12. 29. 결정)

㉘ 새마을금고 상사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 190
(08진차1208, 2009. 2. 23. 결정)

㉙ 관람시설 운영회사 상사의 직원 성희롱 ····· 199
(08진차1343, 2009. 5. 1. 결정)

㉚ 설계사무소 대표자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 206
(09진차38, 2009. 5. 20. 결정)

㉛ 시설관리공단 상사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 213
(09진차245, 2009. 6. 22. 결정)

㉜ <직권조사> 교수의 학생 성추행 ····· 218
(08직차15, 2008. 12. 29. 결정)

【붙 임】 성희롱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227

성희롱 사건 조정 및 합의종결 현황 ····· 235

성희롱 시정 결정례집 제1집 수록 사건<요약> ····· 243

1. 자동차매매상사 사장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47 성희롱
【진 정 인】 황○○
【피진정인】 박△△

【주 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과 피해배상금 300만원을 진정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6. 1.부터 2007. 1.까지 약 1년간 피진정인이 사장으로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근무하였는데, 피진정인은 2006. 8.경부터 약 4개월 동안 사무실이나 이동하는 차안에서 진정인의 손과 귀, 어깨 등을 만지고 "꿈속에서 네가 나를 찾아와 옷을 벗었다.", "(아이를 만들자는 의미로) 너랑 나랑 작품 하나 만들자."라고 말하였고, 휴대전화로 "아름답고 미운 아미새 당신 사랑해서 미안해", "미워할 수 없는 새 아름다운 새 당신", "지금 출발합니다. 아미새 공주님"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진정인은 이러한 언동들로 인해 심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피진정인은 2006. 8. 18. ○○시청에서 업무를 마치고 진정인과 단 둘이 사무실로 돌아오는 피진정인의 차안에서 갑자기 진정인의 손을 잡으며 “손이 왜 이리 차냐?”라고 하였고, 같은 해 9. 8.에도 차안에서 갑자기 진정인의 귓불을 만졌다.

2) 피진정인은 같은 해 9. 22. 사무실에서 서류정리를 하고 있던 진정인에게 다가와 “꿈속에서 네가 나를 찾아와 남편과 싸웠다면서 울며 옷을 벗었다.”라고 말하였다.

3) 피진정인은 같은 해 10. 중순부터 11. 초순까지 두 차례에 걸쳐 책상 앞에 앉아 일을 하고 있던 진정인의 뒤로 다가와 손으로 어깨를 만지며 자신의 얼굴을 진정인의 얼굴과 닿을 정도로 가까이 들이댔다.

4) 피진정인은 같은 해 11. 18. 차안에서 “12월에 너랑 나랑 작품 하나 만들자.”라고 말하였다.

5) 피진정인은 같은 해 11. 초순경부터 12. 초순경까지 수많은 휴대문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주요 내용은 “아름답고 미운 아미새 당신 사랑해서 미안해”, “미워할 수 없는 새 아름다운 새 당신”, “지금 출발합니다. 아미새 공주님” 등의 내용이었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이 주장하는 성적 행위나 발언을 한 적이 없다.

2)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들은 모두 노래 가사이거나 진정인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 보낸 것일 뿐 성적 감정을 가지고 보낸 것이 아니다.

3.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들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6. 1.부터 2007. 1.까지 약 1년 동안 피진정인이 사장으로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근무하였다. 위 회사에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그리고 피진정인의 동업자인 이○○가 함께 근무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같은 해 11. 초순경부터 12. 초순경까지 진정인에게 수많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주요 내용은 "아름답고 미운 아미새 당신 사랑해서 미안해", "미워할 수 없는 새 아름다운 새 당신", "지금 출발합니다. 아미새 공주님" 등이었다.

다. 진정인이 일하였던 곳의 옆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참고인 박○○는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마다 참고인에게 찾아와 하소연하였으며, 피진정인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다는 고민도 털어 놓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참고인 박○○는 피진정인과 단둘이 있는 진정인이 걱정되어 진정인의 사무실을 유심히 살펴보던 중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것을 보았으며, 피진정인이 진정인 가까이에서 턱을 괴고 이야기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의 동업자인 참고인 이○○는 진정인이 피진정인과의 관계를 힘들어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진정인은 2007. 1. 8. 회사를 그만두면서 진정인의 오빠에게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에 대해 말하였다. 그러자 진정인의 오빠는 진정인을 데리고 피진정인에게 찾아가 그와 같은 언동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피진정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경찰서, ○○지방노동청 ○○지청, ○○와이더블유씨에이 등에서 상담을 받았다.

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그 밖의 나머지 언동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고 있다.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언동을 피진정인이 한 것이 사실인지에 관하여 직접 그 행위 모두를 목격한 사람이나 사진 또는 녹음 등의 직접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성희롱은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한다는 점, 피진정인의 일부 행위를 직접 목격한 자가 있다는 점, 진정인은 사건 발생시마다 피진정인의 행위를 참고인 박○○에게 말하였고 회사를 그만둔 후에는 진정인의 오빠를 비롯해 여러 상담기관에 일관되게 피진정인의 행위를 진술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피진정인의 언동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5호는 성희롱을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외에도 보통의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느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나. 위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피진정인의 언동들이 진정인을 비롯한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였는지를 살펴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남성이 여성의 손, 귀, 어깨 등을 갑자기 만지고 얼굴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오는 행위는 보통의 여성들도 충분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이라 할 것이다. 또한 진정인이 여러 번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꿈속에서 네가 나를 찾아와 옷을

벗었다.”라고 말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름답고 미운 아미새 당신 사랑해서 미안해”, “미워할 수 없는 새 아름다운 새 당신”, “지금 출발합니다. 아미새 공주님”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약 4개월에 걸쳐 계속된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은 일반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실제로 진정인은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언동들로 인해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으며 그 충격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지금도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호소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의 언동은 진정인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 및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2. ○○협회 지부장의 미화원에 대한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787 성희롱

【진 정 인】 조○○

【피 해 자】 1. 채○○
2. 조○○
3. 이○○

【피진정인】 1. 조△△
2. 이△△

【주 문】 1.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가.항, 다.항 및 라.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2. 기타 나머지 진정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들은 ○○교통공사의 청소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협회 ○○지부에서 근무하며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인데, 동 지부의 지부장 조△△과 본부장 이△△은 피해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성희롱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심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

가. 2005. 12. 20. 피진정인 조△△은 회식 후 2차로 간 ○○동 소재의 모 노래방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채○○의 가슴을 손등으로 수차례 접촉하고 허벅지를 만지면서 뺨에 뽀뽀를 하였고,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귓속말로 "내가 왜 채○○을 좋아하는지 아느냐? 과부라서 좋아한다."라고 하였다.
다. 2005. 12. 21. 피진정인 이△△은 ○○역 근처의 모 식당에서 피해자 채○○에게 "사귀자.", "애인하자."라고 수차례 말하며 자신의 애인이 될 것을 강요하였다.
라. 2006. 2. 26. 피진정인 이△△은 모 국회의원 방문행사를 마치고 저녁식사 후 ○○동 소재 모 노래방에서 피해자 조○○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강요하면서 몸을 밀착시켰고,
마. 피진정인 조△△은 노래방에서 놀다 나온 후 피해자 채○○에게 "내가 두 번 이혼했는데, 또 이혼할 수 있다. 채○○과 살아 볼거다."라고 하였으며,
바. 같은 날 피진정인 이△△이 피해자 채○○의 손을 잡으며 "오늘 저녁 조 회장을 모셔라."라고 하였다.
사. 2006. 3. 초순 일자불상 경 피진정인 조△△은 분임장 회식 때 모 노래방에서 피해자 조○○에게 "모텔을 잡아 놨다.", "아파트가 두 채다. 같이 살면 안돼요?"라고 하였다.
아. 2006. 3. 초순경 피진정인 이△△이 ○○동 모 단란주점으로 피해자 이○○을 불러서 "오늘밤 회장을 책임져라."라고 하여 싫다고 하였더니 "한달 쉬소"라고 하였다.
자. 2006. 4. 26. 피진정인 조△△은 피해자 조○○와 동료직원의 문상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 조○○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차. 2006. 5. 4. 피진정인 이△△은 ○○역 근처 모 식당에서 피해자 이○○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하고는 가슴을 쳐다보면서 "분임장은 가슴이 왜 이렇게 커요?"라고 하였고, 자신의 오른쪽 팔꿈

치로 왼쪽 가슴을 툭툭 치면서 “애인이 있냐? 없으면 나랑 애인을 하자.”라고 하였다.

카. 2006. 6. 19. 피해자 채○○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피진정인 이△△이 “채○○ 분임장과 하룻밤 잤다. 괜찮더라.”라고 말하는 것을 진정 외 김○○이 들었다는 얘기를 피해자 조○○로부터 전해 들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조△△

본인은 2004. 7.부터 한국○○○○○협회 ○○지부의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본 협회는 ○○교통공사와 2005. 11. 14.부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하철 8개역의 청소용역을 담당하고 있다. 분임장 회의나 회식은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데, 동 공사로부터 지침이 오면 본부장이 분임장을 모아 놓고 회의를 하거나 분임장에 대한 격려가 필요할 때 회식을 하였고, 본인은 본부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참석을 한 것이다. 본인은 분임장들에게 회의나 회식 참석을 강요하거나 노래방에 가자고 한 적이 없으며, 회식비용도 회사나 본인이 부담하였고, 진정인이 주장하는 성적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분임장들이 2006. 5. 또는 6.경 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사측과 갈등이 많아졌으며, 2006. 11. 본부장 이△△이 분임장 제도 때문에 다른 미화원과 화합이 안 된다고 판단하여 분임장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자 더욱 갈등이 심해지면서 성희롱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다. 피진정인 이△△

본인은 2005. 11. 14.부터 ○○지하철 청소용역관련 사업 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 12. 16. 퇴직하였다. 분임장 회의는 현장 사

무실에서 회식은 분임장이 근무를 마치는 3시경부터 역 근처 식당에서 하였고, 회의나 회식에 참석을 강요하거나 불참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적은 없다. 본인은 음치라서 노래를 부르지 않고, 춤도 추지 않기 때문에 노래방에 가는 것을 싫어하며, 진정인 및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참고인들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채○○, 조○○는 2005. 11. 14.부터 한국○○○○○협회 ○○지부(이하 '협회'라 한다.)에 고용되어 각각 ○○지하철 ○○역, ○○역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계약직 직원이다.

나. 피진정인 조△△은 2004. 7.부터 위 협회 지부장으로 일하였고, 피진정인 이△△은 2005. 11. 14.부터 위 협회 청소용역사업 본부장으로 일하였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들의 업무를 평가하여 피해자들의 재계약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당시 위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참고인 김○○, 홍○○, 주○○는 피진정인 조△△이 피해자 채○○의 가슴에 수차례 손등을 대는 것을 보았고, 허벅지를 만지며 볼에 뽀뽀하는 것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참고인 주○○는 피해자 채○○이 피진정인의 행위로 인해 불쾌해하며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한참 후에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참고인 주○○는 사건당일 피해자로부터 피진정인 이△△과 단둘이서만 가진 만남이 힘들었다는 말과 이후 우연히 만났을 때 당시 피진정인의 언동에 관해 자세히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당시 위 노래방에 함께 있던 채○○은 피진정인 이△△이 춤을 추지 않으려는 피해자 조○○를 억지로 끌어당기면서 블루스를 추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참고인 김○○은 당시 피진정인 이△△이 자신을 포함하여 세 명의 미화원과 블루스를 추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참고인 김○○은 피진정인들이 평소에도 회식을 할 때면 미화원들에게 자주 뽀뽀를 하고 강제로 끌어안는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진정요지 자.항에 대하여는 피해자 조○○가 2007. 1. 4. ○○○경찰서에 진정요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진정인 조△△을 고소하였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 진정인과 피해자는 진정요지 카.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2007. 4. 16.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피해자는 다시 김○○을 상대로 같은 해 5. 14.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자. 진정인과 피해자는 2007. 5. 23. 진정요지 나.항, 마.항 내지 아.항 및 차.항에 대하여, 같은 해 7. 4. 진정요지 카.항에 대하여 각 취하하였다.

4. 판단

피진정인들은 이 사건 진정의 내용에 대하여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들은 진정인과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적 언동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는 성희롱을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

고 있다. 여기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외에도 보통의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느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 피진정인의 언동들이 진정인을 비롯한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였는지를 살펴보면, 직장상사인 남성이 부하직원인 여성의 가슴을 손등으로 수차례 접촉하고 허벅지를 만지며 뺨에 뽀뽀를 하는 행위, 직장상사이며 유부남인 남성이 부하직원인 여성에게 “사귀자.”, “애인하자.”라고 수차례 말하며 강요한 행위, 블루스를 추자고 강요하며 몸을 밀착시킨 행위 등은 보통의 여성들도 충분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계약직의 위치에 있는 중년 여성이고 배운 게 없기 때문에 피진정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억울하고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의 언동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 및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가. 진정요지 가.항, 다.항 및 라.항 부분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자.항 부분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

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이고, 진정요지 나.항, 마.항 내지 아.항, 차.항 및 카.항 부분은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13.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3. 해외 복지센터 소장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146 성희롱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이△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금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2. 사단법인 ○○○○○○○단 사무총장에게 향후 유사한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직원 및 해외파견 봉사단 교육 과정에 성희롱예방교육을 포함시키고,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지침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사단법인 ○○○○○○○단이 운영하는 '캄보디아 문화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고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복지센터' 소장인 피진정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하였음.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한 다음 날인 2006. 12. 5. “남자는 나이가 들어도 20대의 젊은이가 갖는 여러 욕구를 60대에도 고스란히 갖고 있다. 성적 욕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며 자신과 친딸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피진정인은 자신이 친딸을 애무하면 딸이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서로 빨고 핥아줬다, 성기 애무도 해주면서 실제 삽입만 빼고 할 거 다 한 사이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아버지가 어떻게 딸에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고 화를 내고 싶었지만 직장 상관이며 군인 출신인 피진정인이 두려워 감정 표시를 하지 못했다.

피진정인은 평소 진정인을 ‘이 간사’라고 호칭했는데, 2006. 12. 일자불상 경 “사실은 이 간사가 샤워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흘러내리는 물줄기 소리에 여인네의 나체가 상상되어 이 간사를 상상하며 손장난을 좀 했다.”는 말을 했고, 남자친구가 있는지 물으면서 남자친구와 자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피진정인은 또한 2006. 12. 6. 저녁식사 후 텔레비전을 함께 보던 중 타지에서의 외로운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개의 성기를 만져보니까 확실히 느끼는 것 같더라.”, “주변에 여자도 없이 너무 외로워서 도저히 못 참을 지경이 되면 수간을 하게 되겠더라.”라는 등의 말을 하고, “여자라면 다 좋아하지만 여자가 원하지 않을 때 강제로 덮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진정인은 이런 말을 피진정인으로부터 들은 다음날부터 문이 열리지 않도록 과도를 가로로 끼워놓고 자면서 기침이나 인기척이 들리기만 하면 깜짝 놀라서 깨는 등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많았다.

2006. 12. 중순 경 밤에 진정인이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작스레 피진정인의 방에서 포르노 영상물에서 나는 남녀 신음소리가 3분여 동안 흘러나왔다.

2006. 12. 중순 경 캄보디아 현지 직원 ○○로부터 “왜 공용노트

에 포르노를 저장해놨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한바 노트북 ‘바탕화면’에서 피진정인이 저장해 둔 포르노 파일이 다수 발견되었다. 여러 근무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노트북에 포르노를 그대로 둘 수 없어 컴퓨터의 ‘숨겨두기’ 기능을 이용해 포르노 파일을 숨겨두었는데 다음날 피진정인이 이를 왜 없앴느냐면서 진정인에게 오히려 화를 냈다.

2006. 12. 중순 경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CD를 노트북으로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해서 피진정인 방으로 건너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샤워를 막 마친 피부가 참 부드럽다, 여인네의 향기가 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머리카락에 코를 파묻고 냄새를 맡았다.

2006. 12. 중순경 피진정인은 운동을 한다면서 숙소 발코니에서 제자리뛰기를 한참 하더니, 웃옷을 벗고 땀으로 번들거리는 상체를 보이며 “남자는 역시 구릿빛 피부”라며 “여자들은 이런 거에 황홀해하지 않냐?”라고 물었다. 평소에도 피진정인은 덥다는 이유로 진정인 앞에서 팬티 차림에 셔츠를 풀어헤친 채로 다녔다.

진정인은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언동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 혐오감과 모멸감,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꼈고 결국 ‘복지센터’를 그만두게 되었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저녁식사 후 달리 할 일이 없어 숙소 발코니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면서 인생의 선배로서 진정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기는 했는데 진정인이 이를 과장하고 왜곡해서 진정을 한 것이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포르노 영상물을 진정인이 듣도록 일부러 틀어 놓았다고 주장하나 사실이 아니다.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올 때 친구들이 선물로 준 CD 일부에 포르노가 들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잘 못 건드렸다가 포르노 영상물이 작동되었던 것이고 곧 바로 중단시켰다.

3.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들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초사실

1) '○○○○○○○단'은 세계 각국의 비정부기구(NGO) 및 비영리기관에 청소년과 성인, 전문가 및 일반인들을 국제자원봉사자로 파견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교통상부 등록 비영리 민간기관이다.

피진정인과 진정인은 위 '○○○○○○○단'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복지센터'에서 함께 근무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센터장으로 2006. 10. 9.부터 2007. 2. 16.까지, 진정인은 간사 자격으로 2006. 11. 28.부터 12. 31.까지 근무하였다.

2) 진정인은 2007. 1. 22. 캄보디아에서 귀국한 후 2007. 1. 29. '○○상담소'에 피진정인의 성희롱 문제에 대해 상담하였고, ○○○○○○단 측에는 피진정인을 즉각 소환하고 해임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참고인들의 진술

1) '복지센터'에서 피진정인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캄보디아 여성 참고인 ○○은 피진정인으로부터 피진정인이 딸과 서로 애무를 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으로부터 '복지센터' 개소식 때 그의 부인이 오는데 본인이 원하면 성행위를 직접 보여 줄 수 있고 한국에서 가지고 온 포르노 영화를 보여주겠다는 말을 자주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진정인이 자주 몸을 밀착해서 참고인을 껴안으며 남자 어른이 아가씨를 안아 주는 것은 한국문화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한번은 피진정인이 참고인의 다리를 만지며 기분 좋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은 '복지센터'에서 조리사로 일했던 캄보디아 여성 △△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진

정인은 욕실 문을 열어놓고 샤워를 하면서 △△에게 수건을 가져다 달라고 하거나 목욕을 같이 하자고 했으며, 목욕 후에는 속옷도 입지 않고 수건만 두른 상태에서 포르노를 틀어 놓고 자위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져 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고 하였다. 피진정인은 이러한 행동을 거의 매일 반복했고, 당시는 △△과 피진정인만 센터에서 근무할 때였기 때문에 더욱 무섭고 고통스러웠다고 하였다.

2) '복지센터'에서 피진정인과 근무한 적이 있는 참고인 이○○은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피진정인과 딸과의 성행위에 관한 이야기 등을 거론하면서 "도대체 왜 그러신거냐?"라고 따져 묻는 것을 보았으며, 당시 피진정인은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는 아니었고 그냥 "나로 인해 문제가 있었다면 사과한다. 다 풀고 가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참고인 이○○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이나 캄보디아 여성 직원들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피진정인이 문을 열어 둔 채 샤워를 하는 것을 직접 보았고 피진정인이 노트북에 저장시켜 둔 포르노 영상물을 자신이 삭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이○○은 2007. 1.초 '○○○○○봉사단'의 사무총장에게 피진정인의 추문들을 전화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선발되어 '○○○○○문화센터'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참고인 민○○은 캄보디아의 한 호텔에서 숙박했을 당시 호텔 복도를 지나다 피진정인을 보고 인사를 했더니 피진정인이 "들어와서 이 방에서 자고 가라."라며 "나는 이 침대에서 잘 테니 너는 저 침대에서 자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해서 당황하고 불쾌했으며, 나중에 다른 봉사단으로부터 피진정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치고 여자 남자 끼어 앉으라고 하는 등 이상한 말을 많이 했다고 해서 본인에게 한 말도 진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불쾌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과 관련한 사실관계

1) 피진정인은 진정내용에 대하여 본인이 부지불식간 말실수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노골적인 이야기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진정내용을 모두 부인하였다. 그러나 참고인 ○○과 참고인 민○○의 진술 등이 진정인의 진정내용과 매우 유사한 점,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발탁되어 캄보디아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봉사단이 '○○○○○○○단'에 제출한 봉사활동 평가서에 '센터장의 성추행을 느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피진정인이) 엉덩이를 살짝 치고, 자리를 이동하는데 남자들 사이사이에 끼어 앉으라고 했다', '센터장의 행동이 불미스럽다'는 등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진정 내용과 같은 언동을 했을 것임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진정인이 한국으로 귀국하기 이전부터 참고인 ○○과 이○○에게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피해를 일관되게 호소해온 점,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행위로 인하여 평소 자신이 희망하던 캄보디아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을 한 달여 만에 중단하였고, 귀국 후 바로 '○○○○○○○단'에 피진정인의 소환과 해임을 요구한 점, 진정인에게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피진정인을 무고할 어떤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진정내용과 같은 음담패설과 진정인을 상대로 한 성적 표현을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2) 포르노 영상물을 옆방에서 틀어 놓았다는 진정인의 주장과 관련해서 피진정인은 실수로 잠깐 포르노 영상물이 작동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참고인 ○○의 진술과 피진정인이 공용 노트북 컴퓨터 바탕화면에 포르노 영상물을 저장해 둔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복지센터'에서 공공연하게 포르노 영상물을 보았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실수로 포르노 영상물이 자동적으로 작동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바로 중지시켰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판단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상대로 자신의 딸과 유사 성행위를 했다는 등 사회 통념 상 수용하기 어려운 음담패설과 '여인의 향기가 느껴진다, 진정인이 목욕하는 소리에 여인네의 나신이 상상되었다'는 등 진정인을 성적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저급한 표현을 지속하였고, 진정인에게 들릴 정도로 포르노 영상물을 크게 틀어 놓거나 공용물인 노트북 컴퓨터에 자신의 포르노 영상물을 저장시켜 진정인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를 볼 수 있게 하는 성적 언동 등을 하였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언동은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심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사건은 한국이 아닌 낯선 이국에서, 현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는 진정인과 피진정인만 '복지센터'에 남아 숙식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된 것으로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행위로 인하여 심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일련의 성폭력이 뒤따르지 않을까 하는 긴장과 공포감을 감내했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진정인이 피진정인이 두려워 '문고리에 칼을 옆으로 꽂고 잤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으며 작은 기척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조심했다'는 등의 표현을 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서 진정인이 당시 겪었을 심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을지 가늠할 수 있다.

나. '○○○○○○○단'의 귀책과 관련하여 위 단체의 사무총장은 진정인이 퇴직 의사를 표하면서 피진정인의 성희롱 사실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아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국가청소년위원회 대한민국청소년봉사단'이 캄보디아를 다녀와 제출한 평가서에 이미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에 관한 피해 내용이 일부 기재되어 있었고, 2006. 12. 29. 사무총장 등이 '복지센터'에 방문했을 당시, 진정인이 사무총장에게 "그동안 더럽고 추잡스런 일을 겪어서 너무 힘들다."라는 표현을 하고 퇴직 의사를 밝혔고, 이○○ 간사가 2007. 1.초 사무총장에게 피진정인의 성희롱 문제를 보고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위 기관에서는 적어도 2007. 1.초 이후에는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으로 인하여 여성봉사단원과 진정인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위 기관은 그 후 사실 확인을 위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07. 1. 30.경 진정인이 이를 문제 삼자 피진정인을 소환조치 하였고, 피진정인이 귀국하여 자진 퇴임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자원봉사자들을 캄보디아 등 저개발국가로 파견하는 위 기관은 업무 특성 상 자원봉사자들의 안전 특히, 성폭력 등의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 예방에 힘써야 함은 물론 우리나라 자원봉사팀에 의한 현지인들의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그 예방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위 기관은 본 사건 발생 이후 사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이로 인한 기관의 명예 실추 등을 우선 걱정하면서 사실규명에는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것으로 판단되고, 만약 진정인의 적극적 대처가 없었더라면 피진정인이 '복지센터'의 소장으로 그대로 남아 계속 활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이 과정에서 ○○과 △△ 등 캄보디아 여성들의 피해는 어떠한 사과나 보상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묻히게 되었다.

다. 종합하여 보건대, 진정인은 본 사건 성희롱 피해로 인하여 만성적 수면장애, 급체, 소화불량 등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아무런 대비 없이 갑자기 퇴직함으로 인해 당장의 경제적인 어려움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력단절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진정과 고소를 하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하고 있는 바, 진정인의 이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최근 해외 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바, 해외 봉사 활동 과정에서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단들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의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 및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30.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4. ○○공제조합 지부장 등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483 성희롱
【진 정 인】 최○○
【피 해 자】 전○○
【피진정인】 홍△△

【주 문】 전국○○○○○○공제조합 이사장에게 직장 내 성희롱 전담 고충처리기구 설치와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을 포함한 성희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전국○○○○○○공제조합 ○○지부에 근무하던 중 2006. 5. 및 2006. 11.경에 두 명의 직장상사로부터 각 성희롱을 당하여 이 사실을 2006. 12. 18. 시행된 성희롱 관련 설문조사 과정에서 신고하게 되었는데, 당시 ○○ 지부장의 직위에 있던 피진정인은 사건을 내부적으로 해결하자며 이를 은폐하려 하였고, 2007. 1. 3. 피해자와 만나 이야기하던 중 "○○의 와이프는 유학 갔어, 혼자 홀

아비지, 소개시켜 줄까"라는 말 등으로 모욕감을 주었으며, 귀가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무릎을 베고 눕는 등의 성희롱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모욕감을 주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해자가 제출한 성희롱 설문조사서를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 지부장으로서 사실관계의 조사 및 확인절차를 위해 두 명의 행위자들로부터 진술서를 제출케 하고 피해자를 면담하는 등 자체 조사를 하였고, 다른 직원들 모르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두 명의 행위자에 대한 경고와 함께 사과편지를 제출하게 하여 피해자를 위로하였으며, 지부장으로서 재발방지를 보장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당사자간 화해시키는 방안이 최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조정을 모색하였다. 2007. 1. 3. 피해자를 만나 관리책임자로서 사과하고 요구사항을 들어본바 관련자들의 전출을 요구하여 직원의 인사이동은 본사에서 발령하므로 당장은 어렵다고 설명하고 타 부서 이동 및 사과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였으며 당일 이야기하는 도중 피해자의 무릎을 토닥거리긴 했지만 다리를 만지거나 무릎을 베고 누운 사실은 없다.

3. 인정사실

피해자 및 피진정인의 진술, 2007. 1. 3. 피해자와 피진정인이 나눈 대화 녹취록, 회사 감사실의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진정제기 당시 전국○○○○○○공제조합 ○○지부 직원이었고, 피진정인은 위 지부의 지부장이었다.
나. 전국○○○○○○공제조합 ○○지부는 2006. 12. 18.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에게 성희롱 경험 사례 등을 기록한 설문 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바, 피해자는 그 동안 직장상사 두 명으로부터 당한 강제적인 입맞춤과 포옹 등의 성희롱 피해를 설문조사서에 적어 제출하였다.
다. 피해자가 설문조사서를 총무과에 제출한 2006. 12. 26. 오후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지부책임자로서 사죄한 후 "가해자에게 어떤 징벌을 원하느냐?"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가해자들과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어려우니 타 지부로 발령을 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가해자 두 사람의 사과편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면서 조용히 처리하자고 하였고,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문제를 내부적으로 무마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마. 피진정인은 2007. 1. 3. 피해자를 만나 두 사람을 다른 지부로 보내기 어려우니 다른 부서로만 이동시키겠다며, "이번 한 번만 도와 달라, 이번 일이 오픈되면 내가 다른 지부로 갈 각오하든지 그만두든지 해야 한다."라며 사건을 마무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바. 같은 날 귀가하는 차안에서 피해자는 피진정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위원회에 제출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진정인에게 "그만 만지세요", "손 치우시구요", "제 다리에 누우시면 대리아저씨가 싫어해요, 진짜로"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노래 한번 하고 가자.", "김○○의 와이프는 미국 유학 갔어, 혼자 홀아비지, 소개시켜 줄까?", "자주 만나서 소주 한잔씩 하자."라고 말하였다.
사. 피해자는 2007. 1. 24.부터 같은 해 3. 5.까지 ○○신경과의원에서 우울증으로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2. 12.부터

28.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아. 피해자는 2007. 2. 23. 사무실에 나와 병가를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이 '병가를 내게 되면 이사장이 알게 되니 병가를 내지 말고 아침에 출근해서 출근체크만 하고 조퇴하라'고 하자, 참다못한 피해자는 같은 달 26. 성희롱 사실을 노동조합과 본사에 알렸다.

자. 노동조합은 2007. 2. 26. 회사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는바, 회사는 같은 해 3. 22. 가해자 두 명에게 감봉 2개월 또는 견책 처분하였고, 피진정인은 '지시위반 및 직무상 의무태만'으로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었으나 같은 해 8. 31.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4. 판단

가. 성희롱 관련 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5호는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제14조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피해주장을 제기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업무 등 관련성 여부

피진정인은 전국○○○○○○공제조합 ○○지부 지부장이고 피해자는 동 지부 직원으로 직장 내 상하관계에 있고, 2007. 1. 3. 피해자와 피진정인의 만남은 피해자가 신고한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피진

정인이 할 얘기가 있다며 퇴근 후 만날 것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성희롱에 있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진정인의 행위가 성희롱인지 여부

성적인 언동이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남성 직장 상사가 승용차 뒷좌석에서 여성 직원의 무릎을 만지고 무릎을 베고 누우려 하는 등의 행위는 일반적인 여성들이 성적 굴욕감 또는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적 성희롱이다. 특히 피해자는 이미 두 명의 남성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으므로 특별한 배려와 주의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신체적 접촉과 아울러 “노래방에 가자, 홀아비를 소개시켜 주겠다, 자주 만나서 소주 한잔씩 하자.”라고 하였는바, 직장상사이고 성희롱 사건 처리의 책임이 있는 피진정인이 성희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화 중 성적 함의를 담은 신체적 접촉과 언동을 하였다면 피해자가 느낄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라. 성희롱 사건 발생시 조치의 적절성 여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사전 교육하는 등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나 성희롱 발생시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상담하고 사건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공정하고 적절하게 조사·구제할 수 있도록 그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희롱 사건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회사를 대신하여 현실적으로 ○○지부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며 부당한 성적 차별이나 성희롱 등으로 인격적 존엄이 훼손당하는 일이 없도록 직장 내 업무 환경을 항상 점검하고 주의

해야 할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은 후 사건을 조용히 무마하기에 급급하였으며, 위와 같은 추가적 성희롱을 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자가 그 내용을 신고했을 때 이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절히 보호하고 조사 및 구제하는 절차의 확립과 적절한 내용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피해자와 피진정인이 근무하던 전국○○○○○○공제조합은 매년 성희롱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왔지만, 본 건 발생 및 처리과정에서 보듯 성희롱예방교육 만으로는 성차별이나 성희롱에 관해 모든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을 상담하고 성희롱 발생 시 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절차 및 조치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30.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5. 컨설팅 회사 상사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838 성희롱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김△△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과 진정인에 대하여 피해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2.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에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진정인과 직장 상하관계에서 같이 근무하였는데, 피진정인은 2005. 10. 일자불상 경 모 직원의 송별회를 마치고 간 노래방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강요하면서 몸을 밀착하였고, 2006. 5. 일자불상 경 회식 후 모 노래방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 안에서 진정인의 가슴을 지그시 누르면서 유두를 만졌다. 그리고 2006. 9. 11. ○○역 근처의 모 술집에서 "너, 전에 노래방에서 게임하면서 뽀뽀하기로 했을 때 안했지 않냐? 키스해 줘."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이러한 언동들로 인해 심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고 결국 이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주장하는 성적 행위나 발언을 한 적이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들의 각 진술과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5. 4.부터 2006. 3.까지 주식회사 □□□□ 및 그 이후 동 회사가 인수 합병된 주식회사 ○○○○에서 피진정인은 상무이사로, 진정인은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였다.
나. 진정인과 함께 근무하다 퇴직한 참고인 박○○는 2006. 9.경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요지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들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퇴직한 사실에 대해 들었고 말하는 내내 진정인이 울면서 심리적으로 힘들어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진정인의 직장동료였던 참고인 윤○○는 2006. 9. 12. 진정인으로부터 회사를 다니지 못하겠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1~2주 후 이메일로 진정인이 작성한 사직서를 받아 피진정인과 사장에게 구두로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참고인 윤○○는

진정인이 인터넷 채팅 시 피진정인 때문에 퇴직하게 되었고 피진정인이 노래방에서 한 언동으로 인해 매우 불쾌하였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라. 당시 진정인의 집에서 거주하였던 참고인 장○○는 진정인이 피진정인과 마지막으로 만나고 돌아온 날 진정인으로부터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에 대해 모두 들었는데 그에 관해 얘기하는 동안 울음을 그치지 못했으며 그 다음날부터 직장을 나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진정인은 2006. 9. 22. 윤○○와 피진정인 등에게 사직서가 첨부된 '상무님 보세요'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동 사직서에는 '상무님은 전에 실수 하였던 부분을 이야기 하시면서도 또 그런 말을 바로 하시는 거에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2번은 실수든 뭐든 이해하지만 3번은 용서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0여분도 지나지 않아서 상무님이 그런 말씀을 농담이든 진담이든 하셨다는 부분에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상처가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2007. 1. 5. 진정인과 윤○○가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진정인이 퇴사한 후 인터넷 채팅 시 윤○○에게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에 대해 말했더니 윤○○가 진정인을 탓해 괴로웠다는 것,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들로 인해 심한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는 것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사.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언동을 피진정인이 한 것이 사실인지에 관하여 직접 그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나 사진 또는 녹음 등의 직접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성희롱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한다는 점, 진정인은 퇴직 직후 피진정인의 행위와 그로 인해 사직하게 된 사실을 참고인 박○○, 윤○○, 조○○에게 일관되게 말한 점, 진정인이 피진정인과 윤○○에게 보낸 사직서에 '아무렇지 않게 출근하기에 마음이 용납이 안 된다... 상무님의 언동이 이해가 되지 않고 용서할 수 없다.'라고 간접적으로 성희롱 사건이 있었다는 사

실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업무 상 냉정하게 대한 것이 진정인의 퇴사한 이유라고 주장하나 동 사직서에 '업무적으로 힘들어서 그만 둔 게 아니라는 것은 상무님도 알고 있다... 상무님은 전에 실수하였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도 또 그런 말을...'라고 하여 업무로 인해 사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진정인이 일련의 성희롱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 이외에는 회사를 그만 둘 동기가 없었다는 점, 진정인이 윤○○에게 보낸 메일에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언동과 그로 인한 수치심과 굴욕감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피진정인의 언동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4.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5호는 성희롱을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외에도 보통의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느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나. 위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피진정인의 언동들이 진정인을 비롯한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였는지를 살펴보면, 직장상사이며 기혼인 남성이 부하직원인 미혼여성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강요하며 몸을 밀착시킨 행위, 가슴을 눌러 유두를 만진 행위, 성적 언동을 한 이후 "너를 정말 좋아한다.", "전에 노래방에서 게임하면서 뽀뽀하기로 했는데 안했잖아. 키스해 줘."라고 수차례 말하며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강요한 행위 등은 보통의 여성들도 충분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이라 할 것이다. 실제로 진정인은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언동들로 인해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고 그 충격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으며 지금도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다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두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의 언동은 진정인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 및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30.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6. 사회복지법인 상사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610 성희롱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최○○

【주 문】 사회복지 법인 ○○ 회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6. 9. 8. 직장상사인 피진정인과 퇴근 후 업무에 관해 의논하기 위해 저녁식사를 하다가 술자리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 2차 술자리 후 피진정인이 술에 취한 진정인을 비디오방에 데려가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진정인의 입에 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진정인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었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06. 9. 8. 저녁 진정인과 ○○ 근처 식당에서 고기와 함께 대나무 술을 두 병 마시며 업무 상 이야기를 나누고 개인적 충고도 하였다. 1차 후 진정인이 2차를 가자고 하여 식당 앞에 있는 '○○○○'라는 맥주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진정인이 혀가 꼬부라지고 직원들 욕을 하는 것을 보고 술이 취했다고 생각하여 지하철을 타기 위해 11시경 술집에서 나왔다. 지하철역으로 가던 중 진정인이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토하고 어지럽다며 누우려고 하여 노래방에서 좀 누워있으면 좋겠다 싶어 근처 노래방에 진정인을 부축해 갔는데 빈 방이 없다고 하여 옆에 있던 비디오방으로 갔다. 비디오방 소파에 진정인을 눕히고 물을 먹인 후 땀을 닦고 있는데, 소파에 누워있던 진정인이 갑자기 상의 단추를 풀기에 놀라서 소파 위에 올라가 진정인의 뺨을 때리며 정신 차리라고 하였다. 진정인이 다시 토하려고 하여 여자 화장실로 데려가 토하게 한 후 택시를 타고 본인은 ○○역에서 내려 찜질방에 갔으며 진정인은 귀가하였는바 위 과정에 진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없었다.

다. 참고인

1) 한○○(전 ○○복지관 직원)

2006. 9.경 ○○역 근처 찻집에서 진정인으로부터 '9월 초순 피진정인과 밥 먹고 맥주 한잔 했는데 속이 안 좋아서 구토를 하는 사이 부장님이 비디오방을 잡았다, 거의 떠밀려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안 좋은 일을 당했다,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장에 알리고 경찰에 고소하라고 충고하였다. 그 후 같은 해 11.경 진정인으로부터 '(내가) 쓰러져 있을 때 (피진정인이) 툭툭 치고 하더니 정신을 못 차리니까 블라우스를 헤치고 가슴을 만지면서 "가슴이 예쁘다."라고 하고, 성기를 입에 대면서 "남들이 내꺼 크다고 그러던데"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2) 이○○(○○복지관 복지과장)

2006. 하반기경 퇴근하는 차 안에서 진정인으로부터 '피진정인과 술자리가 있었고 서로 옥신각신 했다, 말하기는 곤란한데 힘들다, 상담을 했다'는 등의 말을 들었고 그 후 두세 번 정도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여 '개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조언하였다.

3) 강○○(진정인의 남편)

진정인으로부터 2007. 6. 초순경 진정요지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참을 수가 없어 같은 달 14. ○○복지관을 방문하여 관장실에서 피진정인에게 "완전한 사람은 없다, 나는 용서하기 어려우나 지우고 살도록 노력하겠다, 이○○와 우리 가족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해라."라고 말하자 피진정인이 무릎을 꿇고 빌면서 "죽여주세요, 손목을 잘라주세요,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였다. 피진정인에게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이 많이 취했다." 라고 말을 바꿔 복지관 직원들을 관장실로 불러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한 성추행 사실을 얘기하고 피진정인에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안 그런 것입니까?" 라고 묻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하여 직원들에게 "여러분이 본 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한 후 자리를 파했다.

3.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사회복지법인 ○○의 ○○지부 총무과장이고, 피진정인은 위 ○○ 산하 ○○복지관 총무부장이다. ○○복지관 직원은 총 23명이고, ○○지부 직원은 2명인데, ○○복지관 관장이 ○○지부장을 겸하고 있고, 피진정인 또한 ○○지부 일까지 관할하고 있어 당사자들은 직장 내 상하관계에 해당한다.

나. 피진정인은 2006. 9. 8. 진정인에게 업무 상 할 이야기가 있다

며 저녁식사를 하자고 하였고, 두 사람은 오후 7시경 ○○ 터미널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대나무술 2병을 마시고 21:59분에 나왔으며, 2차로 간 ○○○○라는 맥주집에서는 12시가 넘은 9. 9. 0시 11분에 나와 ○○디브이디영화관에 갔다.

다. 피진정인은 6. 18. 관장실에 복지관 직원들을 모아 놓고 "작년 9. 8. 술을 마셨는데 이○○ 과장이 만취했다, 정신을 못 차려서 비디오방에 데리고 갔고 정신 차리라고 뺨을 때렸고 거기서 씻고 추스린 다음 택시를 태워 보냈다."라며 당시 상황을 이야기한 후, 직원들에게 '진정인이 2006. 12. 과 2007. 1.경 술에 취한 적이 있고, 보직을 바꾸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 근무 동안 술에 취한 적이 없고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위원회의 현장조사에 의하면, 당사자들이 저녁을 먹은 식당 바로 맞은편에 ○○○○라는 맥주집이 있고 맥주집에서 나와 왼편으로 걸어가면 저녁에 택시들이 서 있는 일방통행로가 있다. 진정인이 토한 장소라고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곳은 맥주집에서 나와 왼쪽 모퉁이에 있는 편의점 ○○○○○에서 10여m 떨어진 인도인데, 그 장소 바로 뒤쪽에 ○○노래방이 있고, 앞쪽과 왼쪽 대각선 옆에도 노래방이 있었으며,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데려가려 한 △△△노래방은 토했다는 장소에서 50여m 떨어져 있었다.

마. 피진정인은 지하철로 귀가하기 위해 술집에서 계속 시간을 확인하였고 밤 11시경 술집에서 나와 지하철역으로 가던 중 진정인이 길거리에서 토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영수증에 의하면 실제 두 사람이 맥주집에서 나온 시각은 자정이 넘은 다음날 새벽 00시 11분으로 그 시간에는 지하철을 타기 어려울 뿐더러 위치상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는 술집에서 나와 오른편으로 가야 함에도 진정인이 토했다는 장소는 왼편으로 돌아가는바 두 사람이 그 장소에 서 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바.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길거리에서 토한 후 바닥에 누우려고 하여 진정인을 부축해서 '△△△노래방'이 있는 건물로 갔다고 하나,

△△△노래방은 진정인이 토한 장소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고 간판도 눈에 띄지 않는 반면, 진정인이 토했다는 장소 바로 뒤에 ○○노래방이 있었고 앞쪽과 대각선 옆으로도 노래방이 있었는바, 가까이 있는 노래방을 두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진정인을 부축하여 가장 멀리 있는 노래방으로 갔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 피진정인은 2007. 6. 14. 진정인의 남편 강○○와 진정인 및 직원들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진정인이 진정요지와 같은 내용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행위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채 다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답변하였으며 자리가 파한 이후에도 진정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및 항변 등을 바로 하지 않았는바, 본 진정요지의 내용이 진정인의 허위 주장이라면 그에 대해 즉시 그리고 적극적인 반박을 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의문스럽다.

아. 피진정인이 ○○에 제출한 경위서, 직원들에게 했던 해명,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그 구체성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바 2차 맥주집에서 나간 시간에 대하여 ○○에 제출한 경위서에는 22시 30분이라고 했으나 위원회 출석조사 시에는 23시라고 진술하였고, 비디오방에서 진정인이 옷을 벗은 상황에 대하여 직원들에게는 상의를 벗었다고 하였으나 출석조사 및 ○○ 경위서에는 블라우스 단추를 풀었다고 하였으며, 출석조사 시에는 비디오방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뺨을 때리자 정신이 들어 화장실에 데려갔다고 하였으나 직원들에게 한 설명 및 ○○에 제출한 경위서에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뺨을 때리자 진정인이 마구 팔을 흔들어대어 본인의 중심 부위가 맞았다고 하는 등 피진정인이 설명하는 구체적 정황에 일관성이 없다.

자. 피진정인은 위원회 출석조사에서 진정인이 “길가에 엉덩이를 깔고 앉아 두 다리를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토했다.”라고 재연하였으나, 여성들이 위와 같은 자세로 토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특히 당시 진정인은 무릎 정도 길이의 치마를 입고 있었는바, 치마를 입고 위와 같은 자세로 앉기도 불편할 뿐더러 치마를 입은 상태

에서 토했다면 구토물이 치마로 쏟아져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차. 또한, 피진정인은 위원회 출석조사시 "비디오방에서 진정인이 블라우스 단추를 푸는 것을 보고 신발을 신은 채 의자 위로 뛰어올라가 진정인을 거세게 흔들고 뺨을 때렸다."라고 당시 상황을 재연하였는바 당초 비디오방에 간 이유가 진정인을 쉬게 하기 위함이었고 진정인이 블라우스 단추를 푼 이유는 "더워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더워서 단추를 푼 사람의 몸 위로 신발을 신은 채 뛰어 올라가 몸을 흔들고 뺨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카. 한편, 참고인 한○○과 이○○은 진정인으로부터 피진정인에게 좋지 않은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으며, 특히 한○○이 진정인으로부터 2006. 11.경 들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진정요지와 일치한다.

타. 여성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남성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적 언동을 당했다면 그 이유 및 정황을 불문하고 피해자인 여성에게도 비난을 가하는 것이 우리 사회 성문화의 일반적인 특성인데 남편이 목사인 진정인이 이러한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없는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 얻을 수 있는 반사적 이익을 찾기 어렵다.

파.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은 술에 취한 진정인을 쉬게 할 목적으로 비디오방에 간 것은 사실이나 진정인의 가슴을 만지거나 하는 등의 성적 언동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참고인들의 진술,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 성희롱 심의위원회의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면 2006. 9. 8. ○○디브이디영화관에서 진정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이 있었음은 사실로 인정되며, 이를 부인하고 있는 피진정인의 진술은 일관성 및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판단

가. 업무 관련성 등 여부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직장 내 상하관계에 있고 2006. 9. 8. 당사자들이 만난 것은 업무 상 할 이야기가 있다는 피진정인의 요구에 의하여 시작되어 술자리로 이어진 것인바, 진정인의 입장에서는 업무 상 만나자는 상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므로 본 사건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5호에 정한 업무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성희롱인지 여부

피진정인은 업무 상 할 이야기가 있다며 진정인을 만나 술을 마시고 이후 비디오방에서 진정인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진정인의 입에 대는 등의 성적 언동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 여성이라면 누구나 심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 및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인은 사건이 발생한지 1년여가 지났음에도 피해의식과 심한 수치심으로 현재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바 그동안의 심리적 고통이 어떠했을지는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근무하는 ○○은 직원들이 기관의 가치와 소명에 따라 윤리적, 합법적, 일관성 있는 행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직원행동강령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위 지침은 성희롱 및 불법적인 희롱과 ○○의 명성에 부적절하거나 명성을 위태롭게 하는 성적인 언동을 금지해야 할 직원행동규범으로 제시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의 중간 간부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오히려 위와 같은 성희롱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11.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7. 논술학원장의 강사에 대한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330 성희롱
【진 정 인】 손○○
【피진정인】 손○○

【주 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논술학원 ○○분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원장인 피진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성희롱을 당했는바 피진정인의 특별인권교육 수강과 재발방지를 원한다.

가. 2005. 7~8.경 학원 업무가 많아 밤늦게 끝나는 날에 피진정인은 몇 차례 자신의 차로 진정인을 집에 데려다 주었는데, 차 안에서 "차비를 내야지..."하면서 진정인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나. 2006. 6.경 오랜만에 ○○분원에 다시 일하러 갔는데 피진정인이 할 말이 있다며 원장실로 들어와 자리에 앉으라고 하더니 실실 웃으면서 진정인의 허벅지를 만졌다.

다. 2006. 6.경 교무실에 대기하고 있는데 피진정인이 교무실로 와

서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야한 사진이 올라와 있다고 장면을 설명하면서 보라고 하였고 피진정인이 직접 사이트를 찾아주려고 하였으나 결국 찾지 못하였다.

라. 2006. 6.경 교무실에 앉아 있는데 피진정인이 다가와 앉으면서 또 허벅지를 만지려고 해서 진정인이 손으로 뿌리치면서 "아 원장님 성추행으로 고소할 거예요."라고 말하자 피진정인이 실실 웃으면서 "고소는 무슨 고소...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말하였다.

마. 2006. 6.경 ○○분원 로비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껴안으려고 하여 옆으로 피했더니 다시 길을 막아서며 강제로 껴안으려고 해서 피진정인의 팔을 뿌리치며 짜증을 냈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입시대비로 학원업무가 밤늦게 끝나는 경우가 간혹 있어 몇 차례 차로 진정인을 집 근처까지 데려다 준적은 있으나 진정인의 허벅지 안쪽을 만진 적은 전혀 없다.

2) 2006. 6.은 학생들이 기말고사 중이어서 학원이 휴강기간이고, 진정인이 ○○분원에 주로 온 것은 2학기 수시전형 대비를 하던 8월 이후로 기억되며 6월은 진정인이 ○○이 아닌 △△ 등 다른 분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진정인을 만날 일은 거의 없었다.

3) 언젠가 교육 사이트인지 언론 사이트인지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에 좀 야한 사진이 올라와 있어 여러 선생님들이 있는 교무실에서 얘기한 것을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딱히 진정인을 지칭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공식적인 사이트에 뜻밖의 사진이 게재된 것을 보고 확인 차원에서 물어본 것으로 당시 진정

인 외에도 2~3분의 다른 선생님들이 같이 있었으나 모두 웃고 말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4) 진정요지 라.에 대한 기억이 없으며 진정인과는 한번도 어떤 사안에 대하여 심각히 토론하거나 문제제기를 받은 적이 없다.

5) 학원로비는 학생, 학부모, 강사 등 여러 사람이 다니는 가장 번잡한 곳으로 그런 장소에서 본인이 진정인을 껴안으려 했다고 주장하는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으며 반갑다고 인사하는 차원에서 손을 쳐들고 어깨를 친다거나 하는 행동을 했을 수는 있으나 일상적이고 편하게 대하던 행동이어서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3. 관계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논술학원 ○○분원에서 2005. 4.경부터 2006. 12.경 △△△논술학원 ○○분원이 폐업하기 전까지 첨삭 강사로 일을 하였다.

2)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진정인은 2006. 6.에 총 5회에 걸쳐 △△△논술학원 ○○분원에 첨삭강사로 출강하였으며, 피진정

인이 제출한 '소득자별 소득합계표(사업)'에는 2006. 6.분 급여로 진정인에게 56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피진정인은 2006. 12. 8. 본 사건과 별개의 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고, △△△ 논술학원 ○○분원은 2006. 12. 폐업하여 본사인 주식회사 △△△ 논술아카데미에서 동 학원을 직영하고 있다.

4) 진정인이 2006. 6. 9. ○○상담소에 '직장 내 성희롱예방'관련 자료구입 신청을 하였고, ○○상담소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서인 '새로운 직장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진정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다.

5) 2007. 5. 15.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진정 취하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내용 중에 "…이렇듯 저는 손 선생에게 친근하고 또 후배에게 하듯이 대하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의 편하게 대하고자 했던 마음과 표현이 손 선생에게 불쾌하게 또 상처로 될 줄은 몰랐습니다. … 참으로 저 자신에게 엄청나게 화가 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 정말로 정말로 미안합니다. … 본의 아니게 손 선생에게 상처를 준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말이 적혀 있다.

나. 판단

진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면,

첫째, 진정요지 가, 나, 라 즉 피진정인이 차 안, 원장실 및 교무실에서 허벅지를 만지거나 만지려고 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2006. 6.경 당시 진정인이 다른 분원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진정인을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인이 제출한 통장사본과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소득자별 소득합계표'에 2006. 6.에 진정인이 ○○분원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진정인이 ○○상담소에 '직장 내 성희롱예방'관련 자료 구입 신청을 하여 구매한 사실이 ○○

상담소의 관련 서류에 기록되어 있는 점이 확인된다.

또한 직장 동료인 참고인 ○○○은 "2006.중반 경 피진정인이 진정인 등 일부 여자 강사들에게 성희롱으로 오해할 만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진정인으로부터 들었고 진정인이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참고인 ○○○은 진정인으로부터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끌어안았다는 것과 신체의 일부를 만졌다는 말을 들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어떤 식으로 만졌는지는 듣지 못하였고, 진정인이 다른 동료에게 피진정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참고인 ○○○은 2006. 10. △△△논술학원 ○○분원을 그만둔 후 진정인을 만났을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감싸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참고인 ○○○은 2006. 10. 17.경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자신을 포함한 여러 여자 강사, 직원에게 성추행을 해왔다고 말한 바 있고, 성추행 내용은 피진정인이 이야기 중에 어깨와 허벅지를 만진다든지 어깨를 주무르는 등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의 주장에 신빙성과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단 둘이 있는 차 안 및 원장실 등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허벅지를 만진 것은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로비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껴안으려고 해서 옆으로 피했더니…"라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하나, 참고인 ○○○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끌어안는 모습을 직접 본적이 있는데 오랜만에 진정인이 인사차 방문했을 때 피진정인이 기뻐하며 학원 안내데스크 옆에서 진정인을 끌어안으며 반가워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진술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끌어안는 것을 본 적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비록 피진정인이 반갑다는 차원에서 진정인을 끌어안았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강제로

끌어 안았다면 이는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2006. 6.경 교무실에 대기하고 있는데 피진정인이 교무실로 와서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야한 사진이 올라와 있다고 장면을 설명하면서 보라고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지칭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공식적인 사이트에 뜻밖의 사진이 게재된 것을 보고 확인 차원에서 물어본 것으로 당시 2~3명의 다른 선생님이 같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며 당시 모두 웃고 만 것 같다고 소명하고 있고, 진정인은 이 사실을 참고인 ○○○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고인 ○○○은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진정인도 피진정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찾지 못해 야한 사진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인터넷에 야한 사진이 있다.”라고 언급한 것만으로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 제5호가 규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20.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8. 동장의 통장에 대한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585 성희롱
【진 정 인】 하○○
【피진정인】 주△△

【주 문】 ○○시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동장으로 있는 ○○동에서 통장으로 일하였는데, 피진정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희롱을 당하여 심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1) 피진정인은 2005. 9. 일자불상 경 진정인과 둘이서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 도중에 모 모텔 주차장으로 차를 몰면서 "식사는 좀

있다 하고 여기서 좀 쉬었다 갑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너무 놀란 나머지 차에서 뛰쳐나와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2) 피진정인은 같은 해 11. 일자불상 경 동사무소로 진정인을 불러 의자에 앉히더니 갑자기 진정인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유두를 빨았으며 목에 키스를 하였다.

3) 피진정인은 같은 해 11.부터 2006. 6.말경까지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차 한 잔 달라, 부인이 치료를 받으러 갔으니 집에 놀러 와라, 사랑한다, 간밤에 네 생각을 하느라 잠을 못 잤다.’ 등의 말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모 모텔 주차장에 간 것은 사실이나 진정인이 한기가 든다면서 쉬었다 가겠다고 하여 모텔 앞에 진정인을 내려 주었을 뿐이고, 진정인이 주장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2) 그 밖에 진정인이 주장하는 성적 행위나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다. 참고인 ○○시장

우리 시에서는 진정인이 2007. 5. 20. 제기한 피진정인의 성추행 등을 조사하였고 「지방공무원법」제48조 성실의무 및 제55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구청장에게 동 법 제69조 제1항에 의거 ‘경징계’할 것을 조치의견으로 공문을 보냈다.

3.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들의 각 진술과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1999. 2. 1.부터 2007. 5. 16.까지 월 20만원의 통장수

당을 받으면서 ○○동사무소의 11통장으로 일하였고 피진정인은 2005. 1. 10.부터 2007. 7. 1.까지 같은 동 동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진정인은 2007. 5. 피진정인과 이 사건에 관하여 나눈 대화를 녹음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모텔로 나를 데리고 갈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동장님이 나를 그런 쪽에 데리고 가 가지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나왔는데, 그런 부분 동장님이 인정한다, 그지 예?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라고 묻자 피진정인은 "잘못됐지. 지금 무슨 소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하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개과천선해 가지고..."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저보고 또 동사무소 불러 가지고 할 말 있다고 동사무소 불러 가지고 그렇게 성추행, 동사무소 캐비닛 뒤에 앉아 가지고 내보고 성추행했던 것 인정합니까?"라고 묻자 피진정인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진정인이 다시 "저희 집으로도 하고 내 휴대폰으로도 하고 전화 늘 해가지고 집에 갈 테니까 차 한 잔 도. 했던 말 늘 몇 차례, 수 십 차례 차 한 잔 도. 집에 간다. 하는 말 인정하지 예?"라고 묻자 피진정인은 "예."라고 답변하였다.

다. 진정인과 같은 동의 통장으로 일하였던 참고인 문○○은 2006. 4.경 진정인과 차를 마시고 있는데 진정인이 피진정인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은 후 피진정인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였다면서 피진정인을 욕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진정인과 같은 동의 통장으로 일하였던 참고인 조○○은 2006. 6.경 피진정인과 통화를 하던 진정인이 갑자기 수화기를 조○○의 귀에 대어주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지짐이와 탁주를 가져오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고 진정인으로부터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사랑한다면서 피진정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는 전화를 수차례 하여 괴롭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진정인은 사단법인 ○○상담소에서 2007. 5. 22.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았고 같은 달 30. ○○시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시청은 진정인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조사를 하여 ○○시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을 경징계 하도록 의견을 보냈으나 ○○광역시 인사위원회는 불문으로 의결을 하여 ○구청장은 피진정인을 징계하지 않았다.

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은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언동을 피진정인이 한 것이 사실인지에 관하여 위 나.항과 같이 피진정인이 모든 사실을 진정인에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 피진정인의 일부 언동을 전화로 직접 들은 자가 있다는 점, 진정인은 사건 발생 시 피진정인의 일부 언동을 참고인 문○○과 조○○에게 말하였고 ○○시청과 상담기관에 일관되게 피진정인의 행위를 진술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피진정인의 언동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는 성희롱을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외에도 보통의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느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위의 인정사실과 같은 피진정인의 언동들이 진정인을 비롯한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였는지를 살펴보면, 우선 남성이 여성에게 쉬었다 가자면서 모텔 앞으로 차를 몰고 가거나 거부하는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수차례 사

랑한다고 하면서 차 한 잔 달라고 하는 등의 언동은 보통의 여성들이 충분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이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의 신체 중 가슴, 유두, 목을 강제로 만지거나 빠는 등의 행위는 일반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심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실제로 진정인은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언동들로 인해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으며 그 충격으로 인해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고 지금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의 언동은 진정인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 및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9. 논술학원장 등의 강사에 대한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600 성희롱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1. 최□□
2. 서△△

【주 문】 1. 피진정인들에게 연대하여 진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서△△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피진정인 최□□에게 논술학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각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논술학원 ○○분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원장인 피진정인 최□□와 이과 강사인 피진정인 서△△로부터 여러 차례 성희롱을 당했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1) 2006. 7. 3. 학원 근처 식당에서 서△△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이 자리에서 서△△는 다른 여자들 즉 여자 가수, ○○의 모산부인과 의사, 동료강사 등과의 성관계 경험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였으며, 특히 2007. 3. 8. 경 학원근처 꼬치구이집에서 평소 절친하게 지냈던 동료강사 차○○가 ○○에서 근무하게 되어 환영하는 모임에 본인, 서△△, 차○○가 함께 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여자가수, ○○의 모 산부인과 의사, 동료강사와의 성관계 경험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하였고, 본인에게 "야 너 진짜 살 좀 쪄야겠다. 왜 그러냐면 여자가 살이 너무 없으면 그거 할 때 남자가 아프단 말야."라고 하였다.

2) 2006. 10.말 또는 11.초 일자불상 경 진정인은 본원인 ○○동에서 진행된 글쓰기 세미나를 마치고 다른 분원에 있는 동료강사 홍○○, 황○○, 오○○, 윤○○과 같이 점심식사를 하러 갔는데 서△△가 늦게 도착하여 식사를 같이 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미 식사를 마친 진정인이 "배가 부르다."라는 말을 하자 서△△가 "애 가졌냐, 내 애는 아닌데 누구 애냐?"라는 말을 하여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3) 2006. 12. 21. 학원 교무실에서 서△△는 진정인과 동료강사 정○○ 앞에서 "전날 ○○동에 갔었는데 어떤 여자 선생님이 술에 취한 나를 차에 태워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후 옷을 벗고 달려들었는데 이를 과감히 뿌리치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였다.

4) 2007. 1. 27. 오후 1시 30분경, 학원 교무실에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생이 있는 앞에서 서△△가 갑자기 진정인의 손을 잡아 끌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갔다. 진정인이 "왜 그러냐?"라고 묻자 서△△는 "며칠 전에 새로 산 차를 보여주겠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자."라고 하여 화가 났지만 학생 앞이라 내색을 하지 않

고 학생과 함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다가 수업준비를 해야 한다며 곧 올라 왔다.

5) 2007. 3. 22. 동료강사 정○○, 이○○의 집들이 후 뒤풀이에 참석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수학강사를 새로 채용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 서△△는 자기의 모임인 '술사모'에 여자 수학강사가 있다며 "몸매가 죽인다."라고 대답하자 최□□이 "가슴이 크냐?"라고 말하였다.

6) 2007. 3. 30. 진정인은 ○○시 ○○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서△△, 차○○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서△△가 진정인의 어깨를 보면서 "야 너 진짜 어깨가 작다. 언제 한번 내 품에 안겨봐라,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보게"라고 하여 진정인이 기분이 몹시 상해 "당신은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하였고, 차○○도 "형님이 먼저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러잖아요. 아무한테나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였다.

7) 서△△가 진정인에게 사귀자는 제안을 하였고 2007. 4. 18. 서△△를 만나 서△△에게 진정인에 대한 감정 정리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서△△에게 "나랑 자고 싶었느냐?"라고 묻자 서△△는 "자고 싶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섹스를 의미하느냐?"라고 물었고 진정인이 "그렇다."라고 말하자 서△△는 "남자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나는 제자들을 보고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8) 2007. 5. 3. 최□□을 만나 서△△가 진정인을 스토킹하고 있음을 알렸는데 오히려 최□□은 진정인에게 여름방학 기간인 7월 중순까지 휴직을 하라고 하였다. 진정인은 수업을 일부 줄이고 휴직은 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최□□이 강하게 밀어붙여 어쩔 수 없이 휴직을 하게 되었다. 나중에 복직을 하더라도 정규반이 아닌 입시반을 맡게 되어 보수에 불이익이 있고 추가로 맡아야 할 강의를 못하게 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나. 피진정인

1) 최□□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슴이 크냐?”라는 말을 본인이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며 만약 그런 말이 오갔다면 서로 친한 사이에서 주고받은 가벼운 말로 보아주면 좋겠다. 이는 성적 농담을 가볍게 여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편한 사이에 가볍게 농담 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동은 피하였다. 진정인은 직설적인 성격이라 자신에게 불쾌한 것은 원장인 본인에게 조차도 바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2007. 4.말경 진정인이 요청하여 진정인과 면담을 하였는데 서△△가 자신을 스토킹 한다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스토킹 내용은 서△△가 진정인에게 ‘사귀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답을 안하면 화를 낸다는 것이었다. 이에 서△△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서△△는 부인하였다. 그래서 사실 여부를 떠나 진정인과 연락을 하지 말라고 서△△에게 충고하였다. 사실 확인을 위해 진정인에게 3자 대면을 하자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거부하여 무산되었고, 또한 시간제 강사로 토요일, 일요일에 강의를 하고 있는 진정인이 토요일 수업을 빼줄 것을 요청하여 서△△와의 대면을 피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일요일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되묻자 진정인도 수긍하여 토요일, 일요일 수업을 모두 빼기로 합의하고 여름방학 이후에 고3 입시반 수업을 맡기로 조정한 것이다.

2) 서△△

가) 진정인 등과 함께 학원근처 ‘○○○○’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적은 있으나 여자들과의 성관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며, 그 이후에도 여자들과의 성관계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살 좀 쪄야겠다. 여자가 살이 없으면 그거 할 때 아프단 말야.”라고 말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 “애 가졌냐, 내 애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말한 것은 인정하는데 이는 밥을 먹으면서 농담으로 한 것이다.

다) ‘어떤 여자 선생님이 옷을 벗고 달려들었다’고 말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 차를 새로 사서 자랑하려고 보여준 적은 있으나 진정인의 손을 잡지는 않았다.

마) “몸매가 죽인다.”라고 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바) “내 품에 안겨봐라,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보게.”라고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 진정인에게 사귀자고 한 적이 없으며 진정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진정인과의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고 오히려 진정인이 본인을 좋아하는 듯하여 진정인에게 선후배 사이일 뿐임을 확인해 주기 위해 보낸 것이다. 진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자고 싶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남자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나는 제자를 보고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말은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진정인이 “나도 섹시하냐?”, “자고 싶은 적, 즉 섹스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냐?”라며 외설스런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3. 관계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기초사실

1) ○○○논술학원 ○○분원은 ○○동에 본점을 둔 ○○○논술학원의 프랜차이즈 학원이다.

2) 진정인은 2006. 5.경부터 2007. 5. 3.경까지 ○○○논술학원 ○○분원에서 논술강사로 근무하였는데 2006. 10.경부터 2007. 2.경까지는 전임으로 근무하였고, 최□□은 2006. 5.경부터 동년 10.경까지는 ○○○논술학원 ○○분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 10.경부터는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서△△는 2006. 5.경부터 ○○○논술학원 ○○분원 대표강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최□□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최□□에 대한 진정인의 주장은 회식자리에서 "수학강사의 가슴이 크냐?"라고 질문함으로써 진정인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최□□은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참고인 정○○, 차○○도 수학강사를 새로 채용하는 이야기를 하거나 몸매, 가슴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정인의 진술 외에는 달리 그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증거가 없다.

그러나 비록 최□□이 진정인에게 직접적으로 성희롱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은 진정인이 근무하였던 학원의 원장으로서 학원내에서 동료 강사들간에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였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된 강사인 서△△가 진정인을 성희롱하여 그 문제로 2007. 4.경 진정인과 면담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인 진정인의 근무시간을 축소하였고 그 이후에도 약속한 고 3 입시반 수업을 맡기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인 진정인에게 성희롱으로 빚어진 갈등의 수습과 책임을 사실상 떠넘겨 결국 진정인이 직장을 그만두게까지 하였는바, 직장의 운영책임자로서 주된 성희롱

가해자인 서△△와 연대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진정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아울러 최□□이 운영하고 있는 논술학원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재발방지대책 및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할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다. 서△△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서△△가 진정인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므로, 먼저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서△△가 두 차례에 걸쳐 여자 가수 등과의 성관계 경험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고 진정인에게 "여자가 살이 너무 없으면 그거 할 때 남자가 아프다고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관해 2006. 7. 3.경 술자리에 같이 있었던 참고인 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7. 3. 8.자에 합석하였던 참고인 차○○도 기억에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참고인 차○○는 현재 ○○분원에 서△△와 함께 강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두 사람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할 뿐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지는 않고 있는 점, 반면 현장에는 있지 아니하였으나 동료 강사였던 참고인 김○○은 서△△가 평소 술자리에서 부부간에 관계를 자주 하는지, 애인을 만들어 볼 생각이 없는지 등의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역시 동료강사였던 참고인 김○○은 서△△가 여자 연예인과 파트너 관계였고 많은 여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본인이 스스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서△△가 평소에 여자 연예인 등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을 자주 해 왔음을 알 수 있고, 진정인이 이에 대하여 그 장소와 일시까지 특정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술자리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판단된다.

둘째, "애 가졌냐, 내 애는 아닌데 누구 애냐?"라는 발언에 대하여는 서△△가 우리 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에 출석하여 ○○동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농담으로 한 발언이라고 하며 이를 스스로 인정하

였고, 참고인 황○○과 오○○도 점심식사 자리에서 이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셋째, '어떤 여자 선생님이 술에 취한 본인을 차에 태워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후 옷을 벗고 달려들었는데 이를 과감히 뿌리치고 나왔다'는 발언 부분에 관해서는 서△△는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교무실에 진정인과 함께 있었던 참고인 정○○의 진술로 서△△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음이 사실로 인정된다.

넷째, 서△△가 사귀자는 제안을 하고 진정인과 성관계를 갖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서△△는 오히려 진정인이 자신을 좋아하여 귀찮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서△△가2007. 4. 17.경 진정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허 난 네게 나의 진심과 내가 힘들어하는 지점까지 다 보여줬는데…"라는 표현과 그 뒤를 이어 보낸 메시지 중 "…네 말로는 잘 지내던 우리가 내가 이상한 말을 해서 서먹서먹해졌다? …넌 내게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내가 네게 억지로 사귀자고 한다??? … 난 나도 모르는 마음을 그냥 편해서 네게 물어봤는데, 어쨌든 좀 기분 나빠"라고 한 표현으로 볼 때 서△△가 진정인에게 사귀자는 의미의 제안을 하여 두 사람 사이가 서먹해졌다는 내용으로 이해되고, 따라서 진정인이 자신에게 먼저 사귀자는 제안을 하였다는 서△△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 진정인의 주장 중 2007. 3. 22.경 술자리에서 여자 수학강사의 몸매에 관해 언급했다는 주장, 같은 달 30.경 호프집에서 한 번 내 품에 안겨보라고 했다는 주장 및 2007. 1. 27.경 진정인의 손을 끌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갔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현장에 같이 있었던 참고인들이 수학강사를 새로 채용하는 이야기를 하거나 몸매, 가슴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거나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거나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는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증거가 없어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 서△△가 진정인에게 행한 언동 중 일부 인

정되는 사실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하는가를 살펴보면, 유부남인 서△△가 미혼인 진정인이 포함된 회식자리에서 성관계에 대해 공공연히 이야기하거나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언동을 한 것은 설사 서△△가 농담으로 가볍게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동료로 가질 수 있는 친근감의 범주를 벗어나서 원하지 않는 진정인에게 자신의 이성으로서의 감정을 드러내고 이를 심리적으로 압박한 점 역시 합리적인 여성이라면 성적 수치심을 넘어선 부담과 굴욕감을 느끼게 하고, 여성으로 하여금 비자발적으로 고용관계에서 이탈되거나 배제될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서△△는 진정인이 그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입은 것을 배상하는 취지로 금 300만원을 진정인에게 지급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서△△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 제5호가 규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 원 황덕남 위 원 조 국

10. 자동차공업사 대표 등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615 성희롱
【진 정 인】 ○○○
【피진정인】 1. ○○○
2. ○○○
3. ○○○

【주 문】 1. 진정요지 가.항 내지 라.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1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과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진정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마.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2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과 피진정인 1이 지급할 위 손해배상금 중 150만원을 연대하여 진정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바.항 부분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자동차공업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인

데, 동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 피진정인 1, 명목상 사장 피진정인 2, 전무 피진정인 3은 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은 성희롱을 하였고, 이로 인해 진정인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가. 피진정인 1은 2007. 2. 중순부터 같은 해 3. 초순까지 자신의 사무실로 진정인을 불러서 "남자친구가 있느냐?", "섹스를 싫어하지 않게 생겼는데 왜 남자친구가 없어?", "왜 이혼했어? 외롭지 않아?"라고 말하였고 진정인에게 무릎베개를 해달라고도 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2007. 3. 중순 또는 말경 사무실에서 진정인에게 불쑥 "내가 뽀뽀하자고 해서 화나서 그런 거구나"라고 말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은 2007. 6. 초순 사무실에서 술집 여성이 힘들게 일하고 있을 때 엉덩이를 치면서 수고한다고 말해주면 고마워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인의 엉덩이를 쳤다.

라. 피진정인 1은 2007. 6. 초순 사무실에서 진정인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직원에게 "내가 바람 피운 여자는 몇 년이 지나도 다 전화를 받는데 ○ 대리(진정인)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내가 전화를 하면 언제든지 받아라. 자다가도 받아라."라고 말하였다.

마. 피진정인 2는 2007. 2. 중순경 사무실에서 진정인에게 "이전 경리는 접대 시 거래처 손님에게 부킹을 해주거나 자신이 직접 접대를 했다. 나는 여자가 없으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또한 같은 해 3. 중순경에서 말경 사이 두 차례의 차심부름을 시키면서 처음 보는 손님들 앞에서 "여자가 (차를) 타줘야 더 맛있어요."라고 말하였다.

바. 피진정인 3은 2007. 2.말부터 3. 초순 사이 사무실에서 진정인을 뒤에서 감싸 안 듯이 하면서 진정인의 컴퓨터 마우스를 잡았다. 또한 계단을 올라가는 진정인의 허리를 뒤에서 잡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 본인은 피진정인 2로부터 ○○자동차공업사를 인계받아 2007. 3. 26.부터 실질적으로 대표자의 업무를 해왔다.

2) 진정인이 회사의 공금을 다루는 경리로 일하였기 진정인에게 재혼의사나 이성관계 등 개인적인 질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진정요지 가.항이나 나.항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은 없다.

3) 진정인에게 조언하는 차원에서 진정요지 다.항과 같은 발언은 하였으나 진정인이 주장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4) 진정인과 ○○○에게 전화를 잘 받으라고 한 적은 있으나 진정요지 라.항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은 없다.

다. 피진정인 2

1) 본인은 1992.부터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다 사업에 실패하여 피진정인 1에게 위 회사를 인계하였으며, 그 대신 당시 목사 업무로 바쁜 피진정인 1을 도와주고 있었다.

2) 진정요지 마.항과 같은 발언을 하고 차 심부름을 시킨 사실은 있으나 여자가 타줘야 맛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

3) 본인은 2007. 4. 진정인이 본인의 발언에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진정인을 달래고자 사과한 적이 있다.

라. 피진정인 3

본인은 동 공업사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전무였는데 진정인이 주장하는 성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다만 본인은 미혼으로서 진정인에게 호감을 갖고 사귀자고 제의를 한 적이 있었으나, 진정인이 거절한 후 진정인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고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로 지내왔다.

3. 관련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의 각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초사실

진정인은 2007. 2. 12.부터 같은 해 6. 25.까지 주식회사 ○○자동차공업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하였다. 피진정인 1은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 피진정인 2는 명목상 사장, 피진정인 3은 영업담당 전무였는데, 현재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3은 퇴사하였다.

나. 피진정인 1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재혼의사, 이성관계 등에 대해 물어보았고 술집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으나 그 외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참고인 ○○○는 진정요지 다.항, 라.항에 기재된 피진정인 1의 언동에 관하여 진정인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진정인은 2007. 3. 6.과 같은 해 5. 15. 두 차례에 걸쳐 사단법인 ○○상담소에 상담신청을 하였는데, 이 중 3. 6.에 상

담한 내용은 진정요지 가.항, 나.항에 기재된 피진정인 1의 행위로 직장 생활이 힘들어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일부 사실에 관해 피진정인 1이 인정하고 있다는 점, 진정인이 일관되게 피진정인 1의 행위에 관해 주위에 말하며 도움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언동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행한 언동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직장상사인 남성이 부하직원인 여성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 “섹스를 싫어하지 않게 생겼는데 왜 남자친구가 없느냐?”라고 말하거나 무릎베개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술집여자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가 엉덩이를 친 행위 등은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근무하였던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회사 내에서 직원들 간에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의 성희롱을 하여 결국 진정인이 직장을 그만두게까지 하였는바, 피진정인 1은 이를 배상하는 취지로 진정인에게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다. 피진정인 2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진정요지 마.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2는 이전 경리의 접대 방식, 자신의 음주습관에 대해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해 진정인에게 사과한 사실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참고인 ○○○와 피진정인 1도 진정인으로부터 피진정인 2의 위와 같은 언동에 관해 전해들은 바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언동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진정인 2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직장상사인 남성이 부하직원인 여성에게 “이전에 근무했던 여직원은 손님을

접대할 때 다른 여성과 부킹을 주선해 주거나 자신이 직접 손님을 접대했다.” 라는 말을 하며 “나는 여자가 없으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것은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는 취지로 피진정인 1이 지급할 위 손해배상금 중 150만원을 연대하여 진정인에게 지급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라. 피진정인 3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진정요지 바.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성적인 언동을 한 적이 없으며 단지 진정인에게 사귀자는 제의를 한 적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고인 ○○○와 피진정인 1은 진정요지 바.항에 기재된 피진정인 3의 언동에 관하여 진정인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진정인은 2007. 3. 6. 사단법인 ○○상담소에 보낸 전자메일에서 피진정인 3의 성적 언동으로 인해 직장 생활이 힘드니 도와달라는 호소를 한 적이 있다. 이를 종합하면 비록 피진정인 3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진정인이 일관되게 피진정인 3의 행위에 관해 주위에 말하며 도움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언동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5호는 성희롱을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외에도 보통의 합리적 여성의 경우라면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느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인바,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성희롱행위를 한 적

이 없다고 구체적으로 부인하면서, 다만 자신이 미혼으로서 진정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갖고 사귀자고 제안하였는데 진정인이 거절한 후 동료로서의 감정을 가지고 지내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진정인이 입사하였던 초기에 해당하는 2007. 2. 17.경에 설 연휴 기간임에도 위 피진정인과 함께 사무실에 나와 일하다가 단둘이 ○○으로 드라이브를 간다거나, 피진정인이 성적 언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같은 해 2.말부터 3. 초순 사이 야간에도 두 차례나 피진정인의 차를 운전하여 집까지 데려다 주는 등 친근하게 지낸 점에 미루어 볼 때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아 당시 진정인에게 그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진정요지 가.항 내지 라.항 및 마.항 부분은 성희롱에 해당하고 진정요지 바.항 부분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11. 보험설계사의 개인비서에 대한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853 성희롱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과 진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2. 주식회사 ○○○○보험의 대표이사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주식회사 ○○○○보험에서 피진정인의 개인비서로 근무하였는데, 피진정인은 2007. 9. 4.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진정인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후 진정인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냐는 등의 질문을 하더니 갑자기 진정인의 볼을 손으로 만졌고, "면접 시부터 진정인을 보면 안고 싶고 키스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같은 달 5. 지하주차장에서 출장을 가는 피진정인의 짐을 가지고 따라온 진정인을 갑자기 끌어안았고,

같은 달 8. 진정인에게 '말로 하는 사랑은 쉽게 잊혀지지만 행동으로 하는 사랑은 저항할 수 없다. 주말 잘 쉬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달 10. ○○동 소재 모 식당에서 퇴직 의사를 밝히는 진정인에게 "얼굴이 예쁘다, 안고 싶다, 안아 달라, 난 아무하고나 섹스를 하진 않는다, 자고 싶다, 오늘 아무 짓 안 할 테니 같이 있자, 집에 가지 마라, 사생활을 터치하지 않을 테니 회사 근처에서 같이 살자." 등의 말을 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이러한 언동으로 인해 심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고 결국 이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이 주장하는 성적 행위나 발언을 한 적이 없다.

2)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들은 모두 책에서 본 글귀이고 진정인에게 가식 없이 진실 되게 일해보자는 의미로 보낸 것일 뿐 성적 감정을 가지고 보낸 것이 아니다.

3) 2007. 9. 4., 10. 진정인에게 "너, 참 예쁘다. 네가 남자친구만 생각하니 남자친구는 좋겠다.", "얼굴이 예쁘다. 나도 남잔데 너 같이 예쁜 애를 보면 안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겠니?"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이 발언은 직장 상사이면서 인생 선배로서 직장 생활에 대하여 충고를 하고자 한 것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의 각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7. 8. 30.부터 같은 해 9. 6.까지 주식회사 ○○○○보험의 설계사인 피진정인의 개인비서로 일하다 퇴직하였다. 피진정인은 2003. 9. 9.부터 동 회사의 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진정인의 고용주였다.

나. 피진정인은 2007. 9. 8. 진정인에게 '말로 하는 사랑은 쉽게 잊혀지지만 행동으로 하는 사랑은 저항할 수 없다. 주말 잘 쉬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 대부분 부정하면서도 진정인에게 "얼굴이 예쁘다. 나도 남잔데 너 같이 예쁜 애를 보면 안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겠니?"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라. 진정인은 2007. 9. 14. 피진정인과 전자우편을 주고받았는데, 진정인이 보낸 전자우편에는 '사장님이 차안에서 얼굴을 쓰다듬고, 지하주차장에서 안고, 팔뚝 만지고 그리고 저에게 입술 예쁘다. 키스하고 싶다. 자고 싶다. 안고 싶다. 안아 달라는 등의 그 외 여러 가지 사장님이 저에게 한 말 기억하시지요. 어차피 썩어 문드러질 몸이란 단어까지 써가며 저에게 하신 말 기억하시지요. 9월 10일 사장님과 저녁 식사 할 때에도 아무 짓도 하지 않을 테니 같이 있자고 하신 거 기억하시지요. 저는 다 기억합니다. 사장님의 이런 행동과 말로 인해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 때문에 저는 몸과 마음이 많이 힘이 듭니다. 저희 집까지 사장님 차로 데려다 주신 날도 저에게 솔직히 저보면 뽀뽀하고 싶고 안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해외 지방 출장 얘기 하시 길래,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성희롱 사건으로 제가 몸과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그 사건으로 몸에 마비가 와서 병원에 실려 갔었다고 제가 말한 적 있지요. 그런데 사장님은 저를 전혀 생각 안하셨던 것 같아요. 다음날 출근한 저를 보고 안

올 줄 알았다며 저에게 말씀하셨지요. 전 저의 예전에 안 좋았던 이야기도 했으니까 사장님이 언행이나 행동에 조심하실 줄 생각했기에 출근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지하주차장에서 저를 안으셨어요. 저 이날에도 그리고 사장님과 마지막 저녁 식사했을 때도 너무 많이 속상해서 집에 가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중략) ...하지만 이 모든 결과로 제가 너무 힘이 든다는 겁니다. 사장님의 공개적인 사과를 원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한 피진정인의 답변 전자우편에는 '나로 인해 누군가가 힘들어한다면 그 역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이야기한 것처럼 그 나이에 빚을 안고 산다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최대한 짧은 시기에 부채도 청산하고 오히려 조금은 저축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진정인의 남자친구인 참고인 ○○○는 2007. 9.말경 휴대전화로 피진정인과 이 사건에 관하여 나눈 대화를 녹음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가 피진정인에게 "○○이가 메일 보낸 거, 제가 지금 봤어요. 답 글 온 것도 제가 지금 봤거든요. 사과하시는 게 너무 성의 없다고 생각 안하세요? 딸랑 한 줄 쓰셨더라고요. '나로 인해 누군가가 힘들어한다면 그 역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뭐에 대해 미안한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연세도 있으시고 동생 같은 친구한테 실수하셨으면 남자답게 사과하는 게 도리 아닌가요?"라고 묻자 피진정인은 "아, 알겠습니다. 내가 ○○씨한테 정식으로 사과메일 다시 보낼게요."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통화에서 ○○○가 피진정인에게 "집에 동생도 없으시냐고요.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키스하고 싶다. 안고 싶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가만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요."라고 하자 피진정인은 "알겠습니다. 내가 정식으로 사과할 테니까 내일 전화 받으라고 하세요. 전화도 안 받는데 어떡합니까!"라고 답변하였다.

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은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나,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진정인에게 "얼굴이 예쁘

다. 나도 남잔데 너 같이 예쁜 애를 보면 안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겠니?"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안고 싶다고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피진정인의 언동과 자신의 감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는 점, 피진정인이 사과를 요구하는 진정인과 진정인의 남자친구에게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안하다고 사과하거나 추후 진정인에게 전화로 사과를 하겠다고 말한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진정요지와 같은 피진정인의 언동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5호는 성희롱을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외에도 보통의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느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위의 인정사실과 같은 피진정인의 언동들이 진정인을 비롯한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였는지를 살펴보면,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고용주인 남성이 부하 직원인 여성의 볼을 갑자기 만지고, "안고 싶다. 자고 싶다." 등의 발언을 서슴없이 하며,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의 언동을 상기시키거나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성적 언동들은 충분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피진정인이 사용자와 직원의 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친근감의

범주를 넘어서서 진정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점 역시 성적 혐오감 또는 굴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의 언동은 진정인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 및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10.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 원 황덕남 위 원 조 국

12. 초등학교 교사의 컴퓨터 강사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1081 성희롱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김○○

【주 문】 ○○시○○교육청 교육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과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민간참여업체 직원들이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07. 6. 25. 회식자리에서 진정인의 손을 잡고 어깨를 끌어안았으며, 자신의 손가락을 진정인의 입술에 대는 등의 행위로 진정인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은 민간컴퓨터업체인 '○○'의 직원으로 ○○초등학교에 파견되어 컴퓨터 강사로 근무하였고 피진정인은 ○○초등학교의 교사이다. 피진정인은 2007. 3. 학교의 정보부장이 된 후 진정인이 "정보부 소관이니 잘 보여야 한다."라며 둘이서만 회식을 하자고 수차례 요구하여 같은 해 6. 25. '○○'의 인턴사원으로서 ○○초등학교에 컴퓨터 보조교사로 파견되어 일하고 있는 김○○에게 동석할 것을 부탁한 후 함께 회식에 참여하였다.

1차로 간 ○○식당에서 피진정인은 대화 도중 진정인과 김○○의 손을 만지작거렸고, 2차 맥주집으로 가는 길에 "나 때문에 치마입고 왔어?"라고 물었으며 노래방에서는 진정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더니 등을 만지고 어깨를 끌어안았다. 피진정인의 노래가 끝난 후에도 진정인과 김○○이 노래를 선곡하지 않자 피진정인은 노래를 고르면서 "이제 힘들게 하는 교장 교감 다 가니까 아주 편해질 거야, 여기 재계약 2년 후에 내가 하니까 나한테 잘못하면 재미없어, 나는 스타강사야, 한달에 7백씩 벌고, 9억짜리 아파트가 있어, 다른데 가서 이런 얘기하면 안돼"라고 말하며 피진정인의 입술에 댔던 손을 진정인의 입술에 대면서 "쉿!"이라고 하여 소름이 끼쳤다. 진정인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피진정인의 부인 이야기를 꺼내자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여자가 떨어져 본적이 없다, 우리 부인이 나를 덮쳐서 임신해서 결혼했다, 부인이 형제 같다."는 등의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었다.

회식 다음날인 2007. 6. 26. 보조교사 김○○이 전일 회식자리에서 있었던 성희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자 교장이 피진정인을 불러 "컴퓨터 교사들과 따로 회식을 하지 말라."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진정인은 "회식한 사실을 누가 교장에게 일렀느냐?"라며 진정인을 추궁하였고, 이후 피진정인의 권한이 아님에도 진정인에게 출퇴근 근무일지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피진정인의 업무인 컴퓨터 수업 시간표를 작성하라고 하면서 진정인에게 고함을 지르고 연필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정신적 고통과 모멸감을 주었다. 피진정인과 대면하지 않기 위해 피해 다니다 보니 가정통신문 결재 받기도 어

렵고 컴퓨터 수강생수도 줄어드는 등 업무 상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탈모증세까지 보여 본사에 학교를 옮겨 달라고 요청한 후 ○○교육청에 피진정인의 성희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피진정인

2007. 6. 25. 회식은 피진정인이 정보부장이 되기도 하였고, 같은 해 6.말경 개최되는 '정보의 바다 탐구대회'에 필요한 기술적 자문을 받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1차 회식장소는 식탁 가운데 고기를 굽는 판이 있어서 손을 잡기가 불가능하며 식사 전에 서로 악수한 것을 진정인이 오해한 것으로 보이며, 당시 진정인이 치마를 입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장을 입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오늘 신경 많이 써서 깨끗하게 옷 입고 왔구나."라고 얘기한 것 같다. 노래방에서는 한 시간 정도 돌아가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피진정인이 서서 노래를 부른 후 진정인에게도 서서 부르라고 손을 잡아끌었을 뿐 그 외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 대화 도중 문제집을 발간하여 돈을 벌게 되었는데 비밀이라고 하며 손을 입술에 대는 제스처를 취한 적은 있으나 진정인의 입술에 직접 손가락을 댄 적은 없다.

2007. 6. 26. 교장이 불러 "앞으로는 컴퓨터 강사들과 회식 하지 말고 거리를 두라."라고 하여 진정인에게 "교장이 어떻게 회식 한 사실을 알게 되었느냐?"라고 물었고, 보조교사가 사직했다고 하여 사유를 알아야 할 것 같아 보조교사의 연락처를 달라고 한 것이다. 출퇴근 근무일지 작성은 감사를 대비하여 정보부장이 된 2007. 3.경부터 계속 요구했던 것이고, 수업 시간표 작성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3번 정도 실수를 하고도 너무 당당하여 화가 나서 연필을 집어던진 것이지 의도적으로 모욕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다. 참고인 김○○(전 ○○초등학교 컴퓨터 보조교사)

2007. 6. 25. 진정인이 피진정인과 회식이 있다고 하여 함께 참석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진정인과 본인의 손을 만지작거렸고, 맥주집으

로 가는 길에 진정인에게 “나 때문에 치마 입고 왔어?”라고 물었으며 2차에서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입술에 자신의 손가락을 대며 “쉿 조용해”라고 하였다. 노래방에 가고 싶지 않았으나 피진정인이 강권하여 어쩔 수 없이 갔는데,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등을 위아래로 훑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스킨십을 심하게 했으며 진정인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참고인에게 갑자기 얼굴을 들이대며 “너 예쁘다, 너무 예쁘다.”라고 하여 매우 놀랐다.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진정인이 일부러 “사모님이 너무 예쁘시다.”라고 하자 “나는 여자가 항상 많았다, (지금 아내와는) 형제 같다, 전에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부모의 반대로 결혼을 못했고 지금 아내가 날 너무 쫓아다녀 결혼을 했다.”라고 하였다. 피진정인이 회사의 직속 상사가 아님에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무서웠고 정식 직원이 되면 이런 상황을 다 겪어야 되나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 회식 다음날 회사를 사직하였다.

3. 관계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민간컴퓨터 업체인 ○○ 직원으로 2003.부터 ○○초등학교에서 컴퓨터 강사로 근무하였고, 피진정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2007. 3.부터 정보부장을 맡았으며, 참고인 김○○은 ○○ 인턴사원으로 2007. 4. 11.부터 ○○초등학교에 근무하다 2007. 6. 26. 사직하였다.

나. 2007. 6. 25. 저녁 진정인과 피진정인, 참고인 김○○은 ○○초등학교 근처 ○○갈비집에서 1차 회식을 하고 ○○○○라는 맥주집에서 2차 자리를 가진 후 맥주집 지하에 있는 노래방에 갔다.

다. 참고인 김○○은 2007. 6. 26. 오후 피진정인과 함께 한 회식에서의 충격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었으며, 교장이 피진정인을 불러 "앞으로는 회식 하지 말라."라고 하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찾아가 "교장에게 회식 사실을 알린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고 진정인에게 보조교사 김○○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추궁하였다.

라. 진정인은 2007. 6. 26.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에게 메신저로 '어제 회식을 했거든, 어제 김○○샘이랑, 근데.. 술 먹고.. 막 손 만지고 어깨 감싸고 그러는거여, 고기집이랑 ○○○○랑 노래방까지 3차까지 끌려 다녔어.'라는 글을 보냈다.

마. 피진정인은 2007. 7.경 진정인에게 출·퇴근일지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였고, 피진정인의 업무인 '정규반 컴퓨터 시간표 작성'을 진정인에게 지시한 후 진정인이 실수를 하자 교실 복도로 불러 고함을 지르며 연필을 집어 던졌다.

바. 진정인은 회사에 배치전환을 요구하였고 2007. 10. 중순경 ○○초등학교 주강사에서 본부 교육강사로 인사 배치된 후, 같은 해 11. 12. ○○교육청에 '○○초등학교 김○○ 교사의 성희롱 관련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진정인은 2007. 11. 15. 진정인이 ○○교육청에 제기한 민원을 취하시키기 위하여 ○○를 찾아갔으나 진정인을 만나지 못하였고, 같은 달 18. 진정인에게 휴대전화로 '살려주세요. 직접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어요. 깊이 반성하고 각성하고 있어요, 그러니 부탁인데 더 이상 제 인생 망치지 말아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전화 좀 받아주세요, 월요일 아침에 ○○청 우리들 건 취하를 간곡히 바랍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아. 진정인은 2007. 11. 25. 오후 11:38 연락받을 번호 '1004'로부터 '○○언니! 진심으로 충고해요~ "쌩쇼" 그만하시고 뒤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바보'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이동통신회사에 조회한 결과 위 메시지를 발신한 휴대전화의 명의자는 피진정인의 아내임을 확인하였다.

자. 피진정인은 ○○회사 도○○ 이사의 주선으로 2007. 11. 27. ○○초등학교 앞 ○○○○○에서 ○○초등학교 보건교사 김○○ 등과 함께 진정인을 만나 진정인에게 "미안하다,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하였고, 진정인이 "날 끌어안지 않았냐? 손으로 입술을 만지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차.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주장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나 회식 자리에 함께 참석하였던 참고인 김○○의 진술이 진정인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 점, 김○○이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성적 언동을 목격한 이후 그 충격으로 자진 퇴사한 점, 진정인이 회식 다음날 같은 학교 교사에게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이 있었다며 메시지를 보낸 점, ○○교육청에 민원이 제기된 후 피진정인이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진정인의 회사로 찾아가고 진정인에게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2007. 11. 27. 당사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날 끌어안고 손으로 입술을 만지지 않았느냐?"는 진정인의 추궁에 피진정인이 이를 부인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한 점, 피진정인은 ○○교육청 및 위원회 조사 시 진정인의 입술을 만지는 듯한 자세를 취한 적은 있다고 했다가 그런 적이 없다고 번복하고, 손을 잡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일으켜 세우기 위해 손을 잡았다고 하였으며, 노래방에서 손으로 진정인의 몸을 살짝 잡았다고 했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이 모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5. 판단

가. 업무 등 관련성 여부

진정인이 주장하는 행위 발생 당시 진정인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민간업체소속 컴퓨터 강사였고 피진정인은 같은 학교에 정보부장교사로 재직 중이었다. 또한 본 사건이 발생한 회식 모임도 정보부장인 피진정인의 업무 상 요구에 의한 것이었으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에 정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난 피진정인의 언동이「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면, 기혼남성인 피진정인이 미혼여성인 진정인의 손과 어깨, 등을 만지고 입술에 손을 대는 등의 행위는 합리적인 여성이라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며 이는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참고인 김○○이 회식 다음날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 때문에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끼고 직장을 그만둔 것을 보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속한 ○○와 ○○초등학교의 재계약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고, 진정인은 ○○의 파견 직원으로서 본인의 행동 여하에 따라 향후 회사의 재계약 여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에 대해 강하게 뿌리치거나 거부할 수 없었으리라는 점에서 성적 굴욕감을 더욱 강하게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진정인은 정보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진정인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한 성희롱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은 회식 당일의 성적 언동에 그치지 않고, 김○○이 사직하자 누가 교장에게 회식한 사실을 알렸느냐며 진정인을 추궁하였고, 진정인의 근태를 감독 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에게 출・퇴근일지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컴퓨터 시간표 작성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연필을 집어 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진정인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와 같이 회식 당일에 있었던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이 결코 가볍지 않

은 점과 사건 발생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피진정인의 태도를 종합해 볼 때 이에 상응한 징계조치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한 업무 공간에서 근무하게 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심할 경우 피해자의 계속적인 근로를 어렵게 하는 등의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전예방 및 사후 대책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대등한 동료 관계에서의 성희롱도 문제 제기하기가 어려운데 더구나 재계약 여부에 대한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학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민간업체의 직원이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적극적인 문제제기 및 피해 구제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학교에 파견형식으로 근무하는 민간업체 직원들에게도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발생시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교육하는 등 이 사건과 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한 언동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 제5호가 규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10.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13. 교육청 과장의 교사에 대한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1182 성희롱
【진 정 인】 전○○
【피 해 자】 권○○
【피진정인】 김○○

【주 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07. 12. 11. 저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지회와의 업무 협의가 끝난 후 피해자에게 '신정아가 변양균에게 보냈다는 그림과 편지'(이하 '편지'라고 한다.)를 주었는바 편지 내용이 노골적인 성적 표현으로 가득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07. 12. 11. 저녁 피해자에게 편지를 준 것은 사실이나, 편지를 전달하기 전 피해자와 둘이 있던 자리에서 '그 동안 내가 알았던 신정아는 부도덕한 사람이었는데 편지를 읽고 신정아가 그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었고, 협의가 끝난 후 책상 위에 인쇄해 둔 편지가 생각나 본인의 감동을 전달하고자 피해자에게 준 것이지 성적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3. 관계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4. 인정사실

가. 피해자는 ○○시 ○○중학교 교사이자 전교조 ○○지회 부지회장이고, 피진정인은 ○○시 교육청 교육과장이다.
나. 2007. 11. 초순 ○○시내 각 학교에서 다면평가를 시행하려는

학교장과 이를 저지하려는 교사들 간의 대립이 서명 및 점거 농성 등으로 지속되자, 같은 달 8. ○○교육청은 교육과장인 피진정인 전결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면평가계획을 수립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연락'을 각 학교에 하달하였다.

다. 전교조 ○○지회는 위 교육청의 업무연락이 법적 규정에 근거하지 않는다며 업무연락 취소 및 관련자 문책, 다면평가 추진계획 중단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 달여간 집회 및 시위를 전개하였으며, 2007. 12. 11. 오후 5시 30분 피진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전교조 간부 이○○, 차○○ 및 피진정인, ○○교육청 장학사 김○○, 김○○ 등 총 6인이 사태해결을 위한 협의회의를 진행하였다.

라. 당시 회의는 2007. 12. 11. 오후 5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세 시간 정도 진행되었는데, 피진정인이 업무지침을 하달한 것에 대하여 사과한 후 전교조 ○○지회에서 미리 작성해온 협의문 초안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눈 후 실무자들이 교육과 사무실을 오가며 협의문을 다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그 과정 동안 양쪽 대표인 당사자들만 남겨진 시간은 30분 정도였다.

마. 피진정인은 피해자와 둘이 있는 자리에서 업무지침 발송으로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고 다시 사과하고 피해자와 안면이 있으리라고 생각한 전교조 교사 및 ○○중학교 근무 교사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할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며 호의를 표시했고 피해자는 부탁할 것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바. 피진정인은 협의문에 서명하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불러 감동적이고 좋은 내용이라며 편지를 건네주었는바, 편지에는 클림트의 '키스'라는 그림과 그림에 대한 설명, 그리고 신정아가 변양균에게 보내는 형식의 연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5. 판단

피진정인이 2007. 12. 11. 피해자에게 편지를 전달한 것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이나 다만 편지를 건넨 정황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협의 도중 피해자와 둘만 남겨져 있을 때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를 전환시켜 보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신정아의 편지를 보았는데 감동적이었다,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으며 협의문에 서명하고 헤어지면서 책상 위에 인쇄해 둔 그림이 생각나 피해자에게 그림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협의문에 서명하고 나오는데 피진정인이 편지를 건네주면서 '남의 편지를 보는 것은 그렇지만, 신정아가 세간에는 부도덕하게 알려져 있으나 나쁜 사람이 아니다, 굉장히 순수하게 사랑을 했더라, 감동을 받아서 권 선생님이 읽었으면 한다, 내용을 보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전화로 연락을 달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주장 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나 증인이 없다.

피진정인이 준 편지의 내용을 보건대 '당신은 성적으로 유혹당해 죽음에 가까운 정사를 한 번 했으면 하셨지만, 저는 빈 시내 남쪽에 있는 바로크 궁전 벨베데레에 소장된 클림트 그림 키스처럼 두 남녀가 꼭 껴안고 성적 교감의 여명을 틀며 시작하는 정사를 당신과 꿈꾸고 있어요..... 오르가즘 직전의 환희가 표현된 얼굴의 그 그림을 보면 저도 언젠가 그런 정사를 하리라 했죠... 당신을 나의 아파트로 유인하여 죽음에 가까운 정사를 펼쳤을 지도 몰라요. 첫 정사를 저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어요. 그 키스씬으로 시작해서 클림트의 유디트 1로 끝나는 섹스 말이죠.'라는 등 편지에 언급된 성적 표현이 가볍지 않아 친분 관계가 없는 직장상사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게 되었을 경우 합리적 여성이라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리라 판단되며 피해자 또한 편지를 받은 이후 피진정인이 의도적으로 성적 모욕감을 주려고 했거나 성적 제안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심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진정인이 편지를 건넨 의도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협의문 작성 시 오랜 갈등이 해소되어 매우 기분 좋은 상태였으며, 당시 피해자 측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를 나쁘게 하거나 피해자의 마음을 상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할 일이 있으면 하라며 호의를 베풀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자 한 것으로 미루어 피해자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거나 성적인 제안을 하기 위해 편지를 건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성적 모욕감을 주고 괴롭히고자 하는 동기나 의도가 필수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당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가 없었으며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합리적인 여성이 읽게 될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성적 표현이 가득한 편지를 보여주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었는바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노동부령 175호)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을 위한 기준을 예시하면서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를 시각적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다.

6. 결론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 제5호가 규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10.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14.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의 간호사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778 성희롱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최○○

【주 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재활의원(이하 재활의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고 피진정인은 위 재단의 이사장인데, 피진정인은 2007. 4.경 간호부장 및 간호과장, 간호계장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진정인에게 "아이 하나 더 낳아. 오늘 집에 가면 밤에 이불 속에서 신랑한테 하나 더 낳자고 해."라고 말하였고 같은 달 일자불상 경 인공신장실에서 진정인에게 "아기를 하나 더 낳아라."라고 말하였다. 진정인이 "돈이 많이 들어 못 낳는다."라고 하자 "뭐가 걱정이야? 이거 먹이면 되는데"라며 볼펜으로 진정인의 오른쪽 가슴에 있던 명찰을 눌렀다. 같은 해 5.경 인공신장실에서 진정인에게 "내 사진 한 장 줄 테니까 가지고 다녀."라고 하여 진

정인이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자 “아니, 이 놈이 내 사진을 거절하네.” 라며 따귀를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손으로 진정인의 얼굴을 건드렸다.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언동들로 인해 진정인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인공신장실은 30여명의 환자들과 간호사들이 있는 곳이라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언동을 하기 어렵다.

3. 관계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참고인들의 진술 및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사회복지법인인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재활의원의 간호사이자 공공의료보건노동조합 ○○재활의원 분회장으로 일하다 2008. 2. 5. 사직하였으며, 피진정인은 ○○복지재단의 이사장이다.

나. 2007. 8. 중순 경 진정인과 피진정인, 참고인 이○○는 저녁식사를 같이 하며 대화를 하였는데 진정인이 제출한 이 날 대화의 녹취록에는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볼펜으로 가슴을 찔렀어요."라고 하자 피진정인은 "(내가) 신장실에서 격의 없이 지내던 사람은 김○○ 계장이야. 내가 벽이 있었으면 하겠냐고. 볼펜으로 뭐 이런 거는 전혀 기억이 없어, 사고 한 번 나고 나서는. (진정인, 이○○ 웃음) 왜 웃어?"라고 하였고, 진정인이 "볼펜이 내 가슴에 닿으리라고 생각 안하고 하셨겠지만 닿은 걸 어떡해. 거의 찌르는 수준이었어요." 라고 하자 피진정인이 "손가락을 찌르지 왜 볼펜을 찔러? 찔러서 아팠어? 그래서 구멍이 뻥 뚫렸어? 내가 허물없이 지내다 보니 좀 고쳐야 할 부분인데, 내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격의 없이 지내는 사람에게는 막 해, 허물없이 막."이라고 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다. ○○일보는 2007. 8. 22.자 사회면에 '○○재단 이사장 성희롱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사회복지법인 ○○재단 이사장이 직장 내 성희롱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직장 내 비슷한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노동조합은 사측과 가진 교섭자리에서 재발방지를 요구했고, 그 자리에서 이사장은 처음에는 부인하다 "내가 그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위 보도와 관련하여 2007. 11. 7. 진정인 김○○과 참고인 임○○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서에 고소

하였고, ○○경찰서는 2008. 1. 16.자 '혐의없음' 의견으로 ○○지방검찰청 송치하였으며 ○○지방검찰청은 2008. 2. 20.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였다.

마. 참고인 임○○은 당초 진정인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진정인으로, 2007. 5.경 피진정인의 심전도를 촬영하던 중 피진정인이 "내 가슴을 보여줘도 되냐?"라고 물어 "환자 분이니까 괜찮다."라고 하자 피진정인이 "그럼 나도 선생 가슴 봐도 되냐?"라고 물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으로 진정하였으나 2008. 2. 18. 피진정인과 서로에 대한 고소 및 진정을 취하하기로 하였다며 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하였다.

바. 진정인의 직장동료인 참고인 곽○○, 이○○ 등은 2007. 일자불상 경 동료 간호사 또는 진정인으로부터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아이 하나 더 낳으라고 하고 볼펜으로 가슴을 찌르면서 이거 먹이면 된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며 피진정인이 평소 다른 직원들에게도 성적 농담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였다. 그 외 같은 해 4.경 인공신장실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사진하나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 및 같은 해 일자불상 경 피진정인이 주사실에 누워 간호사에게 뽀뽀를 해보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동료 직원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있었다.

사.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주장을 부인하나 참고인들은 진정인으로부터 또는 다른 동료직원으로부터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아이 하나 더 낳으라고 하고, 가슴을 볼펜으로 눌렀으며, 사진을 준다고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고, 본 진정에서 제기된 내용 이외에도 피진정인이 성적 언동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바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진정인이 평소에도 직장 내에서 성적 농담을 즐겨했으며 진정인에게 진정내용과 같은 성적 언동을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5. 판단

가. 업무 등 관련성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상사이자 ○○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였고 진정인은 이로 인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는 것이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성희롱의 성립요건인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지 여부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행한 성적 언동이「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면, 직장 내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성 직원에게 “이불 속에서 신랑에게 아이 하나 더 낳자고 해라.”라고 말하고 “(아이에게) 이거 먹이라.”라며 가슴을 볼펜으로 누르는 등의 성적 언동은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의 직장인으로 존중하지 않고 출산과 수유 등 여성의 생물학적인 역할에 빗대어서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발언 및 간접적인 신체접촉을 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여성이라면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또한 “내 사진을 가지고 다니라.”라고 말하고 볼을 만지는 등의 언동은 사적인 친밀한 남녀관계에서만 허용될 수 있는 행위로 위와 같은 언동이 직장 상사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여성 근로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특히 피진정인은 직장 내에서 여성들이 성희롱 및 성차별적 편견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성적 언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러한 성적 언동은 진정인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므로 이는「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한 성희롱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의 행위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 제5호가 규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14.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15.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하급 공무원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1017 성희롱
【진 정 인】 박○○
【피진정인】 김○○

【주 문】 ○○시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7. 2. 9. ○○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직장 상사인 피진정인이 같은 달 28. △△시 소재 식당에서 진정인을 껴안으며 "5급 공무원인 나와 애인 하자."라고 말하였고, 같은 해 4. 사찰 근처 식당에서 진정인의 가슴을 만지는 등 5개월 동안 수차례 성적 언동으로 진정인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이 신규 발령을 받을 당시 남편과 사별하여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계장급 이상 직원들에게 공개되었고 피진정인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07. 2. 28. 피진정인이 업무 상 보자고 하여 진정인은 ○○에서 일을 마치고 ○○으로 가서 피진정인을 만났는데, 음식점에서 피진정인은 갑자기 진정인을 껴안으며 입을 맞추려 하였다. 진정인이 당황스러워서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들어가 피진정인에게 결혼할 상대가 있다고 하자 피진정인은 "재혼이 그렇게 쉬울 것 같으냐, 요즘 세상에 애인이 없으면 장애인이다, 5급 공무원인 나와 애인 하자, 잘 생각해 봐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같은 해 4. 5.경 피진정인이 점심을 먹자고 하여 사찰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이 나오자 피진정인은 방문을 잠그고 진정인을 눕히며 모텔로 가자고 하였다. 진정인은 매우 당황스러웠으나 일단 밖으로 나가자고 피진정인을 진정시켜 음식점을 나왔다.

같은 해 5. 16.경 퇴근 무렵 피진정인이 퇴근길에 동승을 요청하여 진정인 차량의 운전을 피진정인에게 맡겼는데 피진정인은 아무런 양해도 없이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놀란 진정인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협박도 하고 호소도 하였지만 피진정인은 "3개월도 되지 않은 시보이고, 남편도 없는 여자의 말을 누가 믿어주기나 하겠느냐?"라며 진정인의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모텔 방으로 올라가 버려 진정인은 부득이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진정인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샤워를 하고 나오는 피진정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는 시늉을 하였고, 피진정인이 놀라며 나를 그렇게 못 믿느냐고 사진을 지워달라고 하여 아무 일 없이 모텔을 나올 수 있었다.

같은 해 6. 1.경 피진정인과 함께 ○○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피진정인은 다시 피곤하다며 진정인에게 모텔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고 제안하였는데, 이를 뿌리치기가 어려워 모텔에 들어갔다. 모텔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안으려 했으나 진정인이 화를 내며 제지하여 그냥 잠시 쉬었다 나왔다.

그 외에도 피진정인은 틈나는 대로 “(애인하자는 제안을) 잘 생각해 보았느냐, 박 선생 보려고 일찍 온다, 우리 마누라는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별로다, 박 선생은 아줌마답지 않게 몸매가 너무 예뻐 확인해 보고 싶다, 혼자 힘들지 않느냐, 5급 공무원을 애인으로 하면 멋지지 않느냐, 박 선생 같은 똑똑하고 예쁜 공무원을 애인으로 두는 것이 소원이다, 혼자 밤이 외롭지 않느냐?”는 등의 말을 하였다.

진정인이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무시하고 화를 내는 등 진정인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진정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나. 피진정인

2007. 2. 28. 진정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적은 있으나 껴안고 입을 맞추려 한 적은 없으며, 같은 해 4. 5.경 진정인이 직장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 면담 차원에서 점심을 같이 하기로 하고 사찰 근처 식당에 갔다가 소주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던 중 진정인이 힘들다고 눈물을 흘려 이를 위로하던 중 약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같은 해 5. 16.경 퇴근 후 본인이 진정인의 차를 운전하여 모텔 주차장으로 갔고 당시 모텔에서 진정인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같은 해 6. 1.경 모텔에서 진정인과 한 차례 더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으나 이는 모두 합의에 의한 것으로서 진정인을 협박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다. 그 외 진정인이 주장하는 성적 언동은 한 적이 없다.

다. 참고인 박○○(진정인 동생)

2007. 2.말 오후 3시 경 진정인이 “○○ 근처로 출장을 왔는데 일이 빨리 끝나서 지금 집에 갈 테니 함께 목욕 가자.”라고 전화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후 진정인이 다시 전화를 하여 “과장님이 ○○으로 오라고 한다, ○○에 다녀와야 하니 기다리지 말라.”라고 하였다. 같은 날 진정인은 저녁 8시경 귀가하였고, 본인이 “과장이 왜

불렀냐?"라고 물었더니 "과장이 나보고 애인하자고 그런다."라고 하기에 근무한 지 한달도 되지 않은 진정인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 "그 사람 미쳤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2007. 여름 즈음에 진정인은 "직장 생활이 힘들다, 과장님이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며 결재를 반려시키는 등 힘들게 한다."라고 고충을 토로하였다.

3. 관계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참고인 박○○, 박○○, 이○○의 진술, ○○ 상담소 상담일지, ○○병원 진료기록,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대화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7. 2. 9. 신규 임용된 공무원으로 같은 날 센터의 연구개발과에 배치되었고, 피진정인은 센터 연구개발과의 과장이다.

나. 같은 달 28. 진정인은 ○○로 출장을 가서 오후 3시경 일을 마쳤는데 피진정인이 업무적인 일이라며 진정인에게 ○○으로 오라고 하였고, 피진정인은 저녁식사를 하면서 진정인에게 애인하자는

제안을 한 사실이 있다. 그 밖에 같은 해 4. 5. ○○사 근처 음식점에서 점심 식사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당사자간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 그리고 같은 해 5. 16. 및 6. 1. 등 두 차례 모텔에 간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 진정인은 같은 해 9. 9. 센터 소장인 이○○에게 피진정인으로부터 지금까지 성희롱을 당해 왔다고 호소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은 다음날 피진정인을 불러 진정인에게 마음 속 깊이 사과하라고 지시하였다.

라. 2007. 9. 10. 오후 4시경 진정인은 ○○시 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하여 피진정인의 성희롱 등에 대하여 상담하였는데, 당시 상담일지에는 '사별 사실을 알고 난 후 사무실 과장이 우리 사귀자, 요즈음 애인 없으면 장애인이라는 둥 계속 밥이나 같이 먹자고 추근거림, 거절하면 업무적인 일로 고통을 주고 평소에 많이 괴롭힘.'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 같은 달 12.경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사무실 내 비어 있는 방으로 불러 40여분 간 대화하였고 당시 진정인은 위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제출된 녹취록에는 "발령 받은 지 20일 만에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시고, 식당에서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시고, 제가 어떻게 방어했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진정인이 따지는 내용 및 "상사 과장이라는 게 성희롱 했다고 생각해 봐라, 부모가 뺑 돌고 죽지"라고 피진정인이 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바. 같은 날 오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부친 박○○의 집을 방문하여 잘못했다고 사과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9. 13.경 '저의 일순간 잘못된 처신으로 어르신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만은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과장이란 직함으로 박 선생에게 억지 주장한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박 선생의 입장에서 가슴속 깊이 반성하면서 솔직한 마음으로 어르신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男과 女 인간관계는 애매모호하여『녹피(鹿皮)에 가로 왈(曰)』이라고요……'라는 편지와 함께 일백 만원이 든 봉투를 진정인에게 건네주었다.

사.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편지 내용에 분노하여 다음날인 9. 14.경 피진정인을 만나 돈 봉투를 돌려주었으며, 같은 날 저녁 진정인의 제부가 피진정인에게 전화하여 주말에 다시 만나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자신의 부인이 전화통화 내용을 듣고 진정인과의 관계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더 이상 만날 수 없겠다고 거절하였다.

아. 같은 달 17.경 진정인은 피진정인 등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승용차로 피진정인의 승용차를 들이 받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며,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게 되었다. 치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은 우울, 불안, 초조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지속되었고 같은 해 10. 29.부터 다음 달 8.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5. 판단

우리 사회가 법률로서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제재하는 것은 남녀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 또는 성적 편견과 차별의식에 근거한 다수의 성이 근로관계에서 점유하고 있는 힘을 이용하여 소수의 성을 괴롭히거나 성적 요구를 하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근로관계에서 이탈,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직장은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한 곳이므로 인간관계 또한 직장 동료나 상사로서의 예의가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존중해야 할 동료가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편견으로 인해 성희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권력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하급 직원에게 성적 관계나 연애를 제안하게 되는 경우, 하급직원으로서는 그 권력관계 때문에 자율적인 의지로 이를 거부하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며 비록 당사자가 그 권력관계상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당사자의 비자발적 동의나 묵시적 거부의사의 존부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의 권력관계, 당사자가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된 경위나 진행 과정 등 여러 가

지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본 사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애인관계를 제안하고 일정한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그 뒤 진정인과 두 차례 모텔에 간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인바, 진정인이 음식점이나 모텔에 가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먼저 2007. 2. □□시 출장 업무를 마친 진정인을 ○○으로 불러 애인 관계를 맺자고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후의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이 같은 해 9. 12.경 진정인과 대화하면서 "상사 과장이라는 게 성희롱 했다고 상상해 봐라."라며 스스로 본인의 행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점, 진정인의 부친 박○○의 집에 찾아가 사과하고 사과 편지와 돈 봉투까지 건넨 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최초 진술서에는 진정인과의 성관계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가 이후 대면 조사시 진정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고 횟수 또한 추가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양 당사자의 사이가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동등한 자격에서 애정을 주고받는 자발적인 남녀관계가 아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진정인은 시보 기간을 무사히 마쳐야 하는 신규직원인 반면 피진정인은 오랜 경력을 보유한 과장이었고 특히 2007. 6.부터 8.경 센터 소장으로 부임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진정인이 피진정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수개월 후 정신과 입원치료까지 받기에 이른 점을 참고하여 볼 때, 양 당사자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은 진정인보다 우월한 권력을 가진 피진정인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진정인에게 받아들여졌고 진정인이 이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진정인이 자발적으로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에 응하였거나 수락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직장에서 절대적으로 권력의 강자인 상사의 성적 요구에 대하여 그것도 6개월의 시보생활을 거쳐야 하는 불안정

한 지위에 있는 진정인이 이를 정면에서 거절하거나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문제제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설령 진정인이 싫다고 명백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모텔에 갔다 할지라도 이는 업무 상 보복이나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므로, 결국 하급직원인 진정인을 그와 같이 몰아간 피진정인의 행위는「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장인 피진정인이 시보 자격으로 일하고 있는 하급직원인 진정인에게 연애관계를 제안하고 성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모텔에 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진정인에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그 행위의 상습성 및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조치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의 언동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 제5호가 규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14.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16. 엔터테인먼트 회사 상사의 직원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854 성희롱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에서 상품판매 기획업무를 하는 부서의 직원이고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같은 부서의 팀장이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동 회사에 근무하였던 2007. 6. 21.부터 같은 해 7. 26. 사이 진정인이 입고 있는 티셔츠를 보며 "그 셔츠 맘에 든다. 한번 입어보게 벗어봐라."라는 말을 수차례 하였고, 티셔츠를 잡거나 만지며 벗어보라고 한 적도 있었다. 당시에는 "왜 그러세요. 싫어요"라고 말하며 넘겼지만 진한 색의 티셔츠를 입은 경우는 안이 바로 속옷이었기 때문에 피진정인의 이러한 반복된 언동으로 인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과 함께 근무하는 동안 진정인이 입고 있는 티셔츠가 마음에 든다며 입어보게 벗어보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그것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 편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한 말이었을 뿐 성희롱을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현재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진정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희롱 진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 참고인 장○○

진정인 및 피진정인과 한 달 가량 같은 팀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사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티셔츠가 마음에 든다며 입어보게 벗어보라는 말을 하는 것을 한 두 차례 보았다. 당시 진정인이 입고 있던 티셔츠가 헐렁한 스타일이기는 하였지만 여자 옷이기 때문에 남자가 입을 만한 옷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진정인은 "왜 그러시느냐?"라고 하면서 넘어갔지만 이 일 때문에 짜증을 내는 것을 본 적이 있다.

3. 관련 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5.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

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피진정인은 ○○○○○○○○○에서 상품판매 기획업무를 하는 부서의 팀장이고, 진정인은 피진정인과 같은 부서의 팀원으로 2007. 6. 21.부터 한 달 가량 함께 근무하였다. 피진정인은 근무하는 동안 진정인이 입고 있는 티셔츠가 마음에 든다며 입어보게 벗어보라는 말을 수차례 하였는데,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를 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직원이 한 두 차례 목격하였다.

나. 어떤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성적 언동의 유무 여부, 양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행위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같은 회사에 소속된 팀장과 팀원의 관계이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입고 있는 티셔츠가 마음에 든다며 입어보고 싶으니 벗어보라는 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업무 관련성 여부나 문제되는 언동의 존재유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합리적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진정인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만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살피건대, 우선 우리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입고 있는 옷을 벗어보라고 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상대에 대한 친근감의 표현으로 통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티셔츠는 외투 등의 겉옷과 달리 이를 벗을 경우 바로 속옷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벗어보라는 말을 들은 여성으로서는 당혹감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성적 함의가 내포된 언동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충분하다고 인정된다. 만약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이러한 언동이 장난 또는 친근감의 표현이었다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언동에 대해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을 때 이를 중단했어야 했음에도 몇 차례 더 동일한 언동을 반복하였는바, 이러한 행위의 지속성이 진정인으로 하여금 더 큰 불쾌감과 성적 굴욕감을 느끼도록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이었다고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28.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17. 국회의원 보좌관의 의원실 직원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8진차6 성희롱

【진 정 인】 ○○○

【피진정인】 1. ○○○
2. △△△
3. □□□
4. 성명불상 3인

【주 문】 1. 피진정인 ○○○에 대한 진정은 기각한다.
2. 피진정인 △△△에게 진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일백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3. 국회 사무총장에게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4. 피진정인 성명불상 3인에 대한 진정은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국회 ○○○ 의원실 소속 직원으로 2007. 1. 4. 피진정인 ○○○, △△△, □□□ 및 다른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였는데 회식 및 이후 진행과정에서 성희롱과 성차별을 당하였으므로 시정

을 원한다.

피진정인 ○○○은 거부하는 진정인에게 폭탄주를 강요하였는바 이는 성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인 △△△은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있던 진정인의 볼에 입을 맞추고 진정인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느냐고 물었으며, 피진정인 □□□은 노래방에서 여성도우미를 껴안는 등의 언동으로 진정인에게 성적 혐오감을 주었고 피진정인 △△△의 사직처리를 진정인에게 맡김으로써 성희롱 피해자에게 2차적인 가해를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성명불상 3인은 ○○당 ○○시당 게시판에 있던 본 성희롱 사건 관련 글을 중앙당 게시판에 옮겨 실음으로써 진정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

2007. 1. 4. 보좌진들과 회식하는 자리에서 한 직원의 요청으로 맥주와 소주를 섞은 폭탄주를 돌리게 되었다. 본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2007. 1.경 진정인의 대리인 ○○○의 요청으로 '가해 직원을 징계해고 처리할 것, 진정인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들을 징계할 것, 진정인에게 이 사건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것, 피진정인을 포함하여 재발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 직장 내 성희롱 발생 관련 내규를 정할 것'을 약속하였고 보좌관에게 위 사항의 이행을 지시하였다.

2) △△△

2007. 1. 4. 저녁 노래방에서 진정인이 소파에 누워 있어 일어나라고 깨우며 진정인의 볼에 두 차례 입을 맞춘 적은 있으나 가슴을

만져도 되냐고 물은 적은 없다. 피진정인의 행위로 인한 진정인의 정신적 고통이 큰 것 같아 2007. 1. 8. 저녁 보좌관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후 진정인의 대리인 ○○○로부터 '언론에 기고하지 말라, 당 활동을 하지 말라'는 등의 요구사항을 듣고 이를 이행하였다.

3) □□□

2007. 1. 4. 노래방에 들어왔던 여성은 도우미가 아니라 노래방 주인 아주머니로 맥주와 안주를 가지고 들어왔다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불렀던 것이며 진정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진정인에게 피진정인 △△△의 면직요구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진정인이 그 일의 처리를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여 진정인에게 사과한 후 피진정인이 직접 피진정인 △△△의 사직을 처리하였다.

다. 참고인

1) ○○○(동료 직원)

2007. 1. 4. 회식 중 1차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하였고 2차 노래방에서 피진정인 □□□이 처음 보는 여성과 어깨동무를 하며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진정 외 ○○○ 일행이라고 생각했으나 이 여성이 노래가 끝난 후 밖에 나가 술을 가져오는 것을 보고 노래방 종업원임을 알았다. 위 여성이 피진정인 □□□과 어깨동무를 하고 서로의 허리에 손을 얹는 등의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았다.

2) ○○○(동료 직원)

2007. 1. 4. 회식 자리에서 폭탄주를 돌린 것은 사실이며 진정인이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거부 의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진정인도 폭탄주는 아니지만 술을 마시면서 함께 어울렸으므로 이를 강요행위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노래방에서 피진정인 △△△이 진정인 옆에 앉아 진정인의 머리를 만지고 말을 거는 것은 보았지만 진정인이 힘들어하여 △△△이 부축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노래방에서 여성 종업원이 술과 안주를 가지고 들어왔고 피진정인 □

□□이 위 여성 종업원과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을 보고 불쾌감이 들었다.

3. 관계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들의 진술, 참고인 ○○○, ○○○, ○○○의 진술, 국회 사무처의 성희롱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7. 1. 4. 당시 피진정인 ○○○은 ○○당 소속 국회의원이었고, 진정인과 피진정인 △△△, □□□은 ○○○ 의원실 소속 직원이었다.

나. 2007. 1. 4. 오후 ○○○ 의원실 직원 및 외부인 등 총 11명은 국회 근처 식당 '○○'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이 자리에서 피진정인 ○○○은 폭탄주를 돌렸다.

다. 같은 날 식당에서 나와 노래방에 갔는데 진정인은 머리가 어지러워 소파에 누워 있었고 피진정인 △△△은 소파에 누워있던 진정인에게 다가가 일어나라며, 안 일어나면 뽀뽀한다고 하면서 진정

인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한편, 노래방 여종업원이 들어와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

라. 진정인은 2007. 1. 8. ○○○ 의원실 직원들의 전체 회의가 끝날 무렵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을 비공식화한다, 사건조사를 1년간 유예한다, 교육을 수강한다'는 등 몇 가지 사항의 이행을 요구하였고, 피진정인 △△△은 당일 저녁 그만두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사무실을 그만두었으나, 후임자 선정 등 의원실 내부 사정으로 같은 해 4. 23.에 이르러서야 의원면직 처리되었다.

마. 진정인은 피진정인 △△△이 사직함으로써 본 성희롱 문제를 마무리하려는 것에 화가 나 ○○당 여성위원장이던 진정 외 참고인 ○○○ 등 3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하였고, ○○○는 2007. 1.말경 피진정인 ○○○을 만나 '가해 직원을 해고 처리할 것, 진정인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할 경우 이들을 징계할 것, 진정인이 이 사건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것, 피진정인을 포함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것,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시 필요한 처리 규정과 징계규정을 내규로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007. 2. 말경 피진정인 △△△을 만나 '진정인과 마주칠 수 있는 곳에 나타나지 말 것, 언론에 기고하지 말 것, 당 활동을 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였다.

바. 피진정인 □□□을 비롯하여 ○○○ 의원실 직원들은 2007. 4. 중순과 5. 중순 경 대리인 ○○○, ○○○로부터 성희롱 관련 교육을 2회 수강하였고, 피진정인 ○○○과 의원실 직원 ○○○은 당시 다른 사정으로 인해 교육을 수강하지 못하였다.

사. 국회 사무처는 매년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국회 사무처 성희롱예방 및 처리지침」에 '고충전담창구 마련, 성희롱 심의위원회 구성, 재발방지 및 가해자 징계'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직원들에게 고충전담창구제도가 충분히 홍보되지 않고 있으며 성희롱 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는 등 지침에 정한 규정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아. 한편, 피진정인 △△△의 성적 언동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은 진정인의 볼에 입을 맞춘 것은 인정하면서 진정인에게 "가슴 만져도 돼?"라고 물은 사실은 없다고 하나, 진정인과 피진정인 △△△은 본 사건 발생 전 매우 친밀한 관계로서 달리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갈등관계에 있지 않았던 사이로서 진정인이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낼 이유가 없는 점, 반면 피진정인은 당시 과음으로 인해 진정인의 볼에 입을 댄 이후의 정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점, 진정인은 조사관과의 대면 진술 자리에서 처음부터 이 부분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수치스러워 입 밖에 내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볼에 입을 맞춘 행위보다 가슴 만져도 되냐는 발언이 더 강한 모욕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정인의 태도와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와 관련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자. 피진정인 □□□은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나 이를 목격한 참고인 ○○○, ○○○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진정인 □□□이 진정요지와 같은 성적 언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5. 판단

가. 피진정인 ○○○에 대한 판단

위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폭탄주를 강제로 마시게 한 것이 성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컨대, 폭탄주를 돌아가며 마시게 하는 것이 강제적인 면이 있고 특히 해당 모임에서 지위가 가장 높은 사람이 폭탄주를 만들어 돌린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여성에게는 남성 중심적이고 폭력적인 음주의 강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항 제2호 및 제2조 제4호는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음주 문화의 배경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음주 문화를「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한 차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 ○○○에 대한 진정은「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피진정인 △△△, □□□에 대한 판단

먼저, 피진정인 △△△이 진정인에게 한 성적 언동이 진정인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했는지를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술에 취해 진정인의 볼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져도 되느냐고 묻는 것은 직장 동료에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합리적 여성이라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성적 언동이라 할 것이다. 특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도 고려해야 하는바, 진정인이 평소 아끼고 신뢰하던 피진정인 △△△이 회식자리에서 비록 술이 취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진정인을 성적 대상으로 대했다는 것에 대하여 진정인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이 어떠했을지는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이 진정인에게 한 성적 언동은「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한 성희롱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 □□□의 언동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록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직접적인 성적 언동을 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본인의 성적 행위로 타인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시킨 행위 또한 성희롱에 해당된다. 우리 사회가 법률로서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제재하는 것은 남녀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 또는 성적 편견과 차별의식에 근거한 다수의 성이 근로관계를 점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소수의 성을 보호하여 이들이 근로관계에서 이탈,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에게 성적으로 유해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직장 내 문화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에도 회식장소에서 노래방 여종업원과 신체적 접촉을 함으로써 진정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

오감을 주었으므로 이는「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한 성희롱에 해당된다. 또한 진정인에게 피진정인 △△△의 사직 처리 업무를 지시한 것은 성희롱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한 부적절한 행위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 △△△, □□□의 성적 언동은「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비록 피진정인 △△△이 본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사직한 것은 사실이나 본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지 1년 이상 지났음에도 진정인의 정신적 고통이 치유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 □□□은 2007. 진정인의 대리인들에 의해 이미 2차례 교육을 수강하였으므로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편「여성발전기본법」제17조의2는 국가기관들로 하여금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성희롱예방교육을 비롯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 각 의원실 직원의 관리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 사무처는 매년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남성이 다수이고 특히나 위계적인 서열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국회의 조직 성격상 성희롱과 성차별로부터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사무처의「국회사무처 성희롱예방 및 처리지침」은 성희롱 발생 시 조사구제 절차 및 피해자 보호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성희롱 발생시 피해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등을 국회 사무총장은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고 특히 성희롱 심의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는 등 관련 규정과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는바,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성희롱 사건 발생시 조사·처리절차,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규정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상세히 안내하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 피진정인 성명불상 3인에 대한 판단

본 진정은 피진정인이 특정되지 않아 진정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결론

가. 피진정인 ○○○의 행위는「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피진정인 △△△, □□□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 피진정인 성명불상 3인에 대한 진정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2008. 5. 19.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18. ○○주식회사 상사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463 성희롱
【진 정 인】 ○○○
【피진정인】 1. ○○○
2.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 문】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 대표이사에게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대상 교육 및 예방을 철저히 할 것과 성희롱 사건 발생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 ○○○은 진정인의 부서장으로 근무하던 2004.과 2005. 당시 수시로 진정인의 등과 옆구리를 만졌으며 2005. 6. 헝가리 출장시에는 진정인의 엉덩이를 치며 "상무님 잘 모시라."라고 말하는 등의 성적 언동으로 진정인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었다.

참다못한 진정인은 2005. 6. 17. 위와 같은 피진정인 ○○○의 성

희롱 사실을 회사에 알렸는데 회사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피진정인 ○○○에 대한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다른 사업장으로의 배치를 요구하는 진정인을 7개월 동안 대기발령 시켰으며 2006. 1. 배치된 아이알(IR, Investor's Relationship) 부서에서는 진정인에게 적절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소외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1년 9개월 동안 방치하였다. 이 때문에 진정인은 고과점수를 낮게 받는 등 인사 상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

진정인에게 성적 언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2005. 6.중하순경 영업지원팀 인사부장 ○○○로부터 진정인이 주장하는 성희롱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당시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피력하였다.

2) ○○○○ 대표이사

2005. 6.경 진정인이 회사 측에 피진정인 ○○○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음을 알려와 그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는데 피진정인 ○○○이 이를 부인하고 진정인의 주장 외에 달리 성희롱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웠으며 피진정인 ○○○이 2005. 6. 30. 회사를 퇴직하여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진정인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나 피진정인 ○○○에 대한 처벌이 아닌 영업본부 외 다른 부서로의 배치를 요구하여 재배치할 부서와의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은 진정인에게 고지되었고 진정인도 이를 양해하였다.

2006. 1. 진정인을 아이알 부서에 배치하였으며 진정인에게는 외부투자자 미팅, 주주총회 의결권 확보 등 경력 및 역량에 맞는 업무가 부여되었는데 진정인의 불성실한 태도 및 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해 부서장이 진정인에 대한 배치전환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성희롱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고 이후에도 여러모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사실이 아니다.

3.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진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1998. 2. 15. ○○그룹 대졸 ○○기 신입사원으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에 재직 중이며, 피진정인 ○○○은 1984. 8. 4. 입사하여 영업부장 등으로 근무하고 2005. 6. 30. 퇴직한 이후 ○○○○의 기존 부품 생산 업체인 주식회사 ○○에 근무하다 퇴사하였고 현재는 미국에 거주 중이다.

나. 진정인은 2003. 6. 25.부터 ○○○○1팀에 근무하였는데 2004. 3. 피진정인 ○○○은 ○○○○1팀이 소속되어 있는 해외영업부서의 부서장으로 부임하였고 2005. 1.경 회사 생산 품목에 대한 구조조정을 전담할 한시적 기구인 '○ 프로젝트팀'이 구성되어 진정인과 피진정인 ○○○은 위 팀이 해체된 2005. 6.까지 함께 근무하였다.

다. 진정인은 2005. 6. 17. '○ 프로젝트팀' 해체에 따른 부서 재배치 면담에서 영업본부 인사그룹장인 ○○○에게 피진정인 ○○○의 성희롱 사실을 알리며 영업본부 이외 부서로의 이동을 요청하였고 ○○○는 피진정인 ○○○과 당시 출장을 함께 갔던 참고인 ○○○에게 진정인이 말한 성희롱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두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라. 진정인의 지인인 참고인 ○○○는 2005. 일자불상 경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집에 스포츠 브래지어가 많이 쌓여 있어 진정인에게 이유를 묻자 진정인은 “상사가 자꾸 브래지어 끈 있는 곳을 만지고 옆구리를 찔러 브래지어 자국이 나지 않도록 스포츠 브라를 입는다.”라고 말하였으며 2005. 일자불상 경 “상사와 유럽 출장을 가게 되어 걱정스럽다, 회사 여직원이 상사 손버릇이 나쁘니까 조심하라고 했다.”라고 말하였고, 출장을 다녀온 진정인이 남자친구와 함께 참고인 ○○○가 거주하던 ○○○도 ○○에 놀러와 술을 마시며 얘기 하던 중 울면서 “출장 중 상사가 엉덩이를 쳤다, 블루스를 추자고 하여 거절하자 호텔로 돌아와 의전과 접대를 잘 하라고 했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진정인의 지인인 참고인 ○○○는 2005. 일자불상 경 진정인이 유럽 출장을 다녀온 후 만난 자리에서 진정인으로부터 “출장을 가서 부장이 상사 잘 모시라며 엉덩이를 쳤다, 블루스를 추자고 해서 거절했는데 호텔로 돌아와 상사를 잘 모시지 않는다고 훈계했다, 부장이 평소 손버릇이 안 좋기로 유명해 다른 여직원들도 다 알고 있는데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말하기가 어렵다, 평소에도 목을 만지거나 머리카락을 만지고 브래지어 끈 부분을 만졌다, 팀장에게 얘기를 해도 참으라고만 하여 그냥 부서 사람들이랑 술 마시며 부장 욕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진정인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 회사에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라는 조언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바. 2005. 6. 당시 헝가리에 있는 ○○○○ 직원이었던 참고인 ○○○은 2004.부터 진정인과 업무 상 전화 연락을 하거나 이메일을 자주 주고받았는데 ○○○이 진정인의 등에 손을 대거나 머리카락을 만진다고 하여 영업팀 직원들과 잘 의논하여 처리하라고 조언하였고, 2005. 6.경 진정인과 ○○○이 헝가리 출장을 와서 헝가리 ○○전자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나오던 중 ○○○이 진정인의 엉덩이를 살짝 치는 것을 봤으며 그날 저녁 진정인과 저녁을 함께 먹었는데 진정인은 ○○○이 “엉덩이를 치며 상사를 잘 모시라.”라고 했다며 상당히 흥분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사. 2005. 10.경 ○○○○ 인사부장인 ○○○은 진정인에게 교육아

카데미로의 부서 이동을 제안하였으나 진정인은 교육아카데미 사무실이 '○○' 옆 건물이라 피진정인 ○○○과 마주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아. 진정인은 2005. 7.부터 2006. 1.까지 7개월 동안 ○○○○ 정보보호 필수과정, 전화응대미팅스킬, 국제법무 실무, 비즈니스 일본어 등의 교육을 수강하였다.

자. 진정인은 2006. 1. 아이알 부서에 배치되었는데 참고인 ○○○, ○○○, ○○○, ○○○, ○○○은 진정인이 2006. 한 해 동안 부서장이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직원들이 말을 걸지 않아 스스로를 '투명인간'이라고 부르며 괴로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차. 이상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 ○○○이 사무실 등에서 진정인의 허리, 머리, 옆구리 등을 만지고 2005. 6.경 헝가리 ○○전자 사업장에서 회의를 하고 나오는 길에 진정인의 엉덩이를 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4. 판단

가. 피진정인 ○○○의 행위에 대한 판단

직장 상사가 사무실 등에서 지속적으로 여성 직원의 머리와 어깨 등에 손을 대는 행위를 하고 해외 출장에서 엉덩이를 치며 상사를 잘 모시라고 했을 때 합리적 여성이라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언동이 모욕적이고 성차별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진정인의 근로의욕을 상당히 저하시켰을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피진정인 ○○○이 2005. 6.경 헝가리에서 한 언동은 여성 직원에게 업무 이외 접대의 제공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 ○○○은 ○○○○의 간부로서 여직원들이 성차별과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하고 평등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리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성적 언동을 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이 진정인에게 한 성적 언동은「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한 성희롱에 해당하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여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었고, 피진정인이 2005. 당시 퇴사하여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등 권고의 실효성을 갖기 어려우므로 피진정인에 대한 개별적인 권고는 하지 않기로 한다.

나. 피진정인 ○○○○ 주식회사의 행위에 대한 판단

성희롱은 발생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지만 이후 성희롱 사건의 처리과정에 따라 더욱 심한 피해를 겪게 되기도 한다. 특히 조직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높은 가치로 여기는 조직문화에서는 성희롱을 문제시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이 커서 오히려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와 후유증에 시달리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인사 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2차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는 그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엄격히 규정하면서 제3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본 건을 보건대, 피진정인 ○○○의 성적 언동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진정인이 조직을 위해 참아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수준의 조직문화가 형성되어 왔음이 인정된다. 피진정인 ○○○은 직원들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진 중간 관리자이므로 사용자는 피진정인 ○○○을 비롯한 중간 관리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직원들에게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근로환

경을 보장할 책임을 중간 관리자에게 부과해야 함에도 도리어 그러한 책임을 가진 관리자가 일상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여 모욕적이고 적대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였다면 그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성희롱 피해자가 겪게 될 피해와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조치는 성희롱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회사의 강력한 의지의 표시이므로 근로자들이 성희롱에 대해 경계하도록 하는 효과를 낳아 결과적으로 안전하고 평등한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피진정인 ○○○○는 2005. 6. 진정인으로부터 성희롱 사실을 고지 받은 후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 ○○○과 해외출장에 동행하였던 참고인 윤○○의 진술만 청취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는바 ○○○은 피진정인 ○○○이 ○○○○를 그만두고 옮긴 '○○'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피진정인 ○○○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리 없음에도 이의 진술만으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은 미흡하고 부적절한 조치였다 할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은 당사자 간 위계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감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부인하면 더 이상 밝힐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성희롱 피해자의 피해를 확대시킬 뿐 아니라 직장 내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사용자가 성희롱에 대한 근절의지가 없음을 보여주어 성희롱 예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진정인은 성희롱 사실 고지 이후 2006. 1.까지 부서배치를 받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교육 등을 수강하며 7개월을 보냈는바 비록 진정인의 동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진정인의 영업본부 이외로의 전보 요청이 성희롱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라도 보다 빠르게 조치를 취했어야 하며, 특히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 조치의 가장 기초적인 사항임에도 피진정인 ○○○과 같은 건물에서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한 것은 진정인을 성희롱 피해자로 보호하려는 인식이 없었고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

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진정인이 피진정인 ○○○의 성적 언동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게 된 점, 진정인이 2005. 6. 피진정인 ○○○의 성적 언동을 고지하였음에도 철저한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직장 문화 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점, 오히려 진정인이 7개월간 대기 발령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은 피진정인 ○○○○가 직원들에게 성희롱 없는 안전한 고용환경을 제공해야 할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성희롱 발생 후에도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피해를 가중시킨 것이라 할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의 행위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 제5호가 규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8. 25.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19. 회사 파업 중 경비용역업체 직원의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1100 성희롱

【진 정 인】 1. ○○○
2. ○○○

【피진정인】 1. 주식회사 ○○제약 대표이사
2. ○○○
3. 성명불상 직원

【주 문】 1. 주식회사 ○○제약 대표이사에게 용역경비업체 직원이 업무 수행시 성적 언동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업무 수행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주식회사 ○○○ 대표이사에게 소속 직원에 대하여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주식회사 ○○제약(이하 ○○제약)의 직원이자 노동조합 간부이다. ○○제약에서 관리를 위탁한 주식회사 ○○○(이하 ○○○) 직원인 피진정인 ○○○는 회사의 직장 폐쇄와 노동조합의

파업이 진행 중이던 2007. 9. 진정인 ○○○에게 “나중에 데이트하자, 집으로 찾아 가겠다.”라고 말함으로써 성희롱 하였고, 같은 ○○○ 소속 성명불상 피진정인은 임신 중인 진정인 ○○○에게 “배불뚝이가 지랄하네.”라는 등의 언동을 함으로써 성적 굴욕감을 주었다. 피진정인 ○○제약은 위 피진정인들의 성적 언동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주식회사 ○○제약 대표이사

피진정인 ○○○, 성명불상 피진정인은 ○○제약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며 ○○제약의 경비를 위탁 받은 ○○○의 근무자들이다. 진정인들을 포함한 노동조합원들은 장기간의 불법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기물을 파손하여 회사의 경비를 용역업체에 의뢰한 것이며 오히려 경비업체 직원들이 노동조합의 폭행과 난동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위를 할 리 없다.

2) ○○○

2007. 9.부터 같은 해 11. 중순까지 ○○○ 소속 채증 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제약 ○○공장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경호 및 노동조합원의 불법행위 채증을 담당했다. 당시 경비원은 모두 남성이고 노동조합원은 여성이라 회사에서는 상대방과의 마찰을 피하되 부득이한 마찰이 생길 경우 항상 뒷짐을 지라는 지시를 받았다. 진정인 ○○○에게 “데이트하자, 집에 찾아가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대치과정에서 노동조합원이 경비원을 잡아끌고 욕을 했다.

3. 관계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4. 인정사실

진정인들 및 피진정인들의 진술, 참고인의 진술, 진정인 ○○○의 병원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 ○○○, ○○○은 ○○제약 직원이자 각 노동조합 조직부장과 사무장이고, 피진정인은 ○○제약 및 ○○제약과 계약관계에 있는 ○○○의 직원이다.

나. 2007. 7. ○○제약의 매각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파업을, 회사는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제약은 회사 시설의 관리 등을 ○○○에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탁 계약에 따라 2007. 9. 12.부터 7명의 ○○○ 직원이 ○○제약 ○○공장에 투입되었다.

다. ○○제약 직원인 참고인 ○○○은 2007. 10. 3.경 ○○제약 대표이사인 ○○○이 회사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어 진정인 ○○○와 회사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피진정인 ○○○가 다가와 진정인 ○○○의 이름을 거론하며 "여기 어린 사람 많던데 84년생부터 83, 82, 81년생까지... 당신도 81년생이잖아."라고 하였고, "집도 알고 있으니 회사가 이기든 노조가 이기든 집으로 찾아갈 테니 데이트하자."라고 하였으며 이 말을 들은 진정인 ○○○가 매우 기분 나빠하면서 나중에 진짜로 찾아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무서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제약 직원이었던 참고인 ○○○은 2007. 10. 11.경 피진정인 ○○○가 참고인을 가리키며 다른 용역경비원에게 "야, 니 사람 올라간다, 인사해야지."라고 하고 그날 오후에도 화장실을 다녀오는 참고인을 보면서 무전기에 대고 "야, 니가 사랑하는 사람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등의 언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며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였으나 회사를 그만 둔 후 진정을 취하하였다.

마. ○○제약 직원인 참고인 ○○○, ○○○, ○○○은 2007. 9. 28. 11시경 노동조합 사무실 집기를 옮기던 중 용역 경비업체 직원이 앰프를 던져 노동조합원 ○○○와 진정인 ○○○이 살살 놓으라고 하자 성명불상 피진정인이 "갖다 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해 쌍년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진정인 ○○○에게 '배불뚝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시 소재 ○○신경정신과 원장인 참고인 ○○○은 2007.말경부터 진정인 ○○○를 상담 치료하였는데, 진정인 ○○○가 용역경비업체 직원이 "집으로 찾아 가겠다, 나중에 보자, 데이트 하자."라고 했다며 심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보였으며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진정인이 지속적인 공포감을 호소했다고 진술하였다.

사. 위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는 진정인이 '호흡곤란, 가슴답답함, 불안 등을 호소하며 2007. 11. 23. 내원하여 적응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하에 약물 및 정신치료 중인 환자로,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증상 및 호흡곤란이 더 심해지고 있어 3개월 이상 약물 및 정신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 참고인 ○○○, ○○○, ○○○, ○○○, ○○○의 진술 및 진정인 ○○○의 진단서에 따르면 피진정인 ○○○가 2007. 9.경 진정인 ○○○에게 "파업이 끝나면 찾아가겠다, 데이트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며 같은 해 10.경 성명불상 피진정인이 노동조합 사무실 집기를 옮기던 중 진정인 ○○○에게 '배불뚝이'라

고 말한 것 또한 사실로 인정된다.

5. 판단

가. 성희롱 행위자의 업무관계 등 해당 여부

진정인들과 피진정인 ○○○ 등이 동일한 사업주 하의 근로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나, 피진정인 ○○○ 등은 ○○○가 ○○제약과 시설 관리를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체결함에 따라 ○○제약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것이므로 업무 관련성이 있다 할 것이다.

참고로 여성부의 성희롱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직원들에 대한 민원서비스기본과정 교육에 관한 위탁교육계약을 외부 민간업체와 체결하고 약 2개월 사이에 8회에 걸쳐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위탁교육을 실시한 강사는 상당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결정(2005. 7. 8. 선고 2005두487)한 바 있다.

본 진정은 노동조합의 파업 및 회사의 직장폐쇄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진정인들의 파업이 적법하였한 행위였는지 여부는 업무 관련성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진정인 ○○○ 등이 성적 언동으로 진정인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면 이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5호에 정한 성희롱의 성립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성희롱 여부에 대한 판단

피진정인 ○○○는 진정인 ○○○의 주장을 부인하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 ○○○가 진정인에게 "파업이 끝나면 찾아가겠다, 만나자."는 등의 얘기를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피진정인 ○○○가 진정인 ○○○에게 행한 성적 언동이「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파업과 직

장폐쇄라는 대치 상황에서 투입된 용역 경비업체 직원이 “데이트 하자, 집에 찾아 가겠다.”는 등의 언동을 했다면 합리적 여성으로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특히 노동조합원이 모두 여성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성적 언동은 여성의 성적 굴욕감을 자극할 뿐 아니라 여성에게 공포심을 심어준다는 면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에 해당한다. 특히 진정인 ○○○는 피진정인 ○○○의 언동으로 인한 공포감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성적 언동으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피진정인 ○○○의 성적 언동은 진정인 ○○○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준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한 성희롱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직원인 성명불상 피진정인이 진정인 ○○○에게 ‘배불뚝이’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며 이는 임신한 여성에게 굴욕감을 줄 수 있는 언동에 해당한다.

한편, ○○제약이 피진정인 ○○○와 성명불상 직원의 성적 언동을 알면서 이를 방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진정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권한이 ○○제약에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생산 행위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파업 등 노사간의 대립 또한 업무의 연장이고, ○○○ 직원의 업무는 ○○제약의 직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위임 받아 대신 행한 것이므로 ○○제약은 ○○○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중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는 경비 및 경호업무를 하는 업체로 특히 본 건에서와 같이 노사간의 대치 상황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가 많으므로 직원의 부적절한 언동으로 인권침해 및 성희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 및 성명불상 직원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제5호가 규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8. 25.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20. 건축회사 상사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8진차526 성희롱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주식회사 ○○건축 사장에게 피진정인의 성희롱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주식회사 ○○건축 팀장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건축 직원으로 근무하던 2007. 8.경부터 진정인에게 수시로 "가슴이 크다, 가슴에 파묻히고 싶다."라고 말하고 진정인을 껴안으려 하는 등의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피진정인은 2007. 8.말경 출근하여 식탁에 앉아 있는 진정인에게 다가와 "○ 실장, 우리 뽀뽀 한 번만 하자."라며 손목을 잡아당기고 끌어안으려 하였다. 진정인이 완강히 거부하며 항의하자 피진정인은 웃으며 "왜? 성희롱으로 고발할래? 증거가 없는데?"라고 말하였으며 그 후 진정인에게 수시로 "○ 실장, 내 애인할래?"라는 말을 하였다.

2) 피진정인은 2007. 9.경 모델하우스에서 "내가 열일곱 살 때 고향 ○○에서 친구 다섯 명이랑 동네 처녀 한 사람을 강간했는데 내가 맨 처음으로 했다, 사건이 신문에 나고 문제가 커져서 논 다섯 마지기를 팔아서 보상해줬다."라고 말하였으며 몇 달 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또 다시 반복하여 그만하라고 하였다.

3) 피진정인은 2007. 12.말경 ○○○ 실장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송년 회식 때 함께 놀았던 노래방 도우미가 내 성기를 만져보고 깜짝 놀라더라, 10년 전에 성기 공사를 해서 내 성기 크기가 콜라병만 하다."라고 말하였다.

4) 피진정인은 2008. 3.경 ○○건축 이사 ○○○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 실장 처음에 왔을 때 바로 자빠뜨렸어야 하는데, 그래야 가족처럼 편안해 지는데..."라고 하였다.

5) 2008. 4.경 ○○건축 사장 ○○○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돌아오던 차 안에서 ○○○이 퇴사한 변 대리에 대해 언급하며 "변대리가 살집이 있어 글래머였다."라고 하자 피진정인은 "○ 실장 가슴이 크다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 실장 가슴밖에 안 보입니다. 저 가슴에 한번 안겨 봤으면... ○ 실장 신랑은 좋겠어."라고 말하였다.

6) 2007. 9. 이후부터 피진정인은 한달에 한두 번 술을 마시고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한번 주라니까 주지도 않고... 나는 ○ 실장 마음에 드는데, ○ 실장은 내가 싫은가봐."라고 말하였으며 수시로 "○ 실장 가슴이 크다, 가슴에 한번 파묻혀 보고 싶다."라고 하였고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음란소설을 보면서 "좋은 소설이 있으니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였다.

7)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으로 인한 성적 모멸감과 수

치심이 상당했음에도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 위하여 재직 중에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였다. ○○건축 사장에게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알려 피진정인이 다른 여직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

3. 관계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7. 8.부터 2008. 4.까지 ○○건축에 근무하며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진정인은 2006. 10.부터 ○○건축에서 영업 총괄 업무를 맡고 있다.

나. 진정인의 지인인 참고인 ○○○는 진정인이 회사에 들어간 후 “사무실에 있는 팀장이 수시로 가슴에 파묻히고 싶다고 하고 끌어

안으려 했다.”라고 하면서 “직장 사람만 아니면 가만두지 않겠는데 직장을 그만 둘 수 없어 참는다.”라며 매우 힘들어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건축 전 직원이었던 참고인 ○○○은 일자미상 경 진정인으로부터 피진정인이 모델하우스에서 진정인을 껴안고 키스하려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역시 ○○건축 전 직원인 참고인 ○○○은 진정인으로부터 피진정인이 입 맞추려고 하고, 가슴이 크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참고인 ○○○은 피진정인이 성기 관련 얘기를 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외 ○○건축 이사인 ○○○과 ○○건축 사장인 ○○○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말하기 곤란하다며 진술을 거부하였다.

마.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주장을 부인하나 참고인 ○○○, ○○○, ○○○은 진정인으로부터 피진정인이 껴안고 입을 맞추려 했으며, 가슴에 대해 언급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껴안고 키스하려 하거나, 가슴이 크다고 하는 등의 성적 언동을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바. 그 외 진정인의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참고인 ○○○, ○○○, ○○○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이를 사실로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참고인들이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이 없었다고 이를 부인하지 않고 피진정인과의 관계를 이유로 진술을 회피하는 점,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진정인의 언동이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이를 거짓으로 꾸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진정인의 진정취지가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이로 인해 피진정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진정인이 얻게 되는 이익이 없다는 점 들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이 사실일 개연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5. 판단

직장은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한 곳이므로 구성원 간에 직장 동료나 상사로서의 예의가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존중해야 할 동등한 동료가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성적 편견으로 인해 성희롱이 발생하게 된다. 피진정인 또한 진정인을 동료로 바라보지 않고 성적 대상으로 바라봄으로써 본 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가슴이 크다거나 가슴에 파묻히고 싶다고 하는 등 여성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특정하여 지속적이고 노골적으로 언급한 것과 진정인을 안고 키스하려고 한 행위는 사실로 인정된다.

직장상사가 사무실 등 업무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여성 동료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고 끌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것은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의 직장인으로 존중하지 않고 성적 대상화 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여성이라면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특히 피진정인의 행위가 일상적으로 반복되어 발생함으로써 진정인이 느꼈을 성적 모멸감 및 수치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진정인은 ○○건축의 영업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이와 같은 성적 언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한 성적 언동은 합리적 여성이라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므로 이는「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

○○건축은 업무의 특성상 상근하는 직원이 많지 않고 모델하우스 관리 등의 업무는 여성이 담당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어 향후에도 피진정인이 여성 직원과 근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건축 사장은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성적 언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여직원들이 성희롱 및 성차별적 편견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의 행위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 제5호가 규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8. 25.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21. 학원 강사의 동료 강사에 대한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8진차696 성희롱
【진 정 인】 정○○
【피진정인】 신○○

【주 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학원 ○○분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동료 수학강사인 피진정인은 2008. 6. 12. 수업을 마치고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다음날 새벽 4시 또는 5시 경 노래주점에서 진정인에게 몸을 기대며 뽀뽀하자는 말을 두세 차례 하였고 진정인이 노래주점에 데려온 이유를 묻자 "니랑 내랑 이렇게 술 마시잖아. 그럼 자도 되고 안 자도 되는 거라."라고 하여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인은 당시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다보니 만취하여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뽀뽀를 하자거나 잘 수도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가는 차안에서 같이 술을 마셨던 동료강사 안○으로부터 본인이 자고 있을 때 진정인이 화를 내며 '자신이 학원에 나오지 않으면 본인 때문'이라고 하면서 집에 갔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리고 당일 오후 학원에 출근하여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사항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의 각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8. 3. 24.부터 같은 해 6. 13.까지 ○○학원 ○○분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였고, 피진정인은 같은 해 5. 19. 동 학원에 입사하여 수학을 담당하면서 강사들의 강의시간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겸하고 있다.
나. 2008. 6. 12. 진정인은 퇴근하던 중 피진정인과 동료강사인 참고인 강○○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동 학원 근처의 모 음식점에서 다음날 0시 30분부터 피진정인, 참고인 강○○, 안○, 김○○ 등과 술을 마시다가 새벽 4시 또는 5시 경 노래주점으로 자리를 옮겼다.
다. 그 이후 경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바, 진정인의 진술에 의하면 참고인 안○과 강○○이 술값을 미리 계산

하고 있었고 진정인과 피진정인, 참고인 김○○이 방에 있을 때 피진정인이 진정요지와 같은 언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진정인은 이에 관하여 일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있다.

라. 진정인은 2008. 6. 13. 피진정인과 이 사건에 관하여 세 차례에 걸쳐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안○ 선생님이랑 ○○ 선생님은 카운터에 계산하고 저랑 김○○ 선생님이 계시는 방에 선생님이 제 옆에 앉아 제 쪽으로 몸을 기대면서 뽀뽀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제 남친 생기면 남친이랑 한다고 분명하게 거절했는데 선생님이 제 윗사람이고 하니까... 화제를 돌리려고 선생님께 '왜 노래방에 안가고 노래주점에 왔느냐, 여선생님들도 계신데...' 말하니까 선생님이 '내가 술 마시고 니랑 자도 되고 안자도 되는 거라'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라고 하자 피진정인은 '내가 뭐라고 사과를 해도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내가 평소에 정○○ 선생님(진정인)한테 함부로 생각한 적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왜 그랬는지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라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사과의 의미가 없다며 재차 기억이 나지 않느냐고 물으면서 기억이 나지 않으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 대면을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하고 두 시간 정도 지나 다시 만나자 피진정인은 '생각해 봤거든요. 솔직히 백 프로 기억은 안 나고 그 부분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뽀뽀하고 싶다고 했고 잠자리하고 싶다고 한 것 사과합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진정인은 피진정인과 다시 통화를 하여 피진정인이 사과를 하였으나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퇴직하기 전까지 3일 동안 매일 자신에게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진정인은 그러겠다고 하였다.

마.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은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나 진정인이 사건 당일 오후 피진정인에게 그 내용에 관하여 말하면서 사과를 요청하였다는 점, 당일 오후 피진정인이 진정인과 나눈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문제제기를 하는 진정인에게 전부

기억이 나지 않으나 뽀뽀하고 싶다거나 잠자리를 하고 싶다고 한 것을 사과한다면서 진정인이 퇴직하기 전까지 매일 사과를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점, 동료강사인 참고인 안○과 강○○이 사건 발생 직후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태도에 화를 내면서 자신이 학원에 나오지 않으면 피진정인 때문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우리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 스스로도 기억이 안 난다고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부인하지 못하는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진정요지와 같은 피진정인의 언동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는 성희롱을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외에도 보통의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느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위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피진정인의 언동들이 진정인을 비롯한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였는지를 살펴보면, 피진정인과 진정인이 동료관계이기는 하나 기혼인 피진정인은 40대 중반으로 학원에서 강사들의 강의시간표를 작성하는 등 경력이나 업무 상 선임자의 역할을 하는 자인데 20대의 미혼 여성 강사인 진정인에게 몸을 기대면서 "뽀뽀를 하자"고 하고 "같이 잘 수도 있다"는 등 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일반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충분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의 언동은 진정인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 및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2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22. 광고인쇄업체 사장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8진차208 성희롱
【진 정 인】 최○○
【피진정인】 이○○

【주 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과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진정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광고인쇄업체인 '○○○광고'에서 2008. 1. 4.부터 같은 해 3. 14.까지 근무하였는데, 사장인 피진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성희롱을 당한 후 퇴사하게 되었다.

가. 피진정인은 사무실에서 일상적으로 진정인에게 "어깨 좀 주물러 봐라.", "뽀뽀해 줘." 등의 발언을 하였고, 근무시간 이후에도 수시로 업무와 무관한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곤 하였다.

나. 2008. 3. 7. 피진정인이 업무용 웹하드에 음란성 동영상을 올리고 이를 진정인에게 확인하게 한 후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진정인과 동일인이라고 주장하여 심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으며, 동영상과 관련한 언동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가족에게 사과를 하였다고 하나 이는 피진정인의 일방적인 행위였을 뿐 가족이 사과를 받아들인 바 없으며, 정작 본인에게는 사과를 하지 않아 오히려 더 수치스러웠다.

나. 피진정인

본인은 외근으로 인해 진정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고 사무실에 다른 남자직원이 같이 근무하며 손님도 자주 드나들었기 때문에 은밀한 성희롱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웹하드에 게시된 동영상은 본인이 게시하지 않았고, 동영상을 확인하고 보니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 진정인이 틀림없어 놀랐으며, 진정인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윗사람으로서 훈계한 것이다. 그럼에도 진정인이 가족을 동원하여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이 창피하여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하였으나 진정인의 가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돈을 요구하였다.

다. 참고인

1) 박○○

본인은 진정인의 친구인데 진정인으로부터 피진정인의 언동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그 내용은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우나 짓궂은 농담 수준 이상이었다. 2008. 2.경 일자불상 저녁에 진정인과 만났을 때에도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어디 있느냐?”, “나도 가도 되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직접 보았다. 특히 피진정인이 음란 동영상을 진정인에게 보라고 하면서 이를 즐기는 듯 했다고 하여 진정인이 큰 충격을 받았다. 이에 진정인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충고했으나 진정인은 경제적 사정 상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한다며 고민스러워 했다.

2) 서○○

본인은 진정인의 친구인데, 피진정인이 회사 웹하드에 있는 음란한 동영상을 진정인에게 보게 한 뒤 진정인과 닮았다고 주장했고, 진정인에게 "어깨 좀 주물러라."라고 했다는 얘기를 진정인으로부터 들었다. 일자불상 밤중에 피진정인이 "외롭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진정인에게 보낸 것을 본인도 직접 본 적이 있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집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인은 밤에 피진정인이 찾아올까봐 걱정을 하였고,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지 고민을 하여 본인이 진정인에게 다른 직장 많으니 그만두라고 조언하였다.

3. 관련 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5.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시 소재 광고인쇄업체인 '○○○광고'에서 2008. 1. 4.부터 근무하였으며, 당 업체에는 피진정인과 진정인 외에 남자직원 1명 등 총 3명이 근무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참고인 박○○, 서○○은 진정인이 사무실에서 피진정인으로부터 "어깨 좀 주물러 봐라."는 등의 언행을 자주 듣고 괴로워했음을 진술하고 있고, 진정인은 2008. 3. 6.부터 같은 달 14.까지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일기장에 피진

정인의 언동을 5건 기록한 사실이 있다.

다. 피진정인은 2008. 2. 27. 밤 퇴근한 진정인에게 술자리를 제안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참고인 박○○, 서○○도 일자불상 밤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직접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2008. 3. 7. 업체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웹하드 게시판에 음란성 동영상이 게시되었고, 피진정인은 전화를 통해 진정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였으며,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을 진정인과 대조하면서 "많이 닮았다.", "네가 맞지 않느냐."라고 주장하였다. 진정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렸고, 피진정인에게 "검찰에 고소하겠다."라며 강하게 항의하였으며, 이에 같은 달 11. 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부친과 숙부 등 가족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였으나 진정인의 가족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마. 진정인은 같은 달 14. 직장을 퇴사하였다.

5. 판단

가. 업무 관련성 여부

피진정인과 진정인은 사장과 직원으로 업무 상 상하관계에 있었고, 같은 사무실에서 서로 대면하면서 근무하였으며, 문제가 된 동영상은 업체의 업무용 웹하드에 게시되었던 점에 비추어 피진정인의 언동에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나. 성적 언동의 존재 및 성적 굴욕감의 발생 여부

1)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일상적으로 진정인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에 진술이 상반되고, 이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다. 하지만 참고인 박○○과 서○○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농담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성적 언동

을 자주 하였음을 진정인으로부터 전해 들었고 그러한 직장이라면 차라리 그만두라는 얘기를 본인들이 해주었다고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진정인도 본인이 피진정인으로부터 들은 성적 언동을 일부나마 자신의 인터넷 미니홈피 일기장에 기록한 사실 등을 살펴볼 때 진정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일부러 적시하거나 과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진정인이 행한 언동의 전체 내용을 밝혀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참고인의 진술, 일기장의 기록 내용, 피진정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진정인이 처해 있었던 상황 및 피진정인과 진정인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정인의 일기장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어깨 좀 주물러 봐라.”, “뽀뽀나 해줘.” 등의 언동은 사실로 인정되며 반복된 피진정인의 언동으로 인하여 진정인이 참고 넘길 한도를 넘어 성적인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되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조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웹하드에 음란성 동영상을 직접 게시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이미 게시된 동영상을 진정인에게 확인해 보라고 전화를 통해 이야기하였고,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을 진정인과 비교하면서 동일시하는 발언을 한 사실은 피진정인이 부인하지 않으며 참고인 박○○과 서○○의 진술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이 존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진정인은 윗사람으로서 진정인이 잘못했음을 지적하고 훈계하려 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성희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언동을 한 자의 의도가 아니라 그 언동의 결과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에 따라야 할 것이다.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음란성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 자신이 그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라는 발언을 상사로부터 직접 들었으며, 동영상이 업체 웹하드에 게시되어 거래처

관계자 등 제3자에게도 노출되었던 상황은 심대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유발하고 더 이상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모욕적인 근무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언동을 곧바로 가족 및 친구들에게 알렸고, 피진정인에게 법적 대응을 언급하며 강하게 항의하는 의사표현을 한 직후 직장을 그만 둔 일련의 정황에서도 진정인이 느낀 성적 굴욕감이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그와 같이 성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단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만을 가지고 사실 여부를 단정 지은 채 진정인을 훈계하려 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발언이며, 이전부터 피진정인의 언동에 성적 굴욕감을 느껴온 진정인이 이를 훈계로 받아들였으리라고 볼 여지도 없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 측에 사과를 하였다고 하지만 진정인 본인에게는 직접 사과하지 않았고 피진정인도 자신이 잘못한 것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과에 진정성이 없으므로 진정인이 느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완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언동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2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23. 의료컨설팅 회사 사장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8진차480 성희롱
【진 정 인】 오○○
【피진정인】 김○○

【주 문】 1.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과 진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08. 1. 14.부터 같은 해 5. 3.까지 병원경영컨설팅회사인 ○○○○에서 근무하였는데, 동 회사의 사장인 피진정인은 아래와 같은 성희롱을 하였고, 이로 인해 진정인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가. 피진정인은 2008. 1. 20. 새벽 2시 또는 3시 경 술에 취한 피진정인을 숙소에 데려다 준 진정인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방문을 잠그고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진정인을 의자에 앉히더니 진정인에게 다가와 안고 키스하려고 얼굴을 들이대어 진정인의 안

경에 립스틱 자국을 남겼다.
나. 피진정인은 2008. 2.부터 같은 해 3.경 사무실이나 차 안에서 직원이 보는데도 10여 차례 진정인의 팔짱을 끼우고 그럴 때마다 진정인이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08. 3.초경과 같은 해 3. 26. 진정인과 선후배와의 술자리에 쫓아와 울면서 진정인을 사랑한다고 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근무하는 동안 거의 매일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여 진정인을 사랑한다면서 왜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느냐고 하고 진정인의 집 앞까지 와서 만나자고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이 주장하는 성적 행위나 발언을 한 적이 없다.
2)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들은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또는 진정인에게 여자로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지 진정인을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다.

3.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의 각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8. 1. 14.부터 같은 해 5. 13.까지 ○○○○에서 기획팀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당시 동 회사의 직원은 진정인을 제외하고는 아르바이트생들이거나 1~2명뿐이었다. 피진정인은 동 회사의 사장으로 진정인의 고용주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근무하는 동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만 130통 넘게 보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제가 실수한 부분 흰 눈 속에 덮어주시고 편견 없는 마음으로 오 과장(진정인)과 일했으면...저도 신이 아니라 어리석고 우매한 인간인지라 하찮은 술에 정신을 잃고 말았네요.', '왜 화 나신지 알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꼭 사랑하는 사람 찾으세요. 그때만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우리 다음 세상이 있다면 그땐 꼭 연인으로 만나요.', '제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취중에 한 일이나 변명은 아니지만 너그러이 이해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제 마음 이해해주세요. 제 마음 저도 잡을 수 없어 더 힘든데 더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제발. 제 마음은 한결 같으나 그걸 믿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군요. 술에 취하고 싶은 저를 이해해 주세요. 저도 취하지 않도록 할게요. 저를 싫어하는 이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 혼자의 마음뿐이었던 걸...이제 압니다. 화 푸세요. 체념하고 단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동으로 가면 나오실 건가요? 제가 큰 실수했으니 사과해야죠. 잠깐이면 됩니다. 취중이었지만 진심이었고 그 마음 지금도 같습니다. 취중이라 진실이 아닌 건 아닙니다. 많이 울어서 오 과장(진정인) 창피하게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자격 없는 나의 사랑이 불쾌했다면 받아줄 수 없다면 접도록 하겠습니다. 취중에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황을 이해하기보다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찬 마음 잊을게. 조금씩 정리하고 추스릴 테니 너무 불쾌해 마세요.', '사랑하면 안 되나요. 머리와 마음이 다른데 어떡해요.', '도대체 뭐가 뻔뻔하고 파렴치하다는 건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네. 비겁하게 피하지 말고 말해봐.', '계속 대화 거부하면 퇴사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전화 계속 안받으면 사장명령불복종으로 해고하겠습니다.', '내 평생 나를 이리도 싫어하는 사람 더 이상 잡지 않

아.', '설 연휴 때 처음으로 떨어져 있는 기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는데... 제 번호 스팸 등록 해 두세요. 혹시 술기운에 할 수도 있으니 꼭 수신거부 해두세요.', '○○동에 와 있어요. 잠깐만 얘기해요.', '제 곁에 있어 주세요.', '같이 일해요. 이렇게 가버리면 저는 어떡하나요.', '오 과장(진정인) 제발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기다릴게요. 그만두지 마세요.'라는 것이었다.

다. 피진정인은 2008. 4. 16. 진정인의 휴대전화에 남긴 음성메시지에도 '왜 내 마음을 못 받아 주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도 풀리지 않는데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게 많아요? 전 기억이 안나요.', '○○씨(진정인) 제가 싫은 건 상관없는데, 어떻게 해야 풀릴까요? 제가 죽을까요? 죽으라고 하면 제가 자살할게요.'라고 말하였다.

라. 진정인은 2008. 3. 15. 피정인과 이 사건에 관하여 나눈 대화를 녹음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출장 사건 이후 문자나 음성메시지를 남기거나 아르바이트생들 앞에서 싫다는데도 불구하고 팔짱을 꼈으며 진정인의 후배 앞에서 울면서 사랑한다고 한 이유를 묻자 피진정인은 '오 과장(진정인)을 좋아했던 건 사실이다. 실수를 많이 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2008. 5. 9. 대화 내용에서는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나는 너무 불쾌해요. 남편과 자식이 있는 사람이... 부하직원 뽑아놓고 그렇게 싫다는데도 불구하고 불쾌하게 계속 제가 아는 사람들 앞에서도... 벌써 세 번째에요. 그때 천안에서 나를 덮치려고 했을 때 그때 이후에 내가 분명 싫다고 얘기했으면 더 이상은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또 다시 내 아는 사람들 앞에서 그게 ○○이, ○○가 됐든 아니면 ○○나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분명히 앞으론 그런 행동하지마라, 난 그런 식으로 하면 일 못하니까 앞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이라고 하자 피진정인은 '술에 취해서 실수한 것이다.', '장난이었다.', '안 만나줘서 그랬다.'라고 말하였고, 진정인이 '똑같은 실수가 계속 반복이 되고 전에도 분명히 앞으로 안 그런다고 했지만 또 새벽 세시까지...'라고 말하자 피

진정인이 '두 번이잖아요. 그때 천안하고 ○○씨 회식 때하고... 그 이후에 제가 그런 적 있어요? 두 번이잖아요.'라고 하였다.

마. 진정인은 2008. 3. 14. 우리 위원회에 출장지에서 키스하려 한 피진정인의 행위에 관하여 진정하였다가 피진정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며 같은 달 24. 취하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행위가 계속 되고 있다면서 같은 해 4. 29. 우리 위원회에 다시 진정을 하였고 같은 해 7. 임금체불에 관해서는 ○○○○노동청에, 출장지에서의 성추행에 관하여는 ○○○경찰서에 고소하였다.

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은 대부분 부인하나 진정인과의 대화나 휴대전화 문자와 음성메시지를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문제제기를 하는 진정인에게 출장 시 후배 앞에서 했던 언동을 인정하는 발언이 있고 직원들 앞에서 팔짱을 낀 이유에 대해서 장난이었다는 등의 발언을 한 점,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의 언동으로 인해 불쾌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그러지 말라고 여러 번 요구했다는 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수차례 '실수했다, 용서해 달라,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한 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였던 참고인 박○○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팔짱을 끼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고 진정인의 후배인 참고인 김○○는 피진정인으로부터 진정인을 좋아하는데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동료직원이었던 참고인 최○○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호감을 갖고 접근을 하였으나 진정인이 이를 피하는 것 같았다고 하고 진정인으로부터 피진정인이 자신을 덮치려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참고인들 모두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피진정인의 언동에 불쾌해하고 스트레스를 받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진정요지와 같은 피진정인의 언동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5호는 성희롱을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외에도 보통의 합리적 인간의 관점에서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느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우선,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 김○○와의 만남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끈질긴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데려간 것이라고 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 스스로 자신을 선후배에게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여 만났다고 하는 등 진술이 엇갈린다. 그러나 만남이 있었던 2008. 3. 당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김○○를 만났을 때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언동으로 인해 괴로워하였고 피진정인과의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만남을 피하는 상황이었다는 점,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출장지에서의 성적 언동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우리 위원회에 첫 번째 진정을 제기한 때가 같은 해 3. 14.로 김○○와의 만남 전후였다는 점, 양 당사자가 김○○를 만나기 전 회식을 하거나 업무 상 만남의 자리를 갖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직원이 진정인 혼자 있거나 1~2명 정도 있는 상황에서 회식 후 이어진 술자리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만남의 자리라고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이 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행한 요청을 직원이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김○○와의 만남도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위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피진정인의 언동들이 진정인을 비롯한 합리적 인간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였는지를 살펴보면, 기혼인 여성 고용주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미혼인 남성 부하직원에게 본인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팔짱을 끼거나 사랑한다고 하는 등의 언동을 한 것은 보통의 남성이라면 충분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이라 할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과 진정인이 사용자와 직원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 또는 음성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이성으로서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서 이를 심리적으로 압박한 점 역시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성적 모욕감을 넘어선 정신적 고통과 굴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진정인으로 하여금 비자발적으로 고용관계에서 이탈하게 하고 직장에서 배제되는 경제적 피해를 주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의 언동은 진정인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 및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요지 가항은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한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2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24. 구청 공무원의 하급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8진차958 성희롱
【진 정 인】 박○○
【피진정인】 전○○

【주 문】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과 진정인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8. 8. 15. 사무실에서 특근을 하고 피진정인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였는데, 피진정인은 밤 10시경 귀가하던 길에 진정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갑자기 입을 맞추어 진정인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08. 8. 15. 오후 사무실에 나와 일을 하던 중 진정인에게 “소주나 한잔 하자.”라고 하였더니 진정인이 이에 응하여 ○○동 소재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장소를 옮겨 맥주를 마셨다. 밤 10시경 귀가하던 길에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가는 방향을 지시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어깨를 두 번 정도 친 적이 있고, 지나가던 사람이 피진정인의 어깨를 치는 바람에 피진정인의 입술이 진정인의 얼굴을 훑고 내려간 적은 있으나 고의로 진정인의 어깨를 감싸고 입을 맞춘 적은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과 참고인 김○○, 김○○, 김○○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현재 ○○구청 ○○과에 근무 중이고 피진정인은 같은 구청 ○○과에서 7급 이하 직원들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진정인은 2008. 2. ○○동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중 남성 직원의 괴롭힘 문제를 피진정인에게 상담하면서 피진정인을 알게 되었다.

나. 진정인은 2008. 4. 1. ○○구청 ○○과에 배치되었으며 이후 직장 내에서 피진정인과 마주칠 때마다 식사나 한 번 하자는 인사말을 주고받았다.

다. 2008. 8. 15. 피진정인은 사무실에 출근하여 일을 하고 있던 진정인에게 ‘소주나 한 잔 하자.’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인사 상담에 대한 답례로 식사 대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같은 날 오후 6시경 ○○구청 1층에서 피진정인을 만나 ○○동 소재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소주를 마셨다. 피진정인은 진정인과의 대화 중 “나는 성격이 직설적이라 여자랑 자고 싶으면 자고 싶다고 말한다.... 진정인의 후배 여직원 중 남자 직원들과 잠자리를 함부로

하는 애들이 두 명 있다.”라고 말하였다.

라. 두 사람은 저녁 9시경 식당에서 나왔는데 피진정인이 맥주를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하였고, 진정인은 음식값을 피진정인이 지불했기 때문에 자신이 맥주를 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여 맥주 집에 함께 갔으며, 밤 10시경 맥주 집에서 나오자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피진정인과 진정인은 우산을 함께 쓰고 ○○동에서 ○○동 방향으로 걸어갔는데, ○○동 길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피진정인의 입술이 진정인의 입술에 닿았다.

마. 피진정인은 같은 날 자정 진정인에게 휴대전화로 ‘짜식이 전화 안 받는구만. 잘 자, 낼 전화하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바. 진정인의 남자친구인 참고인 김○○은 2008. 8. 15. 오후 진정인이 피진정인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한다고 하였는데 같은 날 자정경 전화하여 “피진정인과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피진정인이 갑자기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진정인의 직속 상사인 ○○과 ○○팀장 김○○은 2008. 8. 17. 오후 진정인이 집으로 찾아와 “피진정인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울면서 말하였고, “피진정인이 인사 담당이라 내 집을 알고 있을 텐데 찾아올까봐 무섭다.”라며 두려움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 연휴가 끝난 2008. 8. 18.은 을지연습이 시작되는 날이었는데 피진정인은 새벽 6시에 진정인에게 ‘일어났니?’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자. 진정인은 2008. 8. 18. 익명으로 ○○시 감사담당관실 김○○에게 인사담당자가 강제로 입을 맞추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김○○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한다며 진정인에게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차. 피진정인은 2008. 8. 18. 직장 내 메신저로 진정인과의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진정인이 응하지 않았고, 같은 달 21. 저녁 ‘짜식아 내게 설명할 기회 줘야잖어? 에이 나이 먹은 내 잘못이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진정인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

한 같은 달 22. 피진정인은 오전 10시 경 진정인에게 직장 내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진정인이 응하지 않자, '○○. 짜식이 아예 대답도 안 하는구만. (승진) 축하하구. 사과할 기회라도 줘임마.'라고 하였다.

4. 판단

본 사건의 당사자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인사 상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었다고 하며 피진정인은 신입 직원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므로 당사자들의 회식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당시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입을 맞춘 것은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방향을 조정하거나 다른 사람이 부딪혀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우산을 함께 쓰고 있는 상황으로 행인들을 피하기 위해 어깨를 치면서까지 방향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없었으며, 다른 사람과 부딪혔다 할지라도 같은 방향을 보고 걷는 상황에서 피진정인의 입술이 진정인의 얼굴을 훑어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해명이다.

피진정인은 우리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처음에는 진정인과 각자 우산을 썼다고 했다가,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과정에서 "우산을 두 개 들고 있었는데 어떻게 강제로 입맞춤을 했겠느냐?"라고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나중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었으며, 오른쪽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진정인과 얼굴을 마주 보고 걸어가다가 앞에서 걸어오던 사람들이 피진정인의 왼쪽 어깨와 등을 치는 바람에 진정인의 얼굴을 훑어 내려가게 된 것이라 주장했으나 상식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사과할 기회나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한 점, 진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이를 남자친구와 직속 상사에게 호소한 점, 진정인은 본 사건 발생 전 피진정인의 인사 상담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의 만남 또한 그 고마움을 표하기 위한 것으로 진정인이 없는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 피진정인을 곤란하게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건데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성적 언동을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피진정인은 직장 내에서 7급 이하 직원의 승진과 배치 등 직원의 인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내용이 권한의 행사로 비춰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인사 업무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직원의 사적 정보를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남자 동료의 괴롭힘과 승진 탈락으로 힘들어했던 진정인에게 승진 발표를 앞둔 시점에 성적인 언동을 하였다면 그 행위는 인사 담당자가 권한을 이용하여 대가를 바라는 성적 언동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나는 직설적이라 여자와 자고 싶으면 자고 싶다고 얘기한다, 네 후배 중 남자와 잠자리를 쉽게 하는 애들이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는바 이는 직장 동료에게 건네는 이야기로 부적절할 뿐 아니라 특히 관련된 여직원에 대해서는 성적 추문을 유포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인사 상담을 통해 서로 알게 되었고 2008. 8. 15. 저녁 식사 전에는 따로 만남을 가진 적이 없어 친밀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사적인 남녀관계에서나 표현 가능한 호칭과 대화방식을 사용하고 성적인 함의가 있는 말을 건네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입을 맞추는 등의 성적 언동을 하였는바 이러한 언동에 대하여 진정인이 합리적 여성으로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은「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인사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진정인에게 성적 언동을 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본 사건 이후 진정인이 피진정인과 사무실 등에서 마주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성적 굴욕감 및 두려움을 호소하는 등 진정인의 업무환경이 악화되었으므로 진정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의 행위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 제5호가 규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0. 6.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25. 은행 상사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8진차974 성희롱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1. 유○○
2. ○○은행 대표이사

【주 문】 1. 피진정인 1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2에게 성희롱 진정을 이유로 진정인에게 고용 상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임을 문서로서 약속하고, 진정인을 대상으로 한 인력활용계획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 2에게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마련,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 등 성희롱 예방책을 수립하여 전 직원에게 공지하고, 2009년도 성희롱예방교육 실시결과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은행 사원이고 피진정인 1은 같은 회사 대리로,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의 아래와 같은 성적 언동으로 인해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2007. 7.경 ○○지점 회식이 끝난 후 피진정인 1과 주임 이○○이 여직원들을 집에 바래다준다고 하여 함께 차에 타고 가게 되었는데, 그 도중에 위 이○○이 진정인에게 2차에 같이 가자고 제안하였고 진정인이 거절하자 이○○은 "그럼 테이블을 따로 잡고 맥주나 마시자."라고 다시 제안하였다. 그러자 당시 운전을 하며 듣고 있던 피진정인 1은 "그럼 룸을 잡아 줄 테니 둘이 벗고 뒹굴고 비비면서 놀아라."라고 말하였다.

2007. 8.경 정기인사에서 진정인은 △△지점으로 발령을 받아 피진정인 1과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되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11.경 ○○지점에서 근무하던 주임 정○○이 △△지점으로 발령받아 2008. 1.경 △△지점 근처에 방을 얻으려 하자, 피진정인 1은 이를 두고 "(진정인과 정○○이) 같이 살려고 방까지 구하는구나. 아주 같이 살겠네."라고 말하였고, 같은 해 8. 8. 출근길에는 "(진정인과 정○○이) 같이 사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하였다.

나. 진정인은 이상과 같은 피진정인 1의 성적 언동에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끼고 △△지점장을 통해 회사에 문제해결을 요청하였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어 2008. 8. 12. △△지점장을 상대로 노동부에 직장내 성희롱 진정을 하였고, 회사 측은 진정인에게 노동부 진정을 취하할 것을 설득하였다. 진정인은 같은 해 9. 26.자로 본사 기획팀으로 발령이 났으며, 피진정인 1은 같은 해 10. 16.자로 퇴사하였다. 그러나 회사 측은 진정인에게도 이직을 권유하였고 기획팀 발령 이후 거의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인터넷도 연결해주지 않는 등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유로 고용 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2007. 7.경 ○○지점 회식이 끝난 후 본인이 운전하는 차에 주임 이○○, 진정인과 동승한 사실이 있다. 본인은 뒷좌석에 앉은 진정인이 눈을 감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과 '신나게 춤추고 놀자.'는 대화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2008. 8. 8. △△지점 사원 배○○과 함께 출근하던 길에 진정인과 정○○이 함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혹 둘이 동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부하직원 관리 차원에서 배○○에게 의견을 구한 적이 있다. 금융기관에서는 같은 지점에 근무하는 남녀 직원이 교제를 하는 경우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보수집 차원에서 물어본 것이다.

2) 피진정인 2

2008. 8. 27. ○○지방노동청 △△지청의 출석공문을 받은 △△지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당사도 이 사건에 대해 공식대응 할 수밖에 없게 되어, 같은 해 9. 17.부터 본사 감사실을 통해 진정인, 피진정인 1, 이○○(○○지점 주임), 임○○(당시 ○○지점 차장), 박○○(○○지점 사원), 배○○(△△지점 사원)을 상대로 진술을 듣는 등 사실조사를 하였다. 감사 결과 피진정인 1의 성적 발언의 진위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피진정인 1에게 책임자로서의 품위유지 및 관리상 미숙이 있었음이 인정되었고, 이에 피진정인 1은 같은 해 10. 16.자로 퇴사하였다. 이 사건을 이유로 당사가 진정인에게 퇴직을 종용한 사실은 없으며, 향후에도 당사는 진정인이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 참고인

1) 이○○(○○지점 주임)

2007. 7.경 ○○지점 회식을 마친 후 지점으로 가는 길에 여직원

들을 바래다주기로 하고 피진정인 1, 본인, 진정인, 그리고 두 명의 여직원까지 모두 다섯 명이 지점 업무용 차량에 동승하였다. 두 명의 여직원을 내려주고 가는 도중에 피진정인 1이 노래방(또는 나이트클럽, 단란주점)에서 남녀가 같이 노는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했고 본인은 뒷좌석에 있던 진정인이 자고 있는 것 같았지만 민망해서 그만 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지점에 거의 다 왔을 무렵 진정인에게 맥주 한 잔 하자고 이야기 하였으나 집에 간다고 하여 집 앞에 내려주었다.

2) 정○○(전 ○○지점, △△지점 주임)

2007. 7.경 ○○지점 회식이 끝나고 동료직원들과 2차 회식을 하던 중 진정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당시 진정인이 피진정인 1로부터 "룸을 잡고 홀딱 벗고 뒹굴고 부비며 놀아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울면서 호소하여 본인은 차장에게 보고하라고 조언해 주었다.

2007. 11.경 ○○지점에서 △△지점으로 발령받아 2008. 1.경 △△지점 근처에 집을 얻으려고 하던 중 ○○지점 사원 박○○로부터 피진정인 1이 본인과 진정인이 살림을 차리려고 회사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이야기한다며 소문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받았다.

또한 2008. 8. 8. 아침에는 △△지점 사원 배○○로부터 피진정인 1이 출근길에 "정○○과 김○○가 동거를 하는 것 같다. 뭐 들은 이야기 없느냐?"라고 물어보았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3) 임○○(당시 ○○지점 차장)

2007. 7.경 ○○지점 회식이 있던 다음날 아침 진정인이 면담을 요청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으나 피진정인 1의 성희롱 관련 이야기를 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진정인이 피진정인 1 때문에 힘이 든다고 하여 향후 인사이동 될 가능성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보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4) 박○○(○○지점 직원)

2007. 8.경 인사이동이 있어 마련된 송별회식에서 진정인이 피진정인 1에게 지난 회식 때 차 안에서 룸을 잡고 벗고 뒹굴고 놀라고

했던 이야기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피진정인 1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진정인이 “그런 분이 운전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재차 반문하자 피진정인 1이 “그 자리에 없는 줄 알고 농담 삼아 한 이야기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2008. 1.경 점심식사를 하고 오던 길에 피진정인 1이 “정○○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며? △△지점에 같이 있고 방 구하면 둘이 같이 살겠네.”라고 말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으며, 이에 정○○에게 소문이 날지 모르니 주의하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5) 배○○(△△지점 직원)

2008. 8. 8. 출근길에 피진정인 1이 “정○○하고 김○○하고 같이 사는 거 아냐? 뭐 아는 거 없어?”라고 물어와 모른다고 말한 적이 있고, 이후 정○○에게 피진정인 1이 한 말을 전한 사실이 있다.

6) 이○○(본사 기획팀장)

본사 총무팀장으로부터 진정인을 기획팀으로 배치하면 어떠냐는 말을 듣고 회사가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하였다. 현재 진정인이 기획팀에서 맡고 있는 업무는 문서접수, 전표집계, 타부서 지원업무 등으로, 문서접수는 수시로 접수되는 것이라 소요시간을 정확히 말하기는 곤란하고 전표집계는 꼼꼼히 하려면 1~2시간 정도 소요된다. 타부서 지원업무로 현재까지 총 15회 정도 영업추진팀 일을 도운 적이 있는데 매 5~10분 정도 소요되는 간단한 일이었다. 기획팀장으로서 진정인에 대해 6개월 정도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회계 쪽의 일을 가르쳐서 맡길 생각을 가지고 있다.

7) 우○○(본사 기획팀원)

본인은 2007. 10. 입사하여 2008. 1. 중순 이후 기획팀에서 조직 및 규정 관리와 예산 업무를 하고 있다. 현재 진정인이 맡고 있는 업무 가운데 문서접수는 원래 본인이 하던 것으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문서를 담당자에게 지정하여 주는 간단한 일이다. 또한 전표집계는 각 팀에서 발생한 전표들을 취합하는 일로 하루 2~30분 정도면 처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진정인이 기획팀에 배치된 이후 진정인의 자리에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술

자리에서 들은 적이 있다.

8) 이○○(본사 총무팀장)

진정인의 경우 △△지점에 남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고 다른 지점에서도 받겠다고 하는 곳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업무가 많아지는 추세에 있던 기획팀이라면 진정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기획팀으로 배치한 것이다. 기획팀은 텔러 업무가 없는 부서라서 텔러 업무를 하던 진정인이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새로운 업무를 배워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성희롱예방교육은 각 부서 및 지점으로 공문과 자료를 배포한 후 직원들 가운데 강사를 선정하여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성희롱고충상담원이나 성희롱 예방관련규정 등은 현재 만들고 있는 중이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지방노동청 △△지청에서 조사한 진술조서 및 조사결과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3. 12. 15. ○○은행 입사 후 ○○지점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2007. 8. 1. △△지점을 거쳐 2008. 9. 26.자로 본사 기획팀에 발령받아 근무 중이다. 피진정인 1은 ○○지점 및 △△지점에서 대리로 근무하다가 2008. 10. 16. 퇴사하였다.

나. 2007. 7.경 같은 회사 ○○지점의 회식이 끝난 후 피진정인 1이 운전하는 지점차량에 동 지점 직원 이○○, 방○○, 박○○, 진

정인이 동승한 사실이 있다. 지점으로 가는 길에 방○○과 박○○를 먼저 내려준 후 진정인의 집으로 가던 중 피진정인 1은 유흥업소에서 남녀가 함께 노는 것과 관련된 성적 발언을 하였다.

다. 2008. 1.경 피진정인 1은 ○○지점 정○○이 △△지점으로 발령받아 지점 근처에 집을 얻으려는 것을 보고 진정인과 정○○이 살림을 차리려고 회사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옆에서 들은 ○○지점 사원 박○○는 정○○에게 이 같은 내용의 말을 전하였다.

라. 2008. 8. 정기인사 시 피진정인 1은 △△지점 근무를 발령받아 진정인과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같은 해 8. 8. 아침 출근길에 피진정인 1은 진정인과 정○○이 함께 출근하는 것을 보고 같이 있던 △△지점 사원 배○○에게 "혹시 쟤네 둘이 같이 사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본 사실이 있고, 위 배○○은 이러한 사실을 정○○에게 전하였다.

마. 진정인은 2008. 8. 12. △△지점장을 상대로 노동부에 직장 내 성희롱 진정을 제기하였다. 진정인의 사건을 접수받은 ○○지방노동청 △△지청은 조사결과 피진정인 1의 성희롱 관련 발언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며 같은 해 9. 22. '위반사항 없음'으로 내사종결하였다.

바. 2008. 9. 26.자로 본사 기획팀으로 발령받은 진정인의 자리에는 한동안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다. 진정인은 현재 기획팀에서 문서접수, 전표집계, 타부서 지원업무를 하고 있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시간은 하루 1~2시간 정도이다.

5. 판단

가. 업무 등 관련성 여부

진정의 원인이 된 행위 발생 당시 진정인과 피진정인 1은 ○○은

행 ○○지점 및 △△지점의 사원 및 대리로 근무하고 있었던바 양 당사자는 업무 상 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진정인 1의 성적 발언은 공식적 회식 직후의 귀가길 및 출근길 즉 통근 중에 발생하였는데,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의미에서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통근 중 발생한 재해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있는 것(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16161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통근 과정의 업무 관련성은 어렵지 않게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진정인 1의 성적 발언 발생장소의 업무 관련성과 관련하여, 노동부는 이 사건의 발생장소가 회식 후 귀가길 및 출근길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그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지만, 사업주의 지배·관리권 범위를 기준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노동부의 판단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우리 위원회의 판단기준이 동일하지는 않으며, 어느 한쪽의 판단이 다른 한쪽의 판단을 구속하는 것도 아니다.

나. 진정요지 '가'의 각하요건 해당 여부

이 사건 진정요지 '가'는 노동부에 진정된 내용과 동일하며, 그 가운데 2007. 7.경 귀가길 차 안에서의 발언은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각하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살피건대, 우선 노동부에 진정된 사건의 피진정인과 우리 위원회에 진정된 사건의 피진정인이 상이한바, 노동부에의 진정이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지점책임자의 책임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이라면 우리 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은 성희롱 당사자 및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이어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동일하다 해도 두 진정은 각기 독립된 진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에서 각하 사유를 규정하는 의미는 진정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기관에 의한 구제가 중복되는 것

을 방지할 목적으로 규정한 것인바, 위 규정은 피해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향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노동부가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진정인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도 동 조항을 적용하여 각하할 경우 진정인은 아무 곳에서도 구제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이는 법형식적 해석에 치우쳐 본래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2007. 7.경 피진정인 1의 귀가길 차 안에서의 발언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내용일 뿐 아니라 2008. 1.경 및 8.경의 동거 발언과 관련해 진정인이 느꼈을 성적 불쾌감을 유추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인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4호의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진정요지 '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각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 성적 언동 및 성적 굴욕감 여부

2007. 7.경 ○○은행 ○○지점의 회식이 끝난 후 진정인을 집에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피진정인 1이 한 발언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참고인 이○○, 정○○, 박○○의 진술 및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대화내용 녹취록에 근거할 때 사실로 인정되며, 당시 피진정인 1의 발언내용이 남성인 참고인 이○○이 듣기에도 민망한 정도였다면 미혼 여성인 진정인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기에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진정인이 회식 다음날 직속차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피진정인 때문에 힘들다고 상의한 점, 지속적으로 피진정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점 등도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의 발언에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받았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008. 1.경 및 같은 해 8. 8. 출근길에서의 동거 관련 발언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피진정인 1도 인정하고 있고, 참고인 진술 및 진

정인과 피진정인의 대화내용 녹취록 등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는바 사실로 판단된다. 미혼의 남녀를 상대로 동거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하는 것은 그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상대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줄만한 내용이라 할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처럼 이미 성희롱 가해혐의가 있는 상대로부터 동거 관련 발언을 들은 것이라면 그 불쾌감의 정도는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진정인으로 하여금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이었다고 판단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고용 상 불이익 여부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 대해 해고나 징계 등 구체적인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라는 점,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신입팀원에게는 업무파악기간을 두어 처음부터 일을 많이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고용 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이직을 권유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이 있고 진정인이 본사 기획팀에 배치된 이후 한동안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성희롱 진정을 이유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일부 고용 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진정인은 현재 하루 1~2시간 정도 소요되는 단순한 업무만을 맡고 있는바 진정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계획이나 업무분장계획, 또는 인사이동 계획 없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성희롱 진정을 이유로 한 고용 상 불이익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2가 성희롱 피해자인 진정인에게 고용 상 불이익을 주었다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정인에 대한 합리적 인력활용 계획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8.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별지] 관련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5.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4.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 장례식장 직원의 도우미에 대한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1118 장례식장 직원의 도우미에 대한 성희롱
【진 정 인】 사단법인 ○○
【피 해 자】 박○○
【피진정인】 1. 최○○
2. 문○○
3. 김○○
4. 도○○

【주 문】 1. 피진정인 도○○에게 피진정인 최○○, 문○○를 징계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도○○, 김○○, 최○○, 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3. 재단법인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가. 피해자는 2005. 5. 13.부터 2007. 11.초경까지 ○○도 ○○시 소

재 ○○병원 장례식장에서 도우미로 일하였는데, 피진정인 최○○은 처음에는 접견실에 들어와 “커피 한잔 타와.”라고 요구하며 바닥에 앉거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수차례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얹었고,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는 등 장난을 하였다. 그런데 갈수록 정도가 심해져서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살짝 건드리는 행동을 반복하였고,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밑에 발을 넣어 건드렸으며, 오래간만에 도우미 일을 하러 가면 피해자의 뒤에서 젖가슴을 만지며 “오래간만에 들어왔지.”라는 언동으로 수치심을 주었다.

나. 피진정인 문○○는 ○○병원 장례식장 근무 중 수차례 피해자의 등 뒤에서 브래지어 끈을 풀려고 하였으며, 피해자 등 도우미들에게 “나 좋다는 여자는 많아도 한번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네.”, “사귀는 여자는 많았어도 나는 아무 여자나 안 먹었다.”라는 언동으로 수치심을 주었다.

다. 피진정인 김○○과 피진정인 도○○는 각각 관리자와 회사 대표자임에도 성희롱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피진정인 최○○, 피진정인 문○○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도우미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바, 이에 대한 관리, 감독상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최○○(○○병원 장례식장 직원)

가) 상주 등이 도우미를 구해달라고 요구하면 본인과 피진정인 문○○가 피해자에게 연결해 주었고, 피해자가 성희롱 문제를 제기

한 이후 본인은 피해자 이외에 피해자와 같은 팀인 심○○, 김○○, 최○○에게도 도우미 일을 연결해 주지 않았다.

나) 간혹 도우미들의 어깨나 다리를 주물러 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성적 언동을 하지 않았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본인은 ○○병원 장례식장 팀장인 피진정인 김○○을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피진정인 김○○은 피해자가 본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며 "행동을 조심하고 도우미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라."라고 하였다.

2) 문○○(○○병원 장례식장 직원)

가) 2007. 6. 25. 본인은 피진정인 김○○의 요청으로 ○○시 소재의 '○○'이라는 찻집에서 피해자, 김○○, 최○○, 심○○를 만났는데, 피진정인 김○○은 본인에게 피해자가 피진정인 최○○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후 본인은 피해자 등을 ○○로 데리고 가서 장어를 사주었다.

나) 2007. 추석 무렵 피해자는 도우미 1인당 소개 시 1만원을 횡령하였고 명절 때 도우미들로부터 선물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횡령하였으며 직원에게 줄 축의금 일부를 받아 횡령한 사실이 있는데, 본인은 이를 알고 난 이후 피해자에게 도우미 일을 연결해 주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인권위에 진정한 이후에는 심○○ 등에게도 공동책임을 물어 일을 쉬라고 하였다.

다) 본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브래지어 끈을 푼 사실이 없다. 또한, 도우미들이 본인에게 "왜 혼자 살았느냐?"라고 물어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람 만나기 쉬우냐? 그러다 보니 혼자 산 것이다.", "○○에서 나 좋아하는 사람은 많았다. 그래도 내가 쉽게 접근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3) 김○○(○○병원 장례식장 팀장)

가) 본인은 접견실에서 피진정인 최○○, 피진정인 문○○가 도우미들에게 커피 한잔하자고 이야기한 것은 보았으나,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등을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나) 2007. 6. 25.경 ○○시 소재의 '○○'이라는 찻집에서 피해자는 본인에게 피진정인 최○○이 손버릇이 나쁘고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고 성희롱을 한다고 주장하였고, 처방약을 보여주며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하였다. 본인이 "그런 걸 못하게 왜 의사표시를 못 하느냐?", "왜 나한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자, 피해자가 "말하면 일을 못하게 할 것 같아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최○○에 대해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테니 일만 시켜 달라."라고 하였다.

다) 이후 본인은 피진정인 최○○, 피진정인 문○○에게 도우미들과 커피를 같이 마시거나 불편한 일들을 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준 사실이 있는데, 피진정인 최○○과 피진정인 문○○는 "그런 일이 없다.", "박○○가 엉뚱한 짓을 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오해받을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라) 2008. 10.경인가 11.경에 피해자가 ○○병원 장례식장 사장인 피진정인 도○○에게 전화하여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 도○○가 바빠서 시간을 못 내자 피해자는 ○○병원 간호부장 김○○을 만난 사실이 있다. 당시 김○○이 피해자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 같이 온 성명불상의 친구가 "일을 계속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여 김○○이 본인에게 "박○○에게 일을 주라."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다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 본인이 "집에 가서 생각해 보고 다시 연락을 해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후 연락이 없었다. 당일 본인은 피진정인 도○○에게 피해자의 성희롱 주장 건에 대해 보고하였고, 피진정인 도○○가 피진정인 최○○과 피진정인 문○○를 불러 확인하였으나 피진정인 최○○, 피진정인 문○○는 "그런 일이 없었다.", "황당하다."라고

하였으며, 피진정인 도○○는 피진정인 최○○, 피진정인 문○○에게 “앞으로 조심하라.”, “외부에서 부르는 사람을 아무나 불러서 문제를 일으키느냐? 앞으로 도우미를 부르지 마라.”라고 하였다.

마) 본인과 피진정인 최○○, 피진정인 문○○는 전문적인 강사 등으로부터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참고인

1) 공○○(○○경찰서 경사)

2007. 6. 25. 14:00경 피해자는 자신의 성희롱 사건을 상담하고자 동료 도우미들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는 본인에게 피진정인 최○○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동행한 사람들은 피진정인 최○○이 자신들의 뒤에서 어깨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고려할 때 개연성이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2) 조○○(전 ○○병원 장례식장 도우미)

가) 2007.초 봄경 피해자의 소개로 ○○병원 장례식장에서 약 5일간 도우미로 일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진정인 문○○가 접견실에서 본인 등 도우미들에게 “나 좋다는 여자는 많아도 한번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네.”, “사귀는 여자는 많았어도 나는 아무 여자나 안 먹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수치심을 느꼈다.

나) 피해자가 도우미 일을 그만둘 즈음에 피해자는 본인에게 진정요지와 같은 사실과 이로 인해 정신병원에 다녀온 사실 등을 울면서 이야기한 바 있다. 또한, 2008. 2. 5.경 피해자는 ○○광역시 ○○동 소재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본인과 조○○에게 피진정인 최○○, 피진정인 문○○가 피해자를 성희롱한 사실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3) 심○○(현 ○○병원 장례식장 도우미)

2005. 10.말경부터 2007. 10.말경까지 ○○병원 장례식장에 한 달에 3~6번 정도 도우미로 일한 사실이 있고, 본 진정사건이 제기된

이후 2008. 5.말경까지 쉬었으며, 2008. 6.초경부터 다시 도우미 일을 하고 있다. ○○병원 장례식장 도우미로 일하던 중 피진정인 최○○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번 친 사실을 목격한 바 있다.

4) 최○○(현 ○○병원 장례식장 도우미)

가) 3년 전부터 ○○병원 장례식장에 한 달에 2~3번 정도 도우미로 일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성희롱 문제제기를 한 이후 2007. 10.경부터 2008. 5.경까지 도우미 일을 못하다가 2008. 6.경부터 다시 도우미 일을 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최○○이 일 끝난 후 본인의 어깨 부분을 한 번 정도 두드리면서 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별다른 느낌은 없었다. 2007. 6. 25.경 피해자가 본인 등에게 성희롱 관련 상담을 하러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 심○○, 김○○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여 공○○ 경사를 면담한 사실이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 사단법인 ○○ 및 ○○경찰서 상담기록, ○○정신병원 등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최○○, 피진정인 문○○는 각각 2002. 5경, 2002. 11. 경부터 현재까지 ○○시 소재 ○○병원 장례식장에서 염습 등 장례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피진정인 김○○은 2002. 5.경부터 ○○병원 장례식장 팀장으로서 직원 채용과 관리, 서류정리 등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해자는 2005. 5. 13.부터 2007. 11.초경까지 피진정인 최○○, 피진정인 문○○의 소개로 ○○병원 장례식장에서 도우미 팀장으로 일하며 도우미 관리, 장례식장 내 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나. 2007. 6. 25. 피해자는 사단법인 ○○ 부설 가정폭력상담소를 방문하여 안○○ 소장과 면담한 사실이 있고, 2007. 11. 28. 위 상담소에서 작성한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장례식장 직원이 일을 준다는 빌미로 허벅지를 만지고 젖가슴을 아플 정도로 만지는 등 성희롱을 매달 6~7회 정도 하여 피해자는 이러한 행동을 멈춰 달라고 세 번이나 경고를 하였으나 가해자들은 멈추지 않았고, 이후 피진정인 최○○, 피진정인 문○○는 말끝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일없어."라고 하였으며, 간호부장이 피진정인 김○○을 불러 "왜 이렇게까지 왔느냐. 일을 시켜라."라고 했으나 피진정인 최○○, 피진정인 문○○는 "간호부장과 팀장이 일을 주라고 해도 내가 안주면 그만이다. 일은 내 손에서 주는 거다."라고 하여 피해자는 20일 동안 일을 받지 못했다고 피해자가 상담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08. 2. 4. ○○경찰서 공○○ 경사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7. 6. 25. 14:00경 ○○경찰서 민원실에서 민원인과 동료(성명불상) 3명이 ○○병원 장례식장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중 염사 최○○으로부터 업무와 관련(구체적으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일을 주지 않겠다는 등)하여 수차례의 성희롱과 성추행(등 뒤에서 가슴을 만지거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고 앉아 있는 자리 밑의 엉덩이 끝에 발을 넣어 들썩거리는 등)을 한 행위에 대하여 동료 3명이 동조를 하였으며, 당한 건과 관련 처벌하는 방법에 대해 민원상담을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8. 2. 5.경 피해자, 조○○, 김○○은 ○○광역시 ○○동 소재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만난 사실이 있다. 당시 대화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래서 앉았다가 가면. 이렇게 하고 간다고. 자꾸 이런다고."라고 하자 김○○은 "일어날 때는 이러고

가는 거야.", "그리고 앉을 때는 아이고. 이러면서 앉고. 근데 그게 엉큼한 게 그러는 게 아니고 언니한테 그러긴 했는데.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였으며, 조○○이 "최씨가 만지고 그랬다는 거"라고 하자 김○○이 "어.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를. 나는 그 아저씨가 이 언니한테 흑심이 있어서 그랬거나 뭐. 응. 저기 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우리와 같이 있을 때, 꼭 같이 있을 때 그랬어."라고 하였다.

마. 피해자는 2007. 6. 20.부터 2008. 2. 29.까지 ○○도 ○○시 소재의 ○○정신병원에서 7번의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2008. 2. 1. 발행된 동 병원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특정 불능, 중증 우울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견으로 "환자는 직장에서 오래 성추행을 당한 이후 두통, 소화불량, 우울감을 느껴 본원에서 초진 받았고, 이후 외래진료 받았으며 현재도 두통, 가슴에서 화, 열이 치밀고 답답한 증상, 소화불량, 우울감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향후 6개월 이상 정신과적 치료를 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08. 10. 17.부터 같은 달 31.까지 ○○도 ○○시 소재의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는데, 2008. 10. 24. 발행된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은 "두통, 오심"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견으로는 "상기 증상으로 본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분으로, 향후 7일 정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태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판단

가. 성희롱에 대한 판단 기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는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

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일반 여성의 합리적 관점에서 볼 때 성적 함의가 있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였는지에 근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업무 등 관련성 여부

피진정인 최○○, 피진정인 문○○는 피해자 등 도우미들의 업무 알선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고, 본 진정은 피진정인 최○○, 피진정인 문○○가 장례식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5호에 정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성적 언동 및 성적 굴욕감 여부

1) 피진정인 최○○, 피진정인 문○○는 피해자에 대한 성적 언동을 부인하나, 심○○는 피진정인 최○○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조○○은 피진정인 최○○과 피진정인 문○○의 진정요지와 같은 성적 언동을 피해자에게서 듣거나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사단법인 ○○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의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경찰서 공○○ 경사가 작성한 확인서, ○○정신병원 등의 소견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성희롱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한 것이 확인되는바, 피진정인 최○○, 피진정인 문○○는 피해자에 대해 진정사실과 같은 성적 언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여성에게 허벅지, 가슴, 엉덩이 등은 신체의 민감한 부분으로 원치 않는 접촉은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하고, 브래지어 같은 여성의 속옷 부위를 만질 경우에는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것 이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또한 "나 좋다는 여자는 많아도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네.", "사귀는 여자는 많았어도 나는 아무 여자나 안 먹었다."라는 표현은 여성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저급한 표현으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합리적인 여성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으로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하였고 이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하여 수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는바, 피진정인 최○○, 피진정인 문○○의 성적 언동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가 규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가해자에 대한 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여부

피해자는 피진정인 김○○에게 정신병원 처방약을 보이며 성추행 후유증을 호소했으나 피진정인 김○○은 피진정인 도○○에게 즉시 보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진정인 도○○는 피진정인 김○○으로부터 추후 보고를 받고도 피진정인 최○○, 피진정인 문○○의 진술만을 믿고 참고인 면담 등 실질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진정인 최○○, 피진정인 문○○에게 도우미를 부르지 말라고 하여 피해자 등이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함으로 인해 도우미 일을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성희롱 예방조치 준수 여부

피진정인 도○○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예방교육을 하든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등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해야 하는데 피진정인 김○○의 진술과 같이 성희롱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피진정인 최○○, 피진정인 문○○가 피해자를 성희롱하여 피해자 등에게 피해를 주

었는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법률구조의 필요성 여부

성희롱 발생 이후 피해자의 후유증이 심각하여 약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피해 사실이 상당하고,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도우미 일을 못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해구제를 위해 재단법인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한다.

6. 결론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2항, 제47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29.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별지> 관련 규정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27. 도 체육회 상사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8진차1020 성희롱
【진 정 인】 1. 공○○
2. 안○○
3. 홍○○
【피진정인】 홍□□

【주 문】 ○○도 체육회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하고 진정인들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하여 인사조치할 것,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들과 피진정인은 ○○도 체육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은 총무부장으로 진정인들보다 상급자의 위치에 있다. 피진정인은 2007.부터 수차례에 걸쳐 회식에서 진정인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등과 허리를 만지는 등의 언동으로 진정인들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공○○

2007. 5. 18.경 ○○도 체육회 직원 및 ○○도청 직원들과 저녁을 먹고 노래방을 갔는데 도우미를 부른 것에 불쾌함을 느낀 진정인이 잠시 밖에 나갔다 들어오자 피진정인이 노래방 입구에서 진정인을 맞이하며 허리와 엉덩이 부분에 손을 올렸고, 회식이 끝난 후 진정인을 바래다주겠다며 버스정류장에서 진정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진정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포함한 ○○도 체육회 직원들은 2007. 5.경 전국소년체전이 개최된 ××시로 출장을 가서 같은 달 24. 저녁 직원들과 식사를 한 후 총무과 직원들끼리 술을 한잔 더 하고 노래방에 갔는데 남자 직원인 김○○와 정○○가 보이지 않았고 피진정인과 술을 마시다 기억을 잃었으며 다음 날 일어나보니 숙소였다.

2007. 12. 18.경 총무과 직원과 여직원들의 회식이 있었는데 피진정인은 노래방에서 진정인을 껴안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와 등을 만지고 노래방에서 나오는 길에 진정인에게 입을 맞추었다. 노래방에서 피진정인의 행위를 제지해 달라고 남자직원 송○○에게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계속되어 진정인 안○○와 화장실에서 30여분 동안 피진정인을 피해 있었다.

2008. 2. 1.경 직원 회식에서 진정인이 화장실을 다녀 온 사이 일행이 자리를 파하여 혼자 사무실 쪽으로 걸어오다가 피진정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호프집에 들어가 일행에게 연락 해 보자며 진정인의 허리를 손으로 감쌌고, 호프집에서도 진정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피진정인의 연락을 받고 온 참고인 정○○가 진정인에게 “네가 집에 가야 피진정인이 귀가하고 회식이 종료된다.”라고 하여 가방도 챙기지 못한 채 집에 가게 되었다.

피진정인은 2007. 이후부터 회식 때마다 항상 진정인의 옆자리에 앉았고 화장실까지 따라 왔으며 먼저 귀가하겠다고 하면 다른 직원

들에게 화를 내고, 노래방에 가면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의 행위로 성적 모멸감과 혐오감을 주었다.

2) 안○○

2007. 12. 18.경 총무과 직원과 여직원들의 회식이 있었는데 노래방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블루스를 추자며 억지로 껴안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와 등을 만지는 등의 행위로 성적 굴욕감을 주었다.

3) 홍○○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직접적으로 성적 언동을 한 적은 없으나 진정인 공○○과 안○○로부터 피진정인의 행위를 전해 듣고 성적 굴욕감을 느꼈으며, 회식을 하게 되면 성희롱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함께 진정하였다.

2007. 12. 18.경 총무과 직원과 여직원들의 회식이 있었는데, 평소 소주 2잔이 주량인 진정인에게 너무나 많은 술을 권하여 7잔 정도를 마신 후 정신을 잃었다. 남자 직원에게 업힌 기억이 나며 정신을 차려보니 노래방이었는데 피진정인이 진정인 안○○ 또는 공○○ 중 한 명과 블루스를 추고 있었고, 이후 피진정인이 술에 취한 진정인 안○○에게 양주와 맥주를 섞어 주며 마시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행위를 한 바 없는데, 2007. 5. 회식 시에는 ○○도청 간부들과 함께 있다가 헤어져 진정인이 주장하는 행위를 할 리 없고, 2007. 5. ××의 노래방에서는 남자직원들과 함께 있다 숙소로 귀가하였으며, 2007. 12.과 2008. 2.에도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

3. 인정사실

진정인들 및 피진정인의 진술, ○○도 체육회에 근무하는 참고인

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도 체육회는 2부 4과로 총무부 산하에 총무과와 관리과, 운영부 산하에 운영과와 훈련과가 있으며, 전체 직원은 18명이고 그 중 여직원은 세 명으로 본 사건 진정인들이다.

나. 2007. 5. 18.경 ○○도 체육회 직원 및 도청 직원들은 도민체전과 관련하여 □□시 소재 식당에서 회식을 한 후 식당 맞은편에 있는 노래방에 갔다.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 것에 화가 난 진정인 공○○이 잠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노래방 입구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 공○○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진정인 공○○이 이를 뿌리쳤으며, 노래방에서 나와 피진정인이 진정인 공○○의 생일 축하 자리를 갖자고 하여 총무과 직원들끼리 호프집에 갔다. 회식이 끝난 후 피진정인은 버스정류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진정인 공○○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다. 2007. 5. 24.경 진정인 공○○과 피진정인을 포함한 ○○도 체육회 직원들은 전국소년체전이 열린 ××로 출장을 가서 저녁식사를 함께 하였고, 정○○, 김△△, 진정인 공○○, 피진정인 등 총무과 직원 4명은 따로 술집에 가서 폭탄주를 마셨다. 이후 노래방에 갔는데 김△△이 술에 취했다며 숙소로 들어가겠다고 하자 피진정인은 정○○에게도 먼저 들어가라고 하였고 이후 술에 취한 진정인 공○○은 피진정인과 새벽에 숙소로 귀가하였다.

라. 2007. 12. 18.경 여직원의 고충 상담을 목적으로 진정인들 및 남자직원 정○○, 송○○과 피진정인 등 총무과 직원들은 □□시 소재 횟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였는데 당시 피진정인은 남자 직원들에게 "여직원들에게 술을 먹여라."라고 지시했다. 피진정인은 노래방에서 진정인 공○○ 및 안○○와 밀착한 상태로 블루스를 추고 몸 뒤쪽을 쓸거나 만졌으며 이에 진정인 공○○이 참고인 송○○에게 피진정인의 행동을 말려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피진정인의 행위가 지속되어 진정인 공○○과 안○○는 피진정인을 피해 화장실에서 30여 분간 머물렀다.

마. 2008. 2. 1.경 도비정산 감사가 끝난 기념으로 □□시 소재 식당에서 회식을 하였는데 진정인 공○○이 술집에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피진정인은 진정인 공○○이 집에 갔다고 생각하여 진정인 공○○을 귀가시켰다며 정○○를 질타하였다. 진정인 공○○은 직원들이 자신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챙겨 술집에서 나간 것을 알고 체육회관 쪽으로 걸어오다 피진정인을 만났는데 피진정인은 진정인 공○○을 감싸며 호프집에 들어가 정○○에게 연락하였고, 피진정인의 연락을 받고 온 정○○는 진정인 공○○에게 "네가 집에 들어가야 회식이 종료된다."라고 하여 진정인 공○○은 가방을 챙기지 못한 채 귀가하였다.

4. 판단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은 부서 등의 회식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회식 모임에서 부하 여직원을 껴안고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였다면 합리적인 여성으로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특히 피진정인의 진정인 공○○에 대한 성적 행위는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상습적이고 그 수준이 지나쳐 직원들 사이에서는 피진정인의 진정인 공○○에 대한 행위가 공공연한 사실로 회자되는 상황이다.

또한 피진정인은 회식 시 남성 직원들을 시켜서 여직원들에게 술을 먹이라고 하거나 진정인 공○○과 둘만 남도록 다른 직원을 먼저 들여보냈는바 이는 부서 책임자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권력 관계상 낮은 지위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 언동이 용이하도록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도 체육회 총무부장인 피진정인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여직원들이 성차별과 성적 편견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장 내 여직원들에게 성적 언동을 하고 남성 직원들에게 이를 방조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였다. 피진정인의 행위는 성희롱이 간부들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그 상태가 심각하여도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거나 문제제기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직장 내에서 간부들에 대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예방책임을 인지토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한다.

따라서 2007. 12. 18.경 회식자리에서의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한 성희롱에 해당하며 그 외 피진정인의 부적절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인정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한 징계와 아울러 진정인들이 피진정인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고 위와 같은 성희롱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의 행위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 제5호가 규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29.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28. 새마을금고 상사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8진차1208 성희롱
【진 정 인】 장○○
【피진정인】 우○○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2. ○○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새마을금고연합회장에게 그 이행 여부에 대하여 점검할 것을 각각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동 새마을금고의 부장인 피진정인은 동 새마을금고 직원인 진정인에게 2008. 3.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일방적으로 구애하는 의사표현을 하거나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노골적으로 묻는 등의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었다. 진정

인이 그러한 언동에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진정인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진정인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고, 2008. 11. 11. 진정인은 결국 퇴사하게 되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피진정인은 2008. 3. 7. 직원단합대회 숙소에서 본인이 잠든 방으로 들어와 본인을 끌어안으려 하였고, 같은 해 4. 15.에는 업무시간 후 회식이 있는 것처럼 유인하여 본인을 ○○ 근교 △△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게 한 후 모텔에서 쉬었다 가자고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본인의 집 근처인 ○○역 주변에서 자주 술자리를 만들어 늦은 시각까지 집에 못 가게 하였으며, 같은 해 4. 28. 술자리에서 본인이 모친에게 데리러 와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잠이 들었는데 피진정인이 본인의 전화기 수신음을 진동으로 바꾸어 자신을 찾는 모친의 전화를 받지 못하게 했고, 잠에서 깬 본인에게 "만지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라고 말하였다.

2) 2008. 6. 8. 피진정인은 친지 결혼식에 참석하려는 본인을 자신의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동행하였는데, 차 안에서 잠이 든 본인의 다리와 가슴을 손으로 더듬는 행위를 하였다. 같은 해 6. 17. 피진정인은 술자리에서 본인에게 "직원이 아닌 여자로 보았다."라고 말하고, 본인이 귀가한 직후에도 "너와 살 수 있다면 다 버릴 수 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및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진정인은 일자불상 경 본인의 다이어리 내용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열어보았고, 2008. 7. 9.에는 본인의 남자친구들 이름을 거론하며 이들과 잠자리를 가졌는지 등의 사생활을 노골적으로 캐물었다.

3) 평소에도 피진정인은 "내가 벗으면 넘어갈 정도로 멋있다.", "내 물건은 꺼지지 않는 촛불이다.", "술집여자는 술도 잘 따르고

말도 잘 듣는데 우리 여직원은 안 그렇다."는 등의 발언을 상습적으로 하였다.

4) 피진정인은 2008. 7. 이후 본인의 주요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넘기고, 지속적인 인격적 무시와 따돌림, 차별대우 및 폭언·욕설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어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

나. 피진정인

1) 2008. 3. 7. 단합대회 시 밤에 숙소 거실에서 술을 마신 후 진정인 및 다른 여성 직원 1명과 격의 없는 사이라서 자연스럽게 같은 방에 들어가 잤지만 진정인에게 신체접촉을 한 일은 없다. 같은 해 4. 15. 진정인과 △△에서 저녁식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해 진정인도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 날 본인만 약간의 술을 마셨을 뿐 진정인에게 술을 먹이거나 모텔에 가자고 말한 사실이 없다. ○○역 주변 술자리는 진정인이 먼저 소개시켜 준 것이며 술자리는 일찍 끝나는 편이었고 진정인을 강압적으로 붙잡아 두지는 않았다. 진정인의 모친이 술자리로 찾아온다고 하여 기다린 일이 있지만 진정인 휴대전화의 수신음을 바꾸거나 진정인을 만지고 싶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2) 2008. 6. 8. 진정인을 데리고 ○○에 다녀왔는데, 이는 진정인이 흔쾌히 받아들인 일이었고 차 안에서 진정인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한 바 없다. 진정인과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하면서 친하게 지냈을 뿐 진정인을 이성으로 여겨 접근하거나 연애 감정을 표현한 메시지를 보낸 일이 없다. 진정인의 휴대전화나 다이어리를 일부러 들춰본 일은 없고 다만 우연히 진정인의 다이어리를 주워 주다가 그 내용을 보게 된 것이다.

3) 진정인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보기는 했으나 남자친구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같이 잤는지를 묻지는 않았다. 평소 직원들과 절친하여 허물없이 농담을 주고받곤 했지만 진정인이나 다른 직원이 듣기에 민망한 성적 발언은 한 일이 없다.

4) 진정인은 2008. 7. 업무분장이 조정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업무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진정인에게 심한 환멸감을 느꼈지만 일부러 진정인을 괴롭힌 일은 없다. 그러나 진정인은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체육대회에 무단 불참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계속하다가 결국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5. 8. ○○동 새마을금고에 입사하였고, 피진정인은 같은 해 4.부터 동 새마을금고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금고의 주요 의사결정권 및 인사권은 이사장과 이사회에 있으나 금고의 실무적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피진정인이 총괄하였다. 당 금고에는 피진정인 이하 대리 1명, 계장 1명 및 평직원 4명이 근무하였으며, 진정인은 퇴사 전까지 계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나. 2008. 3. 7. 진정인, 피진정인과 남성 직원 및 여성 직원 각 1명 등 총 4명이 ○○군 소재 콘도에서 직원단합대회를 가졌으며, 숙소에는 거실과 방 2개가 있었다. 당일 밤 참석자들은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진정인 외 남성 직원이 한 쪽 방에서 먼저 잠이 들었고 나머지 3명은 더 늦은 시각에 취침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다른 여성 직원이 자는 방에 있었던 사실이 있다.

다. 2008. 4. 15. 피진정인과 진정인은 퇴근 후 진정인의 차를 이용하여 △△시 소재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였으며, 피진정인은 다시 진정인의 집 근처까지 동승한 후 진정인과 헤어졌다. 진정인이 당일 작성한 다이어리의 내용에는 피진정인을 “변태”라고 지칭하고 음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하여 돌아왔다는 등의 당시 상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비롯한 직원들과 자주 술자리를 가졌으며, 특히 2008. 상반기에는 진정인의 집 근처인 ○○역 근처에서 여러 차례 술자리가 있었다. 참고인 이○○, 이△△, 유○○, 김○○ 등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먼저 귀가하려 하면 화를 내며 못 가게 하였다고 하고, 이 중 이○○, 김○○은 일자불상 경 술자리에 동석하였다가 피진정인의 신체접촉이나 욕설로 인해 심한 불쾌감을 느낀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같은 해 4. 28. 진정인은 술자리에서 모친에게 데리러 와 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진정인의 모친이 술자리에 찾아간 일이 있다.

마. 2008. 6. 8.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친지의 결혼식에 참석하려는 것을 알고 진정인을 데려다 주겠다고 제의하여 진정인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시 소재 예식장에 다녀온 일이 있다.

바. 진정인의 모친은 2008. 6. 17. 진정인이 귀가한 직후 피진정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진정인이 이를 받지 않자 "너와 살 수 있다면 다 버릴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 및 음성메시지가 왔다고 진술하였고, 참고인 이○○, 박○○은 같은 메시지 내용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유○○, 이△△ 등도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당초 그러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부인하다가 이후에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이성으로서의 연애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사. 일자불상 경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다이어리에 적혀 있는 내용을 한 차례 이상 확인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바닥에 떨어진 다이어리를 주워 주다가 우연히 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참고인들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다이어리를 통해 알게 된 남자친구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같이 잤는지를 묻거나 "이 남자 저 남자와 만나고 다닌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아. 2008. 7. 금고 내 업무분장 사항이 변경된 데 대해 진정인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2008. 7. 9.경 두 사람이 회의실에서 다툰 일이 있다. 또한 진정인이 모친이나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참고인 이○○, 이△△, 유○○ 등의 진술에 따르면 2008. 7. 이후 진정인은 직장생활을 힘들어하고 부쩍 초췌해 보이거나 예전과 다르게 침울한 모습을 보였으며, 2008. 10. 이후에는 “아침에 눈 뜨기 싫다.”, “그만두고 싶다.”, “죽고 싶다.”는 등의 심경을 자주 표현하였다.

자. 2008. 11. 4.부터 같은 달 7.까지 피진정인은 한 차례 이상 진정인과 사무실 내에서 언성을 높이며 다투었으며 그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욕설을 한 일이 있다. 진정인은 체육대회 불참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지시받은 직후인 같은 달 11. 퇴사하였다.

차. ○○동 새마을금고는 2007.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감사에서 상급자의 직원 성추행 문제가 지적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 성희롱예방교육 등의 재발방지대책은 시행된 사실이 없다. 참고인들은 피진정인이 평소에도 직장 내에서 여성이 듣기에는 민망한 성적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업무 등 관련성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직장 상사로서 업무 상 상하관계에 있었으며, 비록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진정인과의 식사 및 술자리는 직장 내 관계에 비추어 진정인이 그 참석 여부를 임의로 결정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었고, 대부분 업무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성적 언동의 존재 및 성적 굴욕감의 발생 여부

인정사실과 같은 피진정인의 언동으로 인해 진정인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외에도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피진정인의 언동을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먼저 2008. 3. 7. 직원단합대회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최초 진정인과 같은 방에서 함께 잤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에는 장난을 치기 위해 방에 들어갔다고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남성 직원이 자고 있는 방이 아닌 여성 직원들만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함께 누운 행동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진정인이 잠든 진정인을 끌어안으려고 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잠든 진정인을 끌어안으려고 시도한 것은 단순한 성희롱을 넘어 성추행의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서 진정인에게 당혹감과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다.

또한 2008. 6. 17. 새벽 시간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성으로서의 연애 감정을 표현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는 진정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당초 그러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부인하다가 이후에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그 진술에 구체성과 신빙성이 없다. 이에 비추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밝히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진정인의 직장 상사로서 해서는 안 될 매우 부적절한 언동이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다이어리에 적혀 있는 사적인 내용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단지 바닥에 떨어진 다이어리를 주워 주다가 우연히 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짧은 순간에 진정인 남자친구의 이름 및 함께 있었던 일에 대해 파악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참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에도 진정인의 다이어리를 몰래 들춰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 진정인과 남자친구의 관계를 노골적으로 묻는 행위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진정인의 사적 영역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로서 이로 인해 진정인이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가졌으리라는 점 또한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진정인이 직장 주변이 아닌 진정인의 집 근처에서 자주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나, 업무시간 후 진정인과 저녁식사를 명목으로 ○○ 교외로 나간 뒤 다시 진정인의 집 근처까지 따라온 일, 휴일에 진정인의 개인적 용무를 위하여 ○○에서 ○○까지 동행하여 다녀온 일 등도 직장 상사와 직원 간의 관계에서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그 상황 자체로만 보아도 성적 언동이 존재했을 소지가 크다. 피진정인은 진정인과의 격의 없는 사이에서 있었던 일로서 진정인이 스스로 원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진정인에게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접근한 일이 없다는 피진정인의 주장과 모순되며 직장 내 상하관계에 있는 진정인으로서는 원치 않아도 거부의 의사표현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더욱이 진정인은 술자리를 모면하기 위해 모친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다이어리에 간접적이나마 피진정인과 있었던 상황을 기록한 점에 미루어 보더라도 당시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이 있었거나 충분히 예견되었고 이에 진정인이 적지 않은 거부감과 혐오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진정인의 주장이나 참고인 진술 등에서 나타나는 사무실 내에서의 피진정인의 성적 발언 또한 여성 직원들이 듣기에는 성적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동 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되기 전에도 성추행 문제가 발생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방지대책의 마련이나 성희롱예방교육이 전혀 시행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진정인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직장 내 성희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에서 '직원들과의 친밀한 인화관계'를 위한 것이라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자신의 성적 언동을 은폐 또는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언동에 대해 진정인이 거부감을 표출하자 2008. 7.경부터 피진정인과의 직장 내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진정인이 주위 사람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는바 피진정인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진정인에게 적대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이로 인해 진정인은 결국 퇴사에 이

르는 고용 상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5호가 규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3.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29. 관람시설 운영회사 상사의 직원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8진차1343 직장 상사의 직원 성희롱
【진 정 인】 박○○
【피 해 자】 손○○
【피진정인】 서○○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지급할 것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2. 주식회사 ○○○○○ 사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부장인 피진정인은 안내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의 여러 신체부위를 만지고 손바닥을 긁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여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었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

○○○○○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피해자를 비롯한 여직원들이 피진정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에 2008. 9.초 경 사장을 면담한 적이 있지만 사장은 직원들 앞에서 손바닥을 긁는 것은 성희롱이 아니라는 발언을 하는 등 피진정인을 비호하였다. 결국 직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진정을 제기하게 되었다. 그러자 회사 측은 노동조합이 사건을 조장하였다고 하여 각종 고용 상 불이익을 주었고 결국 2009. 3. 진정인 등 직원 8명이 직장을 그만두기에 이르렀다.

나. 피해자

1) 2007. 5.부터 2008. 9.까지 ○○○○○의 관람시설에서 안내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진정인이 수시로 다가와 말을 걸면서 손과 팔, 어깨를 주무르곤 하였고 손바닥을 긁는 행위를 여러 차례 하였다. 한번은 피진정인이 사장과 함께 피해자 앞을 지나갔는데, 피해자가 손을 뒤로 감췄음에도 씩 웃으며 손바닥을 긁더니 “잘하고 있어.”라고 속삭였고 귀를 만지면서 몸을 쓸어내렸다. 더욱이 손바닥을 긁는 행위가 “같이 자자.”는 의미임을 뒤늦게 알고 몹시 치욕스러웠다. 또 직원들에게 복장 교육을 한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지며 “여자는 치마와 하이힐을 신어야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 예뻐 보인다.”라고 말하였다. 피진정인의 언동에 표정과 몸짓으로 거부감을 보이면 몹시 언짢아하면서 인격 비하적 발언을 하였다.

2) 2008. 9. 2.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총무과로 전보 조치하였다. 피진정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퇴사하였다가 다른 보직을 주겠다는 총무과장의 설득으로 복직였지만 피해자는 다시 총무과로 발령 받았다. 피진정인과 도저히 함께 근무할 수 없어 같은 해 12. 20. 직장을 그만두었다.

3) 다른 여성 직원들도 피진정인의 성희롱과 폭언에 시달린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회사 내에서 성희롱예방교육은 전혀 실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사장은 직원들 앞에서 "군대 시절에도 상관이 악수하면서 손바닥을 긁는 경우가 있었지만 누구도 반감을 갖지 않았다... 그런 행동이 성희롱이면 여직원이 내게 술 권하는 행동도 성희롱이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나온 친근감의 표현으로 이해해 달라... 동생 같고 딸 같아서 한 행동이다."라며 피진정인을 두둔한 일이 있다.

다. 피진정인

1) 피해자는 현장 안내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8. 9. 총무과로 전보되자 곧바로 직장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그 때까지 피진정인은 피해자와 대면하여 근무한 기간은 매우 짧았고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관심도 없었다. ○○○○○ 현장에 나가더라도 여직원의 손바닥을 긁고 몸을 만지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인격 비하적 발언도 하지 않았다. 또 직원들에게 복장이 단정해야 한다고 교육하기는 했지만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지거나 가리킨 적이 없다.

2) 2008. 9. 2. 행정직원의 퇴사로 인해 피해자를 전보시켰으나 사무직으로 일할 능력이 없으니 계속 안내직원으로 근무하겠다고 불만을 표시하였다. 이에 피해자를 누차 설득해 보았지만 곧 직장을 그만두었다. 피해자가 퇴사 후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을 총무과장이 알고 복직하게 했으나 피진정인은 그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복직 후에도 피해자와 업무 이외의 개인적 접촉은 일체 없었으며, 같은 해 12. 20. 피해자는 학업을 명목으로 퇴사했다.

라. 참고인

1) 이○○(현 ○○○○○ 총무과장)

피진정인이 피해자나 다른 여직원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은 없으며, 피해자를 총무과로 전보시킨 것은 직장의 업무적 필요에 의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 행사이다. 피해자가 불만

을 갖고 퇴사했으나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처지를 감안해 피해자에게 복직을 제의하여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였으며, 피해자가 다시 퇴사할 때까지도 피진정인과 별다른 일은 없었다.

2) 고○○(전 ○○○○○ 직원)

피해자와 함께 안내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짐짓 친근한 태도를 보이며 다가가 어깨와 얼굴을 어루만지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의 종아리를 쓰다듬으며 "여자는 치마에 스타킹과 구두를 신어야 예뻐 보인다."는 말을 했으며, 또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귀를 만지는 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 사장은 직원들에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친근감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2007.에는 피진정인이 회사 간부의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다며 직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았고 이로 인해 해당 간부가 해직되었다. 그러나 회사에서 성희롱예방교육은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3) 박○○(전 ○○○○○ 직원)

○○○○○에서 운영하는 매점의 판매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얘기를 걸면서 슬며시 어깨에 손을 올리곤 하여 그 때마다 "아이, 왜 그러세요?"라고 하며 피진정인의 손길을 피한 일이 있다.

4) 박△△, 김○○(전 ○○○○○ 직원)

○○○○○ 총무과에서 근무하였으며 피진정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외모가 못 생겼다고 하여 매장으로 내보내어 판매 업무를 시키거나 "씨발, 미실이 같은 게..."와 같은 인격 비하적 발언을 일상적으로 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끝에 직장을 그만두었다.

3.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주식회사 ○○○○○의 노동조합에서 위원장으로 있었으며,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서 2007. 5. 2.부터 2008. 12. 20.까지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진정인은 회사 운영의 실무를 총괄하는 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피진정인의 상급자로는 사장과 이사가 각 1명 있으며, 회사는 ○○○○회의 산하 기업이다. 근무지는 총무과 등 사무실과 관람시설로 나뉜다.

나. 피해자가 안내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팔과 어깨, 얼굴, 종아리를 만지고 손바닥을 긁는 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참고인 고○○, 박○○, 박△△, 김○○은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고, 다른 직원들도 유사한 일을 당한 적이 있으며, 피진정인이 직원에 대해 모욕적 언동도 자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2008. 9. 2. 피해자는 총무과로 전보 조치된 것에 반발하여 같은 달 6.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다른 보직을 주겠다는 총무과장의 제의로 같은 달 26. 복직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다시 총무과에서 근무하였고, 같은 해 12. 20. 퇴사하였다.

라. 2008. 12. 8. 진정인과 피해자는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성희롱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다.

마. ○○○○○에서는 2007. 회사 간부가 직원 성희롱을 사유로 징계 해직된 일이 있으나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실시된 바 없다.

4. 판단

가. 업무 등 관련성 여부

피해자와 피진정인은 직장 내 상하관계에 있었으며, 이 사건 진정의 내용과 같은 피진정인의 언동은 근무지 내에서 근무시간 중 업무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던 것이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나. 성적 언동의 존재 여부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팔과 어깨, 얼굴, 종아리를 만지고 손바닥을 긁는 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피진정인은 그러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고○○, 박○○, 박△△, 김○○ 등 참고인들의 진술과 녹취파일 등 증거자료에 따르면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고, 다른 직원들도 유사한 일을 당한 적이 있으며, 피진정인이 직원에 대해 모욕적 언동도 자주 하였다고 하는 점, 사장이 손바닥을 긁는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변호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진정인과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피진정인의 언동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성희롱 해당 여부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뿐 아니라 당사자의 연령 및 당사자 간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굴욕감에까지 이르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피진정인은 그 직책과 경력, 연령 등으로 볼 때 직장 내에서 주요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바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적 대면을 명목으로 피해자의 여러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으며,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점, 상대방의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긁는 행위는 비공식적으로나마 성관계의 제의를 의미한다고 널리 인식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함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사장은 피진정인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상급자의 신체접촉 행위를 가족적 분위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성희롱에 대한 그릇된 시각을 보여주었다. 또한 사업장에서 성희롱이 문제가 된 전례가 있음에도 그와 관련한 재발방지조치의 시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직접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직원들의 외모와 인격을 비하하는 피진정인의 언동 또한 빈번하게 있었던 점에서 성희롱의 예방과 보호가 적절하게 이루어

지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직장 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피진정인의 언동으로 인해 이미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있었음에도 직장으로부터 성희롱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피진정인과 같은 사무실로 전보되는 등 근무환경이 더욱 악화된 결과 퇴사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의 언동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5호가 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1.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문경란 위 원 황덕남 위 원 조 국

30. 설계사무소 대표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9진차38 설계사무소 대표의 직원 성희롱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이○○

【주 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향후 직장 내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사무소의 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08. 1. 28. 같은 직장의 소장인 피진정인이 업무 상 술자리 후 진정인을 노래주점과 룸살롱에 데리고 가서 어깨와 손을 어루만지고 뒤에서 끌어안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해 진정인은 큰 충격을 받았으나 피진정인의 사과를 일단 수용하였다. 하지만 같은 해 11. 20. 술자리에서 피진정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면서 진정인에게 심한 성적 모욕을 주었고 뒤이어 진정인에게 해고를 통보하여 직장을 그만두게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2008. 1. 28. 진정인은 피진정인 및 업무 관계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자정 무렵 피진정인을 집에 바래다주고자 동행하던 중 피진정인의 강권으로 마지못해 노래주점에 갔는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어깨를 감싸 안고 손을 잡아 자신의 볼에 비비는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룸살롱으로 데리고 간 직후 진정인의 몸을 뒤에서 끌어안고 들어 올리며 좌우로 흔드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손을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다. 이로 인해 진정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자리를 뛰쳐나왔고 다음날부터 약 2주간 출근하지 못하였다.

2) 2008. 1. 30. 및 2. 1. 지금의 배우자인 남자친구와 함께 피진정인을 만나 공개 사과와 각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술에 취해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도 각서 작성은 거부하였다. 결국 양측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용서를 빌고 직원들 앞에서 공개 사과하며 진정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불이익이 없을 것을 약속함으로써 더 이상 사건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주요한 업무를 맡기지 않거나 이전에는 참석했던 업무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는 등 직장 안에서 의도적으로 진정인을 소외시키려 하였다.

3) 2008. 11. 20. 술자리에서 피진정인은 “앞으로 잘해보자.”라며 호의적으로 얘기하다가 점차 지난 일을 들춰내면서 “내가 무릎까지 꿇고 빈 것은 지나쳤다. 그 쪽도 내게 빌었어야 하지 않았느냐? 나는 구설수에 오르기 싫어 빌었을 뿐이다.”, “그 날 내가 잘못한 거냐? 네가 날 꼬드기려고 거기까지 쫓아간 것 아니냐?”, “막말로 내가 널 따먹었냐? 내가 18살 이상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등 심한 모욕적 발언을 하였다.

4) 2008. 12. 5. 이○○ 실장을 통해 2009. 2.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2009. 1. 6.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09. 5.까지 급여는 지급할테니 2009. 2.까지만 나오라고 직접 이야기하였다. 진정인이 해고의 이유를 묻자 피진정인은 별다른 해명을 못하다가 "무섭다. 그럼 나오고 싶을 때까지 나오라."라고 하였다. 진정인은 같은 해 1. 10. 직장을 그만두었다.

나. 피진정인

1) 2008. 1. 28. 업무 상 술자리 후 술에 취한 상태여서 어떻게 노래주점과 룸살롱에 가게 됐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거기서 진정인과 어깨동무를 하며 노래를 불렀던 일 등만 언뜻 생각나는데 그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언짢은 일이 있었던 것 같다.

2) 위의 일 직후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그의 남자친구를 만난 자리에서 잘못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각서를 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대신 진정인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으며, 직원들 앞에서도 자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이후 진정인에게 업무 상 불이익을 준 적은 없고, 다만 진정인이 업무적으로 미숙한데도 배우려는 열의가 부족하여 회의 참석이나 업무 부여에 차등을 두었을 뿐이다. 2008. 9.경 진정인이 사고로 1주일간 결근하고도 이를 피진정인에게 알리지 않아 서운한 감정이 들었던 일이 있다.

3) 2008. 11. 20. 술자리에서 이○○ 실장 등이 진정인과의 껄끄러운 감정을 풀 것을 간청하였고, 진정인도 잘못했다고 하였다. 이에 그간 소장의 위신을 제대로 세워주지 못한 데 대하여 훈계를 한 후 앞으로 잘해보자며 진정인과 직원들을 격려하였고 당시 분위기는 매우 우호적이고 화기애애하였다. 술에 취하여 진정인에게 직설적이고 거친 표현을 썼던 것 같으나 진정인을 모욕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

4) 2008. 12.경기침체로 업무량이 줄어드는 등 사무소의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 실장이 진정인을 포함한 신입직원 3명에게 일단 직장을 쉬는 것이 어떤지 물어보았고, 2009. 1. 5. 피진정인이 직접 진정인에게 근로계약이 끝나는 5월까지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할테니 먼저 결혼준비를 할 것을 권유한 일이 있다. 그러나 진정인은 이는 부당해고라며 반발하였고 2008. 11. 20.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거론하면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항변하였다. 그러한 진정인의 문제제기가 다분히 의도적임을 느껴 진정인에게 "무섭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계속 근무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정인은 2009. 1. 10.부터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3.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피진정인 제출자료, 기타 관련 기록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7. 6.부터 2009. 1. 9.까지 건축 설계 업종의 ○○ 사무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피진정인은 사무소의 대표자인 소장이다.

나. 2008. 1. 28.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업무 관계자들과의 술자리 후 노래주점과 룸살롱에 간 사실이 있다. 당시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한 진정인의 주장에 관해 피진정인은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술에 취해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진정인은 그 다음 날부터 2주일간 출근하지 못하였고, 3곳의 온라인 상담기관에서 법률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 2008. 1. 30. 및 같은 해 2. 1. 진정인 및 진정인의 남자친구는 피진정인을 만나 공개 사과 및 각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은 각서를 거부하였고 결국 자신의 언동에 대한 사과,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 및 진정인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 금지를 구두로 약속하는 수준에서 진정인과 합의하였다.

라. 2008. 11. 20. 저녁 진정인과 피진정인 및 참고인 이○○, 강○○ 등 4명이 직장 사옥 지하에 있는 음식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있다. 술에 취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모욕적인 성적 발언

을 했는지에 대해 피진정인은 당시 화기애애했던 술자리의 분위기로 볼 때 그러한 발언을 하였을 리 없다고 부인하다가 이후 직설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마. 2008. 12. 5. 참고인 이○○가 진정인에게 2009. 2.까지만 출근하는 것에 대한 의사를 물었으며, 2009. 1. 3.에는 피진정인이 직접 진정인에게 "5월까지의 월급을 지급할 테니 2월까지만 나오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이 자신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부당해고라고 항변하자 피진정인은 "무섭다. 그럼 계속 근무해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진정인은 2008. 12. 11. ○○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에서, 2009. 1. 8.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성희롱 및 부당해고에 대한 온라인 상담을 받았으며, 2009. 1. 9.까지 출근한 후 토요일이었던 다음날 사무실에서 자신의 짐을 정리한 후 출근하지 않았다.

바. 피진정인은 위원회의 출석진술을 통해 자신의 언동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진정인에게 피해배상금 지급과 사과 등을 내용으로 합의할 의사를 밝혔으나 진정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합의는 성립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2009. 5. 7. 진정인에 대한 피해배상금으로 일천만원을 ○○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4. 판단

가. 업무 등 관련성 여부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직장의 대표자와 직원의 관계에 있었고, 본 사건에서 문제된 피진정인의 언동이 업무시간은 아니었으나 업무 관계자 혹은 직원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성적 언동의 사실 여부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진정인이 근무한 직장의 업무는 숙련성을 요하는 전문기술 분야

로서 하급자가 상급자로부터 많은 업무를 배우는 도제식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동종 업계에서 인맥과 평판이 중시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해 매우 우월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계에서 2008. 1. 28.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함으로써 진정인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준 사실이 인정되고, 당사자간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그 언동의 존재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피진정인은 같은 해 11. 20. 술자리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했던 사과가 진심이 아니었고 오히려 진정인이 잘못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여성이 듣기에 지극히 모욕적인 성적 발언을 함으로써 진정인에게 심대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었음이 명백하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을 뿐 고용 상 불이익을 준 바 없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거듭된 성적 언동으로 인하여 더 이상 받아들이기 힘든 적대적 근무환경이 조성된 결과 자신의 기존 경력을 포기하면서까지 고용관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의 언동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되, 다만 피진정인이 자신의 언동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피해배상금으로서 일천만원의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권고하지 않기로 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0.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김 태 훈 위 원 정 재 근

31. 시설관리공단 상사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9진차245 성희롱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서○○

【주 문】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피진정인을 경고조치할 것과 피진정인을 포함한 중간간부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08. 6.경 ○○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본부 주차장에서 진정인에게 "○○씨 사위는 잘 있어? 장모가 젊으니 끌어안고 자면 되겠네."라고 하고, 2009. 2.경 진정인과 동료 여직원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젖탱이나 한 번씩 만져주면 된다."라고 하는 등의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나이에 비해 외모가 젊어 보이는 스타일로 2008. 6.경 진정인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서 “젊은 사람이 사위를 일찍 봐서 좋겠네.”라고 했는데 진정인이 이를 오해하여 진정요지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2009. 2.경 동료 여직원에 대해 “가슴을 만져주면 된다.”라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3.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들의 진술, ○○시 및 ○○시 시설관리공단의 답변, 기타 관련 기록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공단 사업관리부 직원이며 피진정인은 동 공단 주차관리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나. 진정인은 2008. 6.경 ○○도서관에 근무하였는데 당시 진정인과 함께 근무하던 진정 외 김○○과 임○○은 2008. 6.경 본부 출장을 다녀 온 진정인으로부터 “주차장에서 서○○ 부장이 사위와 함께 자도 되겠다고 하더라, 무척 수치스럽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날짜미상 경 진정인으로부터 “피진정인이 동료 여직원에 대해 ‘가슴이나 한번씩 만져주면 된다.’고 하더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있다.
다. 피진정인은 2009. 1.경 인사개입 및 향응제공 등의 비위사실 혐의로 ○○시 감사실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09. 1. 28.부터 같은 해 2. 20.까지 70여명의 직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당시 진정인은 위 감사실 조사를 받던 중 피진정인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시 감사실은 진정인의 성희롱 주장에 대하여 공단 직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고 조사상의 한계로 인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종결처리 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2009. 4.경 진정인이 ○○시청 감사실 및 우리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진정인을 ○○지방검찰청 ○○지청에 무고로 고소하였다.

마. 진정인은 2009.초경 진정 외 남○○으로부터 "피진정인이 부서 워크샵을 다녀온 후 잘 다녀왔냐고 인사하는 안내 도우미에게 '남○○과 자고 왔다.'고 했다더라."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시 감사실에서 2009. 2. 20. 작성한 진정인에 대한 문답서에 따르면 피진정인이 회식 중 주차관리원이던 박○○의 가슴을 만지며 "껌이네."라고 했다는 말을 동료 직원들로부터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 피진정인이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중 진정 외 남○○ 작성의 확인서에는 "상기 본인은 워크샵 직후 공단 본부 1층 안내실에서 서○○ 부장의 발언에 대하여 3자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 조금 놀라기는 했지만 평소 표현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즐겁게 놀고 왔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했다. (중략) 본인은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이슈화되는 것을 원치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 진정 외 박○○ 작성의 확인서에는 "상기 본인은 종합운동장 근무할 당시 서○○ 부장으로부터 성희롱(신체접촉 등)을 당한 적이 없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시 시설관리공단은 2007. 5회, 2008. 8회, 2009. 5. 현재 5회에 걸쳐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5호는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직장 상사로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였고 진정인은 이로 인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는 것이므로 그 업무 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젊은 사람이 사위를 일찍 봐서 좋겠네."라고만 얘기했으며 동료 여직원에 대해서는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진정인의 행위 발생 당시 진정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는 참고인들의 진술, 진정인의 진술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일관성이 있는 점, 피진정인이 평소 다른 여직원들에게도 성적인 농담을 했다는 평판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성적 언동을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성희롱은 대부분 우리 사회의 남녀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나 직장 등 근로관계에서 다수의 성이 소수의 성에게 갖게 되는 성적 편견과 차별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직장은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한 곳이므로 인간관계 또한 직장 동료나 상사로서의 예의가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존중해야 할 동등한 동료가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성적 편견으로 인해 성희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성적인 언동이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보통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장모가 젊으니 사위하고 같이 자도 되겠네."라거나 여직원과의 관계에 대하여 특정 부위만 만져주면 된다고 하는 표현 등은 여성 직원을 동등한 직장 동료가 아니라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저급한 발언으로 이와 같은 성적 언동을 했다면 여성으로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피진정인은 부서장으로 직장 내에서 여성들이 성희롱 및 성차별적 편견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부하 여직원들에게 이와 같은 성적 언동을 하였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성희롱이 간부들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거나 문제제기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직장 내에서 간부들에 대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예방책임을 인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김 태 훈 위 원 정 재 근

32. <직권조사> 교수의 학생 성추행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8직차15 교수의 학생 성추행
【피 해 자】 1. 윤○○
2. 양○○
【피조사자】 전○○

【주 문】 ○○대학교 총장에게 피조사자를 징계하고 피해자 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직권조사 배경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는 2008. 9. 10.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익명의 남학생으로부터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상담전화를 받았다. 같은 달 18. 제3자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제보가 들어와 피해자들과 면담한 결과,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조사자의 성추행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 윤○○의 후유증이 심각한 반면, 피해자와 피조사자가 교수와 학생이라는 불평등한 지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우리 위원회에 진정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같은 달 23. 개최된 제36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건은 성희롱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보아「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피해자

1) 윤○○

2008. 7. 8.경 ○○대학교 ○○과 교수인 피조사자가 ○○○계 원로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며 피해자에게 장례식에 참석하자고 하여 같은 달 10. 동료학생 박○○와 셋이 장례식장에 갔다. 피조사자가 다음날 있을 영결식에 참석하자고 하여 새벽 4시경 장례식장을 나왔는데 피조사자가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하여 피조사자와 박○○를 술집에 내려주고 모텔 방을 예약한 후 술집으로 갔다. 피해자는 아침에 운전을 해야 해서 술을 마시고 싶지 않았으나 피조사자가 자꾸 술을 권하였으며 술자리를 빨리 끝내기 위해 박○○가 술을 급하게 많이 마셨다. 새벽 6시경 술집에서 나와 모텔로 갔는데 당시 모텔 방에는 침대가 두 개 있어 피조사자가 한 침대에, 피해자와 박○○가 다른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 잠을 자던 중 누군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처음에는 옆에서 자던 박○○가 장난 하는 줄 알고 서너 차례 손을 쳐 냈는데 왼쪽 등을 혀로 핥는 느낌과 함께 수염이 까칠하게 닿아 놀라서 고개를 돌려보니 피조사자였다. 깜짝 놀라 침대 밑에서 자고 있던 박○○를 깨워 밖으로 데리고 나와 울면서 피조사자가 피해자에게 한 행위를 말하였고, 방에 다시 들어가기가 싫어 모텔 1층 마당에 있던 수돗가에서 머리를 감았다. 당장 ○○로 돌아오려고 하였으나 박○○가 잠깐만 생각해보자고 하던 차에 모텔에서 나오던 피조사자와 마주쳐 할 수 없이 피조사자와 함께 화장터에 들러서 장례가 마무리 되는 것을 보고 ○○로

돌아왔다. 그 일 이후 샤워를 할 때마다 왼쪽 등에 혀와 수염이 닿았던 느낌이 되살아나 끔찍하고, 피조사자가 따라오는 악몽을 꾸는 등 괴로워서 거의 매일 술을 마셨고, 개강 이후 피조사자와 마주치고 싶지 않아 ○○과 합숙에 참석하지 않는 등 고통이 심하다.

2) 양○○

2008. 7. 12. ××에서 열리는 ○○○대회에 출전하기 위하여 피조사자와 □□으로 공부를 들어갔는데 처음 삼사일 동안은 레슨과 공부에 집중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다. 같은 달 15. 밤 10시경 피조사자가 술을 한 잔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술을 마시면 목 상태가 나빠져 대회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다음에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조사자가 가자고 하여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단란주점에 갔다. 술집에서 맥주를 마신 후 새벽 2시경 숙소로 돌아왔는데 피조사자가 양주를 한 잔 더 하자며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싶지 않았지만 피조사자는 술을 다 비워야 술자리를 끝내는 성격이라 빨리 술을 마신 후 취해서 졸고 있었다. 피조사자가 자자고 깨워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며 입술을 들이 대 너무 놀라 이러지 말라며 피조사자를 부축해서 잠자리에 눕혔는데 피조사자는 계속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옆자리가 비었는데 어딜 가냐며 같이 자자고 잡아당겼다. 피해자는 그 상황이 너무 당혹스러워 피조사자를 떼어 놓은 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윤○○과 박○○에게 전화를 했으며, 윤○○과 박○○가 피해자를 데리러 와서 새벽에 □□에서 나왔다. 이후 ××에서 열린 ○○○ 대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개강 이후 피조사자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악장을 맡고 있어 ○○과 모임 등에 불참하기 어려웠다.

나. 피조사자

2008. 7.경 ○○○계 원로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제자인 윤○○에게 승용차로 함께 가자고 제안하여 제자인 박○○와 함께 ◇◇에 있는 장례식장에 갔다. 다음날 있을 발인에 참석하기 위하여 장례

식장에서 나와 술을 한잔 더 마시고 새벽 5시경 모텔방에 투숙하였다. 자다가 일어나보니 박○○가 피조사자의 이불을 빼앗아 덮고 바닥에서 자고 있기에 너무 추워 윤○○의 침대로 가서 함께 이불을 덮었는데 갑자기 윤○○이 발로 차서 다시 피조사자의 침대로 돌아왔다. 평소 친구들로부터 잠버릇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으나 당일 윤○○의 성기를 만진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윤○○의 등을 혀로 핥은 적은 없다.

2008. 7.경 양○○과 □□에 갔는데 양○○이 밥을 하는 등 고생을 많이 해 이를 위로하기 위하여 외식을 하면서 술을 마셨고, 숙소로 들어와 술을 한 잔 더 마신 후 양○○을 안으며 외롭다고 같이 자자고 했는데 이는 양○○이 예뻐서 농담으로 그런 것이다.

3. 인정사실

피해자 및 피조사자의 진술, 피해자들의 동료인 참고인 박○○, 피해자 윤○○의 부모인 참고인 윤△△, 김○○의 진술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윤○○은 ○○대학교 ○○과 2학년에, 양○○은 같은 과 4학년에 재학 중이며, 피조사자는 2001. 3. ○○대학교 ○○과 ○○○ 담당 전임강사로 채용되어 현재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나. 피조사자는 2008. 7. 8.경 승용차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 윤○○에게 ○○○계 원로인 ○○○ 선생이 돌아가셨다며 함께 장례식장에 갈 것을 제안하였고 같은 달 10. 피조사자는 피해자 윤○○, 참고인 박○○와 함께 장례식에 참석하였다.

다. 장례식장에서 피조사자는 피해자 윤○○과 박○○에게 다음날 있을 발인에 참석하자고 말하였고 세 사람은 새벽 4시경 장례식장에서 나와 모텔을 예약한 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새벽 6시경 모텔에 투숙하였다. 당시 모텔 방에는 큰 침대가 두 개 있었는데 침

대 사이는 약 30cm 정도 간격이 있었고, 한 침대는 피조사자가, 다른 침대는 피해자 윤○○과 박○○가 사용하였다.

라. 아침 8시경 피해자 윤○○은 누군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등에 수염이 닿는 느낌에 놀라서 일어났는데 등 뒤에 피조사자가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박○○를 깨워 복도로 나가 "당했다, 때려죽이고 싶다, 누가 성기를 만지길래 처음에 네가 장난치는 줄 알고 손을 쳐냈는데 등에 혀가 닿는 느낌과 함께 까칠한 수염이 닿는 것 같아 섬뜩하여 돌아보니 피조사자였다."라고 울먹이며 말하였다. 모텔방으로 다시 들어가기 싫었던 피해자 윤○○은 1층 마당에서 머리를 감은 후 박○○와 ○○로 돌아가려 하였으나 박○○가 만류하여 피조사자와 함께 화장터에 가는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마. 2008. 7. 12.경 양○○은 ××에서 열리는 ○○○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피조사자와 □□으로 공부를 하러 들어갔다. 피조사자와 양○○은 같은 달 15.경 □□시 소재 단란주점에서 맥주를 마신 후 새벽 2시경 숙소로 돌아왔고 피조사자는 숙소에서 양○○에게 다시 양주를 권하였다. 양○○은 대회를 앞두고 술을 마시고 싶지 않았지만 술자리를 빨리 끝내기 위하여 서둘러 술을 마신 후 졸고 있었는데 피조사자가 양○○을 깨우며 그만 자자고 하여 일어났다. 이때 갑자기 피조사자가 양○○을 안으며 입술을 들이대 놀란 양○○이 이러지 말라며 피조사자를 부축하여 잠자리에 눕혔는데 피조사자는 옆자리가 비었으니 함께 자자며 여러 차례 양○○을 붙잡았다. 양○○은 피조사자를 눕힌 후 윤○○과 박○○에게 연락하였고 두 사람이 양○○을 데리러 와서 세 사람은 ○○에 있는 윤○○의 집으로 갔다. 양○○은 이후 ××에서 열린 ○○○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다.

바. 피해자 윤○○은 모텔에서의 사건 후 경찰인 사촌형과 상담하였으며 ○○○ 스승인 윤△△ 및 부모와 고향 친구들에게 피조사자의 행위에 대해 얘기하였다. 그 후에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울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악몽을 꾼다고 괴로움을 호소하였고, 2학기 개강 이후 ○○과 합숙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술을 마신 후 피조사자

를 죽여버리겠다고 하거나 피조사자의 승용차를 부숴버리겠다고 하여 박○○ 등이 이를 말린 적이 있다.

사. 위의 사실을 종합컨대 피조사자가 2007. 7. 10.경 모텔에서 피해자 윤○○의 성기를 만지고 왼쪽 등에 피조사자의 입술 부위가 닿았던 것은 사실로 인정되며, 같은 달 15.경 □□에서 공부 도중 술을 마시고 피해자 양○○을 안으며 입을 맞추려 한 행위 또한 사실로 인정된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5호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윤○○이 ◇◇에서 피조사자와 모텔에 함께 투숙하게 된 것은 ○○○계 원로 ○○○의 장례식 및 발인에 참석하자는 피조사자의 제안에 의한 것이고, 피해자 양○○과 공부를 하러 들어간 것 또한 ○○○ 대회 출전을 위한 교습이 목적이었다. 피조사자와 피해자 윤○○, 양○○이 교수와 학생 사이라는 점과 전후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본 행위는 대학 교수이자 공공기관 종사자인 피조사자의 직위로 인한 것이거나 학생 지도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조사자는 피해자 윤○○의 주장에 대하여 당시의 행위가 기억나지 않으나 평소 잠버릇이 좋지 않은데다가 술에 취하여 발생한 실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침대에 누워 자던 박○○가 피조사자의 이불을 빼앗아 침대 밑에서 자고 있었다는 설명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해자 윤○○은 피조사자를 발로 찬 적이 없다고 주장

하고 있어 행위 발생 전후의 상황과 이에 대한 피조사자의 대응 및 이후 모텔을 나오기까지의 상황에 대한 피조사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되지 않으며 당시 정황과 부합되지 않는다. 또한 개강 이후 피해자 윤○○이 ○○과 합숙에 참여하지 않고 모임에서 피조사자를 보고 나가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에도 이를 질책하지 못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피조사자는 자신이 피해자 윤○○에게 한 행위의 의미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인정된 피조사자의 행위에 대하여 보건대, 평소 가르침을 받는 학생인 피해자 윤○○의 입장에서 교수가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또한 매우 클 것이다.

실제 피해자 윤○○은 피조사자의 행위 이후 악몽에 시달리는 등 잠을 잘 수가 없어 거의 매일 술을 마셨으며, 개강 전날 피조사자를 봐야한다는 것에 대한 심적 부담으로 술을 마신 후 부모 앞에서 울었고, 이후 ○○과 합숙에 불참하고 학교에서 피조사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피해 다니는 등 그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하다.

다음으로 피조사자가 피해자 양○○에게 한 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조사자가 ○○○ 대회 출전을 위하여 공부에 들어간 피해자 양○○에게 술을 권한 뒤 안거나 입을 맞추려 하고, 같이 자자고 한 것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로 보여진다. 특히 양○○은 대회 출전을 앞두고 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고 싶지 않아 사양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고, 공부 장소를 이탈한 후 ○○○ 대회 출전을 포기하였는바 이는 교수와 학생이라는 권력관계에서 학생이 성적, 학교생활 및 졸업 후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수의 의사를 거스르는 행위를 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교수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학생들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희롱은 비록 일회적이라 할지라도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무례하

고 불쾌한 행동이며,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결과로 상대방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위협적, 굴욕적 또는 모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이다. 설사 피조사자가 행위 당시 술에 취하여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조사자는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다. 교수가 학생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모범이 되고 학생을 지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생들과 술을 마시고 그 연장선에서 성적 언동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이후 교권의 행사 및 학습권에도 좋지 않는 영향을 미쳐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낳게 된다. 피조사자와 피해자들은 학교에서 사제지간일 뿐 아니라 ○○○라는 특정 예술 영역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관계에 있는바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우려 또한 클 수밖에 없다. 특히 피해자 윤○○은 현재 2학년이므로 향후 본 사건으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위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조사자가 문제의 행위를 할 당시 주취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인사불성의 상태는 아니었고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 윤○○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 양○○을 안고 입을 맞추려고 한 행위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의 행위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 제5호가 규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29.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붙 임】

성희롱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2009. 6. 현재)

1. 연도별 진정접수 건수

연 도	2001~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6월)	계
건 수	4건	60건	107건	165건	149건	77건	56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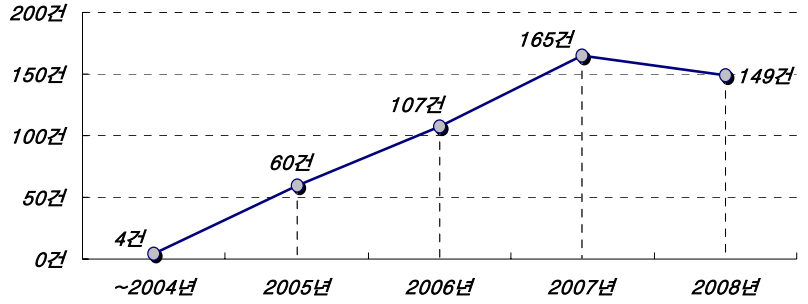

※ 2005. 6. 23. 여성부의 성희롱 시정 기능이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됨.

2. 성희롱 당사자 현황

1) 당사자의 성별

구 분	여성	남성	계
진정인(피해자)	549건(97.7%)	13건 (2.3%)	562건
피진정인	13건 (2.3%)	549건(97.7%)	562건

※ 남성 간 성희롱 : 7건 / 여성 간 성희롱 : 7건 / 여성에 의한 남성 성희롱 6건

2) 당사자의 국적

구 분	내국인	외국인	계
진정인(피해자)	557건	5건(0.9%)	562건
피진정인	558건	4건(0.7%)	562건

3) 피해자의 연령

구 분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계
건 수	11건	204건	149건	87건	34건	485건

※ 피해자의 연령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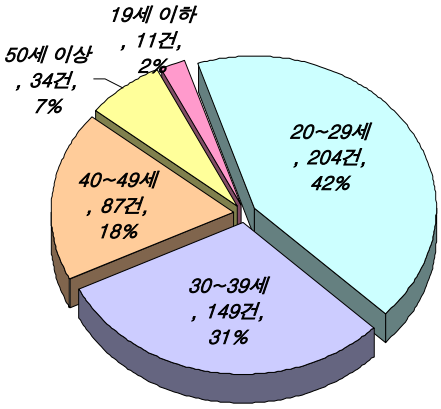

4) 당사자간 관계

구 분	직장 내 관계		교육 관계	거래 관계	수용·보호·공권력관계	기타	계
	상하관계	동료관계					
건 수	370건	65건	49건	34건	24건	20건	562건
비 중	65.8%	11.6%	8.7%	6.0%	4.3%	3.6%	100.0%

※ 교육기관, 의료시설 등의 종사자 간 관계는 직장 내 관계로 분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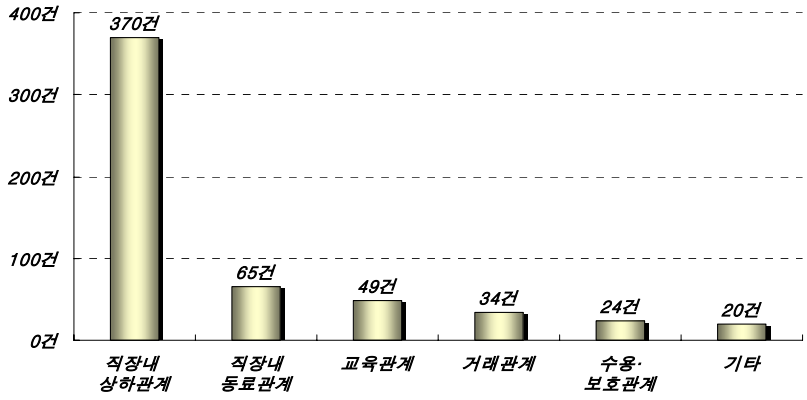

5) 피진정인의 지위

구 분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교직원 (학원제외)	기업/단체 경영자	근로자 (관리자 급이상)	일반 근로자	전문직 종사자	자영업자	계
건 수	85건	75건	136건	127건	93건	27건	19건	562건
비 중	15.1%	13.3%	24.2%	22.6%	16.5%	4.8%	3.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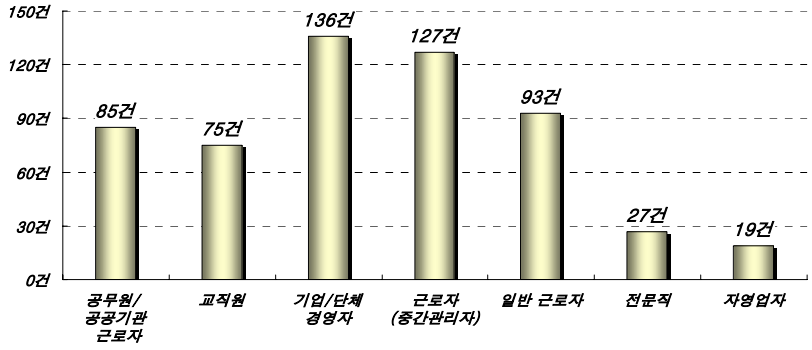

3. 성희롱 발생기관 및 장소

1) 성희롱 발생기관

구 분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주식회사	기타회사	비영리 사법인	의료·보호시설	기타	계
건 수	39건	34건	12건	88건	197건	88건	51건	33건	20건	562건
비 중	6.9%	6.0%	2.1%	15.7%	35.1%	15.7%	9.1%	5.9%	3.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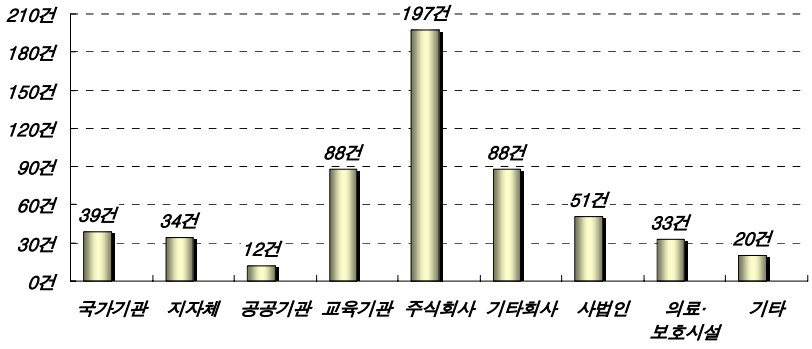

【 공/사 부문간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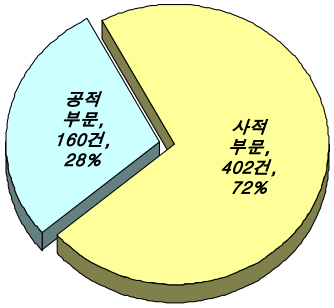

※ 공적 부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법인), 학교(학원 제외)

【 국가기관의 유형 】

검찰/경찰	일반 행정기관	구금 시설	군대	계
16건	12건	6건	5건	39건
41.0%	30.8%	15.4%	12.8%	100.0%

【 교육기관의 유형 】

각급 학교			사교육 기관 (학원)	계
초/중/고교	대학교 (원)	특수 학교		
36건	36건	3건	13건	88건
40.9%	40.9%	3.4%	14.8%	100.0%

2) 성희롱 발생 장소

구 분	직장 내	회식 장소	출장 중	교육 시설	수용 시설	사석	기타	계 <중복산정>
건 수	312건	125건	31건	33건	17건	47건	35건	600건
비 중	52.0%	20.8%	5.2%	5.5%	2.8%	7.8%	5.8%	100.0%

※ 동일 진정에서 성희롱 발생 장소가 2곳 이상인 경우 중복하여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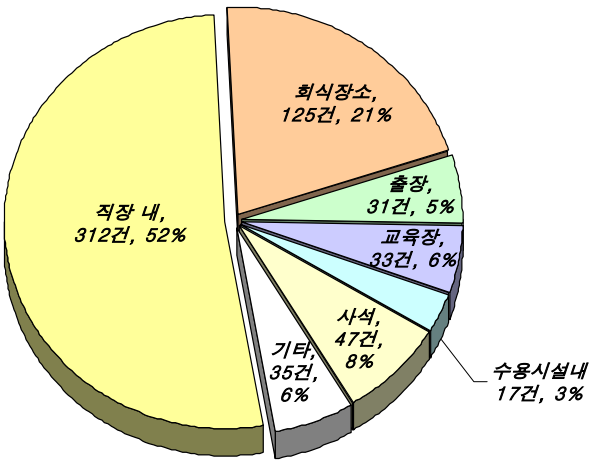

4. 성희롱의 양상

구 분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복합적	계
건 수	197건	173건	20건	172건	562건
비 중	35.1%	30.8%	3.6%	30.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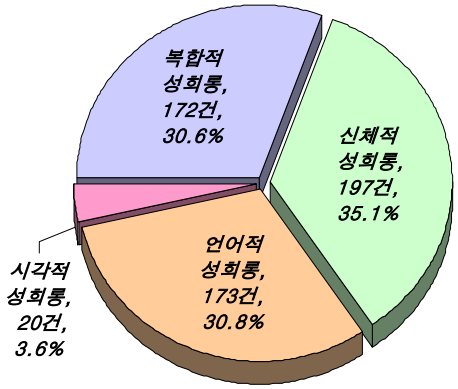

※ 복합적 성희롱의 유형

구분	건수
신체적+언어적	142건
언어적+시각적	13건
신체적+시각적	9건
신체+언어+시각	8건

5. 진정 처리결과별 분류

구 분	인 용			기각	타기관 이송	조사 중지	각 하		계
	권고	합의 종결	조정				조사중 해결*	일반	
건 수	54건	69건	9건	30건	12건	10건	85건	253건	522건
비 중	10.3%	13.2%	1.7%	5.7%	2.3%	1.9%	16.3%	48.5%	100.0%

(2009. 6. 30. 현재 종결 사건 기준)

※ 조사중 해결 : 위원회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 또는 해당 직장 등으로부터 자체적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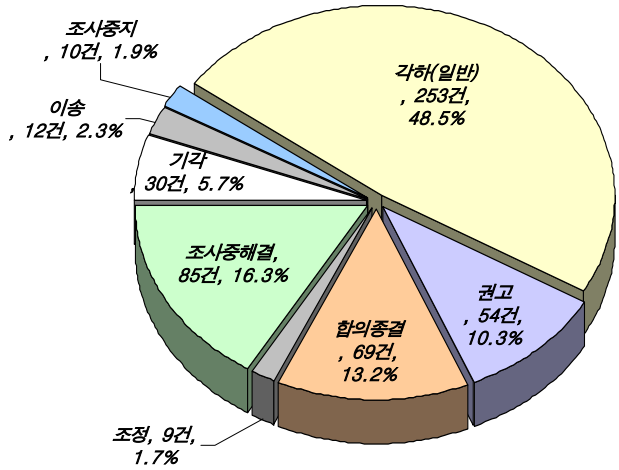

❑ **권고 주문 내용**(동일 사건 내 2개 이상 주문 유형 중복 산정)

구 분	피진정인 특별인권 교육	재발방지 대책*	징계·경고	손해 배상	근무지 조정	피해자 법률구조 요청	고용상 불이익 금지	계 <중복산정>
건 수	41건	24건	15건	14건	3건	3건	2건	102건
비 중	40.2%	23.5%	14.7%	13.7%	2.9%	2.9%	2.0%	100.0%

※ 재발방지대책에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등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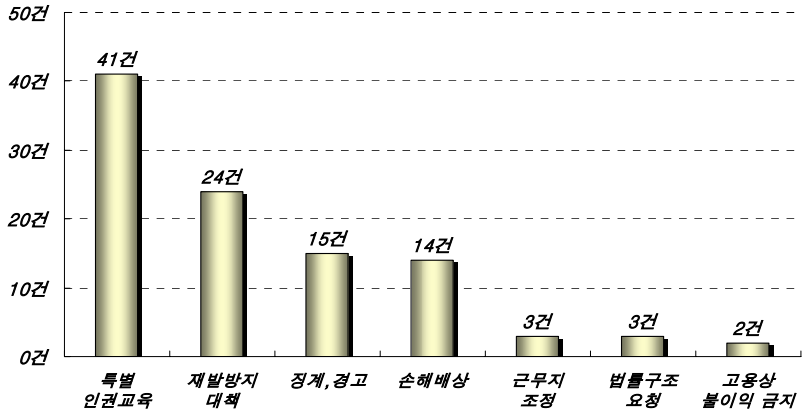

❑ **합의종결 내용**(동일 사건 내 2개 이상 합의 내용 중복 산정)

구 분	사과	손해배상	인권교육	인사조치	재발방지/ 불이익금지	기타	계 <중복산정>
건 수	46건	31건	16건	7건	7건	4건	111건
비 중	41.4%	27.9%	14.4%	6.3%	6.3%	3.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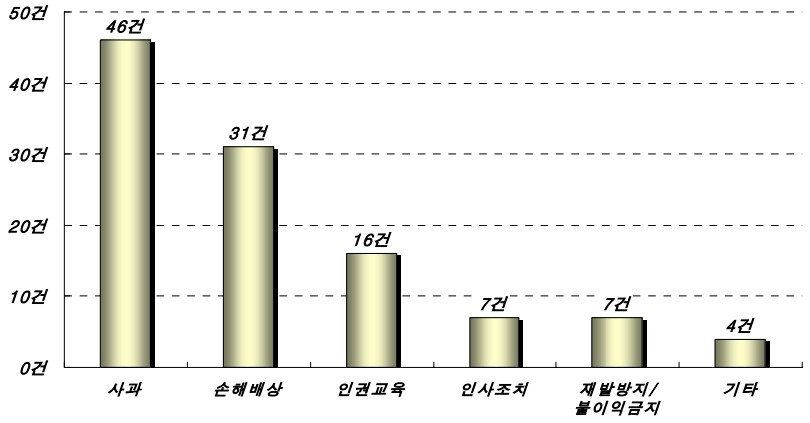

❑ **조사중 해결 내용**(동일 사건 내 2개 이상 조치 내용 중복 산정)

구 분	사과	피진정인 고용배제 / 징계	해당기관 재발방지 조치	피해 배상	근무지 조정	기타	계 <중복산정>
건 수	45건	20건	17건	14건	5건	2건	103건
비 중	43.7%	19.4%	16.5%	13.6%	4.9%	1.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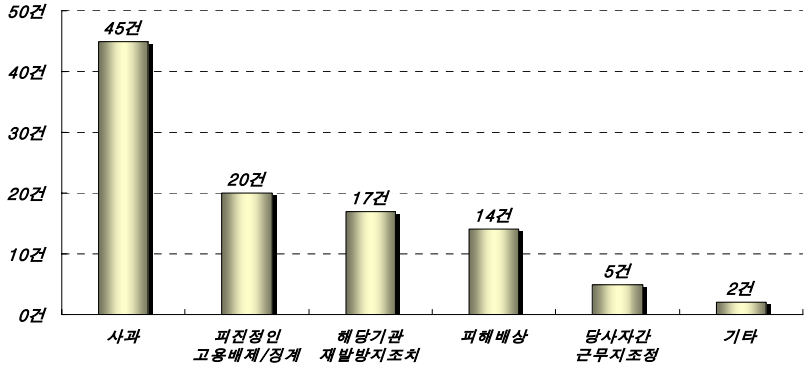

성희롱 사건 조정 및 합의종결 현황 (2009. 6. 현재)

❑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 9건

연번	사건번호	사건개요 및 조정내용
1	06진차759	대학 동료 교수인 피진정인은 장례식장에 만난 진정인에게 "(사창가를 뜻하는)○○동에 안 있고 왜 여기 있어요?"라고 발언함. → 조정내용 : 피진정인의 사과 (2005. 12. 21. 성립)
2	05진차986	외식 체인업체의 본사 감독자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근무하는 업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신체접촉 행위를 함. → 조정 내용 : 사과, 피해배상금 100만원 (2006. 5. 9. 성립)
3	05진차995	외국계 회사의 직장동료인 피진정인은 술자리에서 진정인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진정인에게 성희롱적 언동을 함. → 조정내용 : 사과, 피해배상금 1,000만원, 피진정인의 진정인 접근 금지 (2006. 5. 10. 성립)
4	06진차220	대학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교수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으나 학교는 적절한 제재 및 재발방지책을 시행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 및 관련인들에게 2차적 피해가 미침. → 조정내용 : 사과, 관련 상담직원에 대한 불이익 금지, 학내 성폭력방지기구 구성 (2006. 8. 10. 성립)
5	06진차302	○○바 사장인 피진정인은 아르바이트 직원인 진정인이 일을 그만두고자 하는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진정인의 신체를 접촉하고 성적 발언을 함. → 조정내용 : 사과, 피해배상금 100만원 (2006. 9. 8. 성립)
6	06진차258	진정인이 근무한 직장의 주 거래처 관계자인 피진정인은 진정인과의 접대 자리에서 성적 농담과 신체접촉 등 언동을 함. → 조정내용 : 사과, 피해배상금 500만원 (2006. 9. 12. 성립)
7	06진차421	진정인의 직장 사장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신체접촉과 성적 발언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함. → 조정내용 : 특별인권교육, 피해배상금 50만원 (2006. 11. 22. 성립)
8	07진차107	진정인의 직장 동료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성적인 발언을 대면 또는 전화를 통해 상습적으로 해옴. → 조정내용 : 사과, 특별인권교육, 피진정인의 진정인 접근금지, 피해배상금 70만원 (2007. 5. 8. 성립)
9	07진차1051	진정인의 직장 상사인 피진정인은 아르바이트생 서랍에 있는 생리대를 보여주거나, 진정인의 가슴 크기를 묻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진정인을 무단 촬영하는 등의 언동을 함. → 조정내용 : 사과, 특별인권교육, 피해배상금 120만원 (2008. 3. 12. 성립)

❑ 당사자 간 합의종결 : 69건

연번	사건번호	사건개요 및 합의내용
1	05진차472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대학원 지도교수로서 진정인이 다니는 직장에 대해 물으며 "몸 팔고 다니냐?"는 등의 발언을 함. → 합의내용 : 사과, 지도교수 교체 (2005. 10. 25. 성립)
2	05진차537	진정인이 지원한 회사의 사장인 피진정인은 면접 시 "홍보직원은 야한 옷차림으로 기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노래방에서 강제로 블루스를 추게 함. → 합의내용 : 사과 (2005. 11. 22. 성립)
3	05진차1044	진정인이 근무한 레스토랑 사장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의미로 "떡볶이 만들러 가자"는 말을 하고, 진정인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행위를 함. → 합의내용 : 사과, 미지급 급여 10만원 지급 (2006. 1. 26. 성립)
4	05진차978	피해자가 다니던 자격증 학원의 강사인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성적 언동을 하였고, 이를 학원에 문제제기하자 오히려 다른 수강생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함. → 합의내용 : 피해배상금 400만원, 비방 금지 (2006. 2. 14. 성립)
5	06진차51	진정인의 회사 대표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엉덩이와 가슴 등을 접촉하는 행위와 성적 발언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함. → 합의내용 : 사과 (2006. 3. 8. 성립)
6	06진차130	대학 강사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키스 등 신체접촉을 하였으며, 술에 취한 진정인을 여관에 데리고 감. → 합의내용 : 사과, 피진정인이 10년간 교직에 종사하지 않기로 함. (2006. 4. 21. 성립)
7	06진차168	진정인이 근무하는 시 보건소의 팀장인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언쟁을 벌이던 중 고의로 진정인의 몸에 밀착하는 행위를 함. → 합의내용 : 사과 (2006. 4. 26. 성립)
8	06진차190	피해자의 동료 교사인 피진정인은 피해자와 식사 도중 남성과 동거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등 성적 발언을 함. → 합의내용 : 피진정인의 전출원 제출 (2006. 5. 18. 성립)
9	06진차262	진정인이 근무한 부동산업소 상사인 피진정인은 직원 회식에서 진정인의 볼에 입을 맞추고 몸을 끌어당기는 행위를 함. → 합의내용 : 피해배상금 50만원 (2006. 7. 3. 성립)
10	06진차330	진정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여러 신체부위를 만지고 성적 발언을 일삼았으며, 음란서적을 보도록 강요하는 등의 언동을 함. → 합의내용 : 피해배상금 300만원 (2006. 8. 7. 성립)

연번	사건번호	사건개요 및 합의내용
11	06진차394	진정인이 근무하던 병원 치료실장인 피진정인은 몸 상태가 좋지 않던 진정인을 치료실로 데리고 간 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고, 진정인이 이를 병원에 문제제기하자 해고됨. → 합의내용 : 피해배상금 200만원 (2006. 9. 21. 성립)
12	06진차434	진정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인 피진정인은 근무시간 중 진정인을 조퇴하게 하여 근교 유원지에 데리고 간 후 성적 발언과 신체접촉 행위를 함. → 합의내용 : 사과, 피해배상금 250만원 (2006. 10. 23. 성립)
13	06진차535	동사무소 직원인 진정인은 친분 관계를 갖던 인근 동사무소 직원인 피진정인으로부터 입맞춤 등 신체접촉을 당하고 성적인 내용의 발언과 이메일 등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입음. → 합의내용 : 사과, 피해배상금 50만원 (2006. 11. 7. 성립)
14	06진차552	진정인이 근무하는 시청 동료 직원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데이트하자"는 등의 메신저를 보낸 후 갑자기 진정인에게 다가와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함. → 합의내용 : 특별인권교육, 사과문 게시, 징계 (2006. 11. 22. 성립)
15	06진차697	진정인이 근무한 대리점 상사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여자로 보인다", "몸매가 좋다"는 등의 발언을 수차례 하고, 돈을 줄 테니 자신의 모임에 같이 나가자는 제안을 함. → 합의내용 : 사과, 피해배상금 280만원 (2006. 12. 14. 성립)
16	06진차692	진정인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교감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컴퓨터에 음란 동영상을 깔아놓는 등 수치스런 근무환경을 조성함. → 합의내용 : 특별인권교육, 진정인 불이익 금지 (2006. 12. 19. 성립)
17	06진차726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의 이사인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몸동작을 보이고, 피해자의 무릎을 쓰다듬었으며,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만나자는 연락을 여러 차례 함. → 합의내용 : 사과, 피해배상금 100만원, 피진정인 징계, 피해자의 타 부서 배치 및 불이익 금지 (2007. 1. 22. 성립)
18	06진차784	진정인의 직장상사인 피진정인은 회식자리에서 진정인에게 음란한 농담을 하고 진정인을 끌어안는 행위를 함. → 합의내용 : 사과, 피해배상금 120만원 (2007. 1. 23. 성립)
19	06진차671	진정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사장인 피진정인은 회식 자리에서 진정인에게 "치마만 짧은 것 입었지, 막내가 잘 놀지 못한다."면서 성행위를 암시하는 듯한 몸동작을 취하여 보임. → 합의내용 : 사과, 체불임금 130만원 지급 (2007. 1. 24. 성립)
20	07진차17	진정인의 직장 상사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성적 발언과 신체접촉 행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 하였음. → 합의내용 : 특별인권교육, 피해배상금 400만원, 진정인 퇴직 시 퇴직금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2007. 1. 30. 성립)

연번	사건번호	사건개요 및 합의내용
21	06진차616	진정인의 직장상사인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 대해 "바람난 암캐처럼 돌아다닌다"는 소문을 내고, "확 덮쳐 버릴 테니 조심하라"는 발언 및 진정인의 아랫배와 엉덩이를 치는 행위를 함. → 합의내용 : 특별인권교육, 피해배상금 200만원 (2007. 3. 2. 성립)
22	07진차94	공연기획사에 근무하던 진정인은 출장지 및 사무실에서 공연감독인 피진정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신체접촉을 당하였음. → 합의내용 : 사과, 피해배상금 2,000만원 (2007. 3. 2. 성립)
23	06진차670	지체장애인인 피해자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중 병원 직원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함. → 합의내용 : 병원 측 사과, 가해자 해고 (2007. 3. 9. 성립)
24	07진차217	진정인이 근무하던 공기업 지사의 관리자인 피진정인은 회식, 출장 및 근무지에서 지속적으로 신체접촉과 성적 언동을 하였고, 피진정인이 본사 발령된 이후에도 저속한 문자메시지를 보냄. 이로 인해 진정인은 퇴사, 이혼, 우울증 등 피해를 입음. → 합의내용 : 사과, 피해배상금 8,000만원 (2007. 3. 27. 성립)
25	07진차473	진정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고문인 피진정인은 "마사지를 해달라"면서 진정인을 차에 태우고 모텔 앞으로 데리고 감. → 합의내용 : 사과, 피해배상금 200만원 (2007. 5. 30. 성립)
26	07진차421	피해자가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장인 피진정인은 신입직원 환영회식 후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직원들에게 블루스를 추도록 강요함. → 합의내용 : 특별인권교육, 불이익 금지 (2007. 6. 12. 성립)
27	07진차468	진정인의 회사 사장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사귀자"고 하고, 출장을 명목으로 진정인을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자고 가자"고 하였으며, 진정인의 엉덩이를 치거나 어깨를 감싸는 등의 행위를 함. → 합의내용 : 사과, 피해배상금 50만원 (2007. 7. 4. 성립)
28	07진차560	진정인의 회사 상사였던 피진정인은 회식 중 술에 취하여 진정인에게 "사랑한다, 사귀자,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함. → 합의내용 : 피해배상금 80만원 (2007. 7. 23. 성립)
29	07진차609	진정인의 회사 상사였던 피진정인은 회식 후 진정인을 포옹하고, 수차례 진정인의 무릎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함. → 합의내용 : 피해배상금 700만원 (2007. 7. 25. 성립)
30	07진차702	진정인의 회사 상사였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야동을 깔아달라"고 요구하고,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진정인이 동거했던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었으며,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함. → 합의내용 : 사과, 특별인권교육 (2007. 8. 21. 성립)

연번	사건번호	사건개요 및 합의내용
31	07진차598	진정인의 회사 상사였던 피진정인은 회식 후 진정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진정인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함. → 합의내용 : 인권교육, 피해배상금 300만원 (2008. 8. 23. 성립)
32	07진차717	복지시설의 동료교사인 피진정인은 교사들 간에 대화를 나누던 진정인의 엉덩이를 치는 행위를 함. → 합의내용 : 가해자 경고조치 및 근무조 변경 (2007. 8. 27. 성립)
33	07진차584	진정인의 회사 상사였던 피진정인은 여성 직원에 대해 “맛있겠다”고 하고, 진정인에게 “몸매 잘 가꿨네, 모텔 가자”는 등 성적 언동을 함. → 합의내용 : 사과, 특별인권교육 (2007. 9. 6. 성립)
34	07진차831	진정인의 회사 상사였던 피진정인은 음란 동영상을 보면서 진정인에게 자신의 성 경험을 이야기하고 진정인에게 “너도 언젠가 나와 자고 싶어질 것”이라고 하였으며, 업무 또는 회식 중 진정인의 가슴 등 신체를 만짐. → 합의내용 : 피해배상금 500만원 (2007. 9. 17. 성립)
35	07진차559	진정인의 회사 상사였던 피진정인은 회식 후 노래방에서 강제로 블루스를 추게 하고, 나이트클럽에서 진정인의 허리, 엉덩이 등을 만졌으며, 귀가하려는 진정인의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함. → 합의내용 : 피해배상금 2,500만원 (2007. 10. 4. 성립)
36	07진차635	공기업 간부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배우자와의 성관계를 물어보거나 “섹스를 잘 하게 생겼다”는 등의 발언을 수차례 하여 진정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입음. → 합의내용 : 피해배상금 300만원 (2007. 10. 30. 성립)
37	07진차769	진정인이 근무한 회사 사장인 피진정인은 해외 출장시 경비를 아낀다는 명목으로 진정인과 같은 방을 쓰면서 진정인을 끌어안았고, 현지 직원과 회식 중에서 입을 맞추며 성적 발언을 함. 진정인은 출장 이후 갑자기 해고됨. → 합의내용 : 피해배상금 200만원 (2007. 11. 15. 성립)
38	07진차924	골프클럽의 신규직원 채용시 면접관이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왜 아이가 없느냐, 누구에게 문제가 있느냐”는 등 업무와 무관한 질문으로 성적 수치심을 줌. → 합의내용 : 사과 (2007. 11. 22. 성립)
39	07진차318	진정인이 근무한 회사의 해외 사무소장이었던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함께 사택으로 가던 차 안에서 진정인에게 얼굴을 기대고 입을 맞추려 시도함. → 합의내용 : 피해배상금 500만원 (2007. 11. 23. 성립)
40	07진차764	진정인이 근무한 골프클럽 이사인 피진정인은 회식 후 진정인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는 행위를 함. → 합의내용 : 사과 및 특별인권교육 (2007. 11. 28. 성립)

연번	사건번호	사건개요 및 합의내용
41	07진차975	진정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동료직원인 피진정인들은 휴대전화를 통해 진정인에게 음란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 합의내용 : 사과 및 피해배상금 100만원 (2007. 11. 30. 성립)
42	07진차904	진정인이 근무하는 공공시설의 관장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니가 창녀냐?"는 발언을 함. → 합의내용 : 사과 (2007. 12. 11. 성립)
43	07진차814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피진정인은 회식 중 진정인들에게 블루스를 추도록 강요하고 가슴, 허리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함. → 합의내용 : 진정인 2인에게 각각 피해배상금 1,000만원 (2007. 12. 14. 성립)
44	07진차1109	진정인이 근무한 호텔의 지배인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허리, 등, 허벅지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하여 진정인을 퇴사케 함. → 합의내용 : 사과 및 피해배상금 500만원 (2008. 1. 22. 성립)
45	08진차125	세무사인 피진정인은 세무사무소 직원인 진정인에게 회식 중 블루스를 추게 하면서 껴안고,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함. → 합의내용 : 피해배상금 400만원 (2008. 3. 18. 성립)
46	08진차65	진정인이 근무한 회사의 상사인 피진정인은 승강기 안에서 진정인을 안고, 사무실에서 허리와 팔을 쓰다듬는 행위를 함. 진정인은 회사에 문제제기를 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결국 퇴사함. → 합의내용 : 사과, 피해배상금 300만원, 특별인권교육 (2008. 3. 28. 성립)
47	08진차147	○○연합회장인 피진정인은 직원인 진정인에게 개인적 만남이나 출장 동행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회식 시 강제로 옆에 앉혔으며, 대면 결재 시 진정인을 훑어보며 "보고 싶지 않았느냐"는 등의 언행을 함. → 합의내용 : 사과, 가해자의 회장직 사퇴 (2008. 4. 10. 성립)
48	08진차571	진정인이 근무한 회사 상사인 피진정인은 해외 출장 중 진정인의 손을 잡으면서 자신의 호텔방에서 쉬라는 등의 발언을 함. → 합의내용 : 사과, 특별인권교육 (2008. 6. 23. 성립)
49	08진차337	의사인 피진정인은 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의 팬티를 내려 엉덩이를 주무르는 행위를 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 → 합의내용 : 치료비 환불, 사과, 재발방지 약속 (2008. 7. 23. 성립)
50	08진차665	진정인이 근무한 직장의 사장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옷을 들추고 맨 살을 만지거나 치마 속으로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를 함. → 합의내용 : 사과, 피해배상금 200만원 (2008. 7. 25. 성립)

연번	사건번호	사건개요 및 합의내용
51	08진차470	진정인이 근무한 회사의 사장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수차례 "데이트하자, 같이 여행가자"는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줌. → 합의내용 : 피해배상금 200만원 (2009. 8. 13. 성립)
52	08진차472	진정인이 의사로 근무하는 대학병원의 과장인 피진정인은 회식 중 "여자는 얼굴에 분칠하고 향내도 나고 치마를 입어야지... 거기다 속옷도 안 입으면 좋지"라는 등의 성적 발언을 함. → 합의내용 : 특별인권교육 (2009. 8. 22. 성립)
53	08진차733	교육청 직원인 피진정인은 학교 영양교사인 진정인이 결혼을 앞둔 시기에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냄. → 합의내용 : 사과 (2008. 9. 1. 성립)
54	08진차658	찜질방 내 임대매점 사장인 피진정인은 직원으로 일하던 진정인에게 성적 발언을 수시로 하고, 진정인의 등에 손을 집어넣는 등의 신체접촉 행위를 함. → 합의내용 : 사과, 피해배상금 150만원 (2008. 9. 8. 성립)
55	08진차494	진정인이 근무한 회사의 상무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넌 내 스타일이야"라는 등의 말을 속삭이고, 임신한 진정인에게 유독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등 성적 수치심과 스트레스를 줌. → 합의내용 : 사과, 직장 내 공표, 불이익 금지 (2008. 9. 12. 성립)
56	08진차688	진정인이 근무한 회사의 이사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좋아한다는 의사를 계속적으로 밝혀 진정인을 퇴사에 이르게 함. → 합의내용 : 사과, 피해배상금 500만원 (2008. 10. 10. 성립)
57	08진차1382	진정인이 근무한 상가의 사장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입을 맞추거나 손을 잡고 전화 통화 시 "사랑한다고 말해 달라"는 등의 언동을 함. → 합의내용 : 사과, 특별인권교육 (2009. 1. 22. 성립)
58	09진차14	○○협회 지회장인 피진정인은 회원으로 있는 피해자에 대해 협회의 다른 간부와 잠자리를 함께 했다는 소문을 유포함. → 합의내용 : 당사자간 화해 (2009. 2. 12. 성립)
59	09진차73	스크린 골프장 사장인 피진정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진정인이 실수를 하자 "또 실수하면 뽀뽀하겠다"고 하였고, 며칠 후 "실수했으니까 뽀뽀해야지"라며 진정인에게 다가서는 행위를 함. → 합의내용 : 사과, 재발방지약속 (2009. 2. 13. 성립)
60	08진차26	진정인이 교사로 근무한 고등학교의 교감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교태 부리지 말라", "나이 든 여자와 회식하기 싫다.", "정상적인 부부생활은 하느냐"는 등의 발언을 함. → 합의내용 : 사과, 특별인권교육 (2009. 2. 16. 성립)

연번	사건번호	사건개요 및 합의내용
61	08진차1277	의사인 피진정인은 진료를 받으러 온 진정인에게 예고도 없이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진료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함. → 합의내용 : 재발방지약속 (2009. 2. 17. 성립)
62	09진차156	진정인이 검진을 받으러 간 ○○구 보건소는 진정인에게 창문을 통해 안이 들여다보이는 검사실에서 옷을 갈아입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 → 합의내용 : 사과 및 공개 사과문 게재 (2009. 3. 13. 성립)
63	09진차91	진정인이 근무한 중학교의 동료 교사인 피진정인은 회식 중 진정인이 거부하였음에도 함께 블루스를 추자고 강권함. → 합의내용 : 사과, 특별인권교육 (2009. 3. 20. 성립)
64	09진차215	진정인이 근무한 회사 사장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남자친구랑 잤느냐"는 등의 성적 발언을 하고, 진정인의 입술을 만지거나 포옹하는 등의 신체접촉을 함. → 합의내용 : 사과, 피해배상금 150만원 (2009. 3. 27. 성립)
65	09진차196	진정인의 직장 동료 직원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남편과의 성관계를 묻고, 진정인이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 문을 열어보는 등의 언동을 함. → 합의내용 : 사과, 재발방지약속 (2009. 4. 3. 성립)
66	09진차188	피해자가 근무한 회사의 이사인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술자리에 동석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진정인으로부터 직장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으로 인해 퇴사함. → 합의내용 : 사과 (2009. 4. 8. 성립)
67	09진차18	진정인의 직장 상사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보이는 위치에서 컴퓨터로 포르노 동영상을 보고 진정인에게 "밤에 얼마나 무리를 했으면 그렇게 피곤해 보이느냐"는 등의 언동을 함. → 합의내용 : 사과, 피해배상금 150만원 (2009. 4. 13. 성립)
68	09진차412	스포츠센터 수영강사인 피진정인은 강습 도중 수강생인 진정인의 팔을 물고, 진정인이 샤워하는 모습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함. → 합의내용 : 사과, 특별인권교육 (2009. 5. 21. 성립)
69	09진차540	진정인의 직장 동료인 피진정인은 사무실에서 진정인에게 신체접촉을 하고, "남자친구와 동거를 해봐야 관계를 원하는지 알 수 있다"는 등의 언동을 함. → 합의내용 : 사과, 피해배상금 50만원 (2009. 6. 9. 성립)

성희롱 시정 결정례집 제1집 수록 사건 <요약>

연번	사건번호 (결정일)	사건개요	권고주문
1	03진차48 ('03.9.1.)	○○대학병원 비뇨기과 과장인 피진정인은 업무를 빌미로 간호사들에게 잦은 신체접촉과 성적 발언 및 폭언을 해옴.	· 피진정인의 특별인권교육 수강 (피진정인은 권고 결정 이전에 이미 징계처분을 받음.) · ○○대 총장과 병원장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2	05진차470 ('05.9.13.)	○○대학교 교수인 피진정인은 연구실 및 강의실 등에서 학생인 진정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적 발언과 신체접촉 등을 함.	· 피진정인의 특별인권교육 수강 (피진정인은 권고 결정 전 징계처분을 통해 해임됨.) · ○○대 총장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3	05진차784 ('05.12.13.)	다국적기업의 한국지사장인 피진정인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진정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가슴 크기나 속옷 착용 등에 관한 성적 발언을 함.	·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사과 · 전직원 특별인권교육 ·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4	05진차1061 ('06.5.29.)	국가기관의 과장인 피진정인은 청사 내에서 마주친 진정인에게 얼굴을 들이밀어 입술을 진정인의 볼에 접촉하는 행위를 함.	· 피진정인의 특별인권교육 수강 · 해당 기관장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5	06진차182 ('06.7.4.)	○○병원의 직원인 피진정인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진정인에게 성적 발언과 신체접촉을 함.	· 피진정인의 특별인권교육 수강 · 해당 병원장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6	06진차266 ('06.8.29.)	회사 동료직원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성적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를 함.	· 피진정인의 특별인권교육 수강 · 해당 회사 대표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근무지를 조정할 것
7	06진차287 ('06.8.29.)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인 피진정인은 상담원으로 근무하다가 사직의사를 밝힌 진정인을 만난 자리에서 성적 발언과 신체접촉을 함.	· 피진정인의 특별인권교육 수강
8	05진차811 ('06.9.18.)	회사 동료직원인 피진정인은 회식 중 진정인에게 성적 언동을 함.	· 피진정인의 특별인권교육 수강 · 피해배상금 200만원 지급

연번	사건번호 (결정일)	사건개요	권고주문
9	06진차201 ('06.9.18.)	진정인이 근무한 회사는 퇴폐쇼를 하는 술집에서 접대회식을 하는 진정인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근무환경을 조성함. (환경형 성희롱)	· 해당 회사는 진정인에게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지급할 것 · 전직원 대상 성희롱예방교육 및 재발방지대책 시행
10	06진차359 ('06.12.22.)	○○문화재단의 상사인 피진정인은 같이 식사할 것을 요구받은 진정인을 노래방과 승용차 안에서 성추행함.	· 전직원 대상 성희롱예방교육 · 직장 내 재발방지대책 수립 (진정인은 이미 피진정인과 공개사과 및 배상금 지급 합의)
11	06진차606 ('06.12.22.)	초등학교 직원인 피진정인은 임시직원으로 근무하던 진정인과 회식 후 귀가하는 길에 진정인에게 성적 언동과 신체접촉을 함.	· 피진정인의 특별인권교육 수강 · 해당 학교장의 피진정인에 대한 경고 조치
12	06진차425 ('06.12.22.)	○○연구소의 고문인 피진정인은 자택에서 연구원인 진정인에게 "옆에서 자고 가라"는 등의 성적 언동을 함.	· 피진정인의 특별인권교육 수강 · 피해배상금 200만원 지급
13	06진차529 ('06.12.22.)	회사 사장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같이 사는 조건으로 금전과 재산을 주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냄.	· 피진정인의 특별인권교육 수강
14	06진차465 ('06.12.26.)	진정인이 근무한 주유소의 직원인 피진정인은 다른 동료에게 진정인에 대한 성적 발언을 하여 그 내용이 진정인에게 알려짐.(간접적 성희롱)	· 피진정인의 특별인권교육 수강
15	06진차488 ('07.1.31.)	대학교수인 피진정인은 음주 후 학교 인근 공원에서 제자인 피해자에게 포옹과 키스 시도를 함.	· 피진정인의 특별인권교육 수강 (피진정인은 결정 전 이미 학교로부터 징계조치를 받음.)
16	06진차503 ('07.1.31.)	회사 사장인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현재의 부인만 아니면 너와 결혼했을 것이다"는 등의 발언을 수차례 함.	· 피진정인의 특별인권교육 수강 · 피해배상금 100만원 지급 · 회사 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17	06진차534 ('07.2.20.)	○○공사 상사인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인사상담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진정인에게 성적 발언과 신체접촉을 함.	· 피진정인의 특별인권교육 수강

연번	사건번호 (결정일)	사건개요	권고주문
18	06진차747 ('07.2.20.)	중학교 교사인 피진정인은 교무보조 직원인 진정인에게 구애행위와 신체접촉 등을 하였고, 학교 측은 진정인을 피진정인과 묶어 비난하며 진정인의 재계약을 거부함.	· 피진정인의 특별인권교육 수강 · 관할 교육청은 피진정인에게 징계 및 전보조치 할 것 · 해당 학교장은 진정인에 대한 재계약 거부를 취소하고,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19	06진차401 ('07.3.28.)	○○대학교 교수인 피진정인은 학내 문제로 항의를 하던 학교 노조원인 진정인에게 "가슴 보인다. 닫고 다니라"는 발언을 함.	· 피진정인의 특별인권교육 수강 · ○○대학교 총장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20	06진차10 ('07.4.11.)	중학교 교사인 피진정인인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머니들을 면담하면서 성적 발언과 신체접촉을 함.	· 피진정인의 특별인권교육 수강 · 해당 학교 교장의 피진정인 징계 조치
21	07진차103 ('07.4.30.)	회사 고문인 피진정인은 비서로 근무한 진정인에게 은밀한 개인적 사실을 말하도록 요구하고 모텔에 차를 세워 들어갈 것을 요구함.	· 피진정인의 특별인권교육 수강 · 피해배상금 300만원 지급
22	07진차89 ('07.5.10.)	영어캠프의 원어민 강사인 피진정인은 보조교사로 일하던 진정인에게 신체접촉을 하고 생리대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고 묻는 등의 언동을 함.	· 피진정인의 특별인권교육 수강 · 소속사 대표의 강사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23	06직차2 <직권조사> ('06.3.7.)	○○구치소 수용자인 피해자는 구치소의 교도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함.	·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고발 ·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 관계자에 대한 징계 · 여성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정책, 관행 개선

판 권
소 유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2집】

2009년 11월 일 인쇄
2009년 11월 일 발행

발 행 국가인권위원회
편 집 조사국 차별조사과
인 쇄 도서출판 한학문화

〈비매품〉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 제2집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